4bbun®

www.4bbun.net

부동산 세법 -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법조문



출판사: 4뿐

ISBN: 979-11-92669-19-9(PDF)

정가: 400원

법령을 읽어 보시는 것은 시험범위를 숙지하고 계신 경우에만 도움이 됩니다. 시험범위를 모르시는 경우에는 시간낭비입니다.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의 내용은 시험범위가 아닌 부분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목적」

이 법은 부동산의 적정가격(適正價格) 공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 시 장·동향의 조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형성 과 각종 조세·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도 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주택"이란 J**정의** J제1호에 따른 주 택을 말한다.
- 2. "공동주택"이란 J**정의**J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 3. "단독주택"이란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 4. "비주거용 부동산"이란 주택을 제외 한 건축물이나 건축물과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 다.
- 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 소유되는 비주거용 부동산
- 나.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가목을 제외한 비주거용 부동산
- 5. "적정가격"이란 토지, 주택 및 비주거 용 부동산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 을 말한다.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 다
-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 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 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 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 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 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 "국민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인 주택을 말한다.
-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J설립 리J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 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건설하 는 주택
-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 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 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7.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 8. "임대주택"이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 택으로서,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으 로 구분한다.
- 9.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란 토지의 소유 권은 J**사업계획의 승인**J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사업 을 시행하는 자가 가지고, 건축물 및 복리시 설 등에 대한 소유권[건축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구분소유권은 이를 분양받은 자가 가지

(설립)

- ① 지방자치단체는 J적용 범위 J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 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등 지 방공기업으로서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 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는 전문 인력 및 조사·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행정안전 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의뢰하 여 실시하여야 한다.

위임행정규칙

(사업계획의 승인)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 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 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 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사업계획의 승인」, 」사업계획의 이행 및 취소 등」, 」 기반시설의 기부채납」, 」사업계획의 통합 심의 등」, J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등」 및 」대지의 소유권 확보 등 J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 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 또는 J대도시 등에 대하 트레 이전 I에 따라 서운트병시 · 광연

- 고, 건죽불의 공용무문 · 무속건불 및 목리시 설은 분양받은 자들이 공유한다]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을 말한다.
- 10. "사업주체"란 J**사업계획의 승인**J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각 목의 자를 말한다.
-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 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 다. J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J에 따라 등록 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 라.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 11.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제 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거나 J리모델링의 허가 등」에 따라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다음 각목의 조합을 말한다.
- 가. 지역주택조합: 다음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 립한 조합
- 1)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 2) 대전광역시·충청남도 및 세종특별자치 시
- 3) 충청북도
- 4)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 5) 전라북도
- 6)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 7) 부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 8) 강원도
- 9) 제주특별자치도
- 나. 직장주택조합: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 다. 리모델링주택조합: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 12. "주택단지"란 J**사업계획의 승인**J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 가.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 나.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 다.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것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13.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다음 각 목 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 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 나. 건축설비
-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 · 설비에 준하는 것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14.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 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동시설 을 말한다.
- 가.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 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 나.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 15. "기반시설"이란 기반시설을 말한다.
- 16. "기간시설"이란 도로·상하수도·전기 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지역난방시설 등을 말한다.
- 17. "간선시설"이란 도로·상하수도·전기 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둘 이상의 주택단지를 동시에 개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단지를 말한 다) 안의 기간시설을 그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 은 국에 단증가에 되어 지르되르지 중되지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
- 2.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 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그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 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서류와 함 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 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공구별 공사계획서
- 2. 입주자모집계획서
- 3. 사용검사계획서
-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업계획은 쾌적 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하는 데에 적합 하도록 수립되어야 하며, 그 사업계획에는
-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⑥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국토교통부장관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각각사업계획승인서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 ①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 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 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의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1. 국가·지방자치단체
- 2. 한국토지주택공사
- 3. 지방공사
- 4. J**설립허가 기준**J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
- 5. J**주택조합의 설립 등**J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J**공동사업주체**J제2항에 따라 등 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 는 주택조합만 해당한다)
- 6.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J**공동사업주체** J제3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 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고용자만 해당하 며, 이하 "고용자"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할 사업자의 자본금과 기술인력 및 사무실면적에 관한 등록이 기주 · 정차 · 반변 등에 필요하 사

발한다. 다만, 가스시설·통신시설 및 지역 난방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 설을 포함한다.

18.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으로 구 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착공신고 및 사용 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 다.

19.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 의 일부를 구분소유 할 수 없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준, 설치기준, 면적기준 등에 적합한 주택을 말한다.

20.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 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21.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이란 저에너지 건물 조성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거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도록 건설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2. "건강친화형 주택"이란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실내공기의 오염물질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된 주택을 말한다.

23. "장수명 주택"이란 구조적으로 오랫동 안 유지·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 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 수한 주택을 말한다.

24. "공공택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조성되

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말한다. 가. J**토지에의 출입 등**J제2항에 따른 국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나.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J**실적보고 및 관련** 자료의 공개J제5항에 따라 활용하는 택지는 제외한다.

다. 산업단지개발사업

라.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J시행자J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행자가 J토지등의 수용 등」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J시행자 등」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 또는 같은 항 제11호에 해당하는 시행자(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가 J도시개발사업의시행 방식」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혼용방식 중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사.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혼용방식 중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서 시행 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아. 혁신도시개발사업

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차.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25. "리모델링"이란 J리모델링의 허가 등 J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대수선

(리모델링의 허가 등)

① 공동주택(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허가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이나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하며, 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J 주택조합의 설립 등」제1항에 따라 설립인 가를 받은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총회 또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 의에서 건설사업자 또는 J등록사업자의 시공」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에 관 하여는 J**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 의 의제 등J를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이상으로 세대수가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기반시설에의 영향이나 도시·군관리계획과의 부합 여부 등에 대하여 J지방도시계획위원회 J제2항에따라 설치된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 (이하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 (이하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 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⑦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에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용검사에 관하여는 J사용검사 등」를 준용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항에 해당하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허가를받은 경우에는 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⑨ J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지역 등」에 따른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대상지역에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허가하려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 나. J사용검사 능J에 따른 사용검사일(수택 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물대장 중 집합건축물대장 의 전유부분의 면적을 말한다)의 30퍼센트 이내(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미 만인 경우에는 40퍼센트 이내)에서 증축하 는 행위. 이 경우 공동주택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공용부분에 대하여도 별도로 증축할 수 있다.
- 다. 나목에 따른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 퍼센트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 행 위(이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라 한 다). 다만,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이하 "수 직증축형 리모델링"이라 한다)는 다음 요건 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1) 최대 3개층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범위에서 증축할 것
- 2)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구조도 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26.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란 세대수 증가 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과밀, 이주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 하는 계획을 말한다.
- 27. "입주자"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 가. J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 J주택의 공급 J· J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의 거주의무 등 J· J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J· J주택정책 관련 자료 등의 종합관리 J· J체납된 분양대금 등의 강제징수 J 및 J벌칙 J의 경우: 주택을 공급받는 자나. J리모델링의 허가 등 J의 경우: 주택의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28. "사용자"란 사용자를 말한다.
- 29. "관리주체"란 관리주체를 말한다.

(토지에의 출입 등)

- ①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 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 또는 측량을 하려는 경 우와 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 1.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
- 2. 특별한 용도로 이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도로 로 일시 사용하는 행위
- 3. 특히 필요한 경우 죽목·토석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 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토지나 토지에 정 착한 물건 및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소유 권 외의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경우에는 J토지에의 출입 등 J제2항부터 제9항까지 및 J과태료J제1항 제2호·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주체"로, "J토지에의 출입 등 J제1항"은 "J토지에의 출입 등 J제1항"으로 본다.

(실적보고 및 관련 자료의 공개)

- ①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주택조합의 실적보고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별로 분기마다 작성하 여야 한다.
- 1. 조합원(주택조합 가입 신청자를 포함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모집 현황
- 2.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 권 확보 현황
- 그 밖에 조합원이 주택조합의 사업 추 진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 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1. 조합규약
- 2. 공동사업주체의 선정 및 주택조합이 공 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와 체결한 협약 서
- 3. 설계자 등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 4. 조합총회 및 이사회, 대의원회 등의 의 사록
- 5. 사업시행계획서
- 6. 해당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 서
- 7. 회계감사보고서
- 8. 분기별 사업실적보고서
- 9. J주택조합업무의 대행 등 J제4항에 따라 업무대행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 10. 그 밖에 주택조합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 ③ 제2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이 열람 · 복사 요청을 한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이 경우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

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 1. 조합원 명부
- 2.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 보 비율 등 토지 확보 관련 자료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 ④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합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연간 자금운용 계획 및 자금 집행 실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 · 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 법」에 의하여야 하며, 그 밖의 공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다.

(시행자)

- ① J촉진지구의 지정」에 따라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자(이하 "지정권자"라 한 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공지원민 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 행자"라 한다)를 지정한다.
- 1. 촉진지구에서 국유지·공유지를 제외 한 토지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 는 토지를 소유한 임대사업자
- 2. J**공공주택사업자**J제1항 각 호에 해당 하는 자
- ② 시행자가 할 수 있는 공공지원민간임대 주택 개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
- 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행자는 이 항 제2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 1. 촉진지구 조성사업
- 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 등 주 택건설사업
- ③ 지정권자는 촉진지구 조성사업의 시행 자를 지정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 는 자를 공동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 ④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촉진 지구 안에서 국유지 · 공유지를 제외한 토 지면적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는 지정권자에게 촉진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그 지정을 제안한 자가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우선적으로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 ⑤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 다.
- 1. 시행자가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로 시 행자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 2. 시행자의 부도·파산, 사정 변경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촉진지구 사업 추진이 곤란하여 시행자를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로 변경하는 경우
- 3. J**감독**J제1항에 따라 지구계획 승인이 취소되어 시행자를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 사로 변경하는 경우
- ⑥ 제1항제2호에 따른 자가 시행자인 경우 지정권자는 촉진지구에 복합지원시설을 건설·운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경우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합지원시설의 설치·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해제의 제안절차, 제출서류,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및 동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토지등의 수용 등)

- ① 시행자는 촉진지구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나머지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다만, J시행자 J제1항제2호의 자가 시행자인 경우 본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 ② 촉진지구를 지정하여 고시한 때에는 J 사업인정J제1항 및 J사업인정의 고시J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 ③ 재결신청은 제1항에 따른 토지를 확보한 후에 할 수 있으며, J사업인정의 실효 J제1항 및 J재결의 신청J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구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 종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동의 요건의 산정기준일,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시행자 등)

-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
-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 공사
- 5.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수용 또는 사용 방식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 6.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본다)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하 "조합"이라 한다)
- 7.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중 과밀억제권역의 사업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 8. J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에 따라 등록한 자 중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J정의」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와 그에 수반되는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9.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면 허를 받는 등 개발계획에 맞게 도시개발사

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9의2. 부동산개발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 10.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부 동산투자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 11.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자(제6호에 따른 조합은 제외한다)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 ② 지정권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지방자치단체등"이라 한 다)를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시·도지 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경우 국토교통부장 관이 지정한다.
- 1.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지정권자가 신청된 내용이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공공시 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 3.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 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및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 상이 지방자치단체등의 시행에 동의한 경 우
- ③ 지정권자는 제1항제5호에 따른 토지소유자 2인 이상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 또는 같은 호에 따른 토지소유자가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규약을 정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등이 도시 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11호(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책정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정에 포함할 수 있다.
- ⑤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원을 가지고 2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또는 제1항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나반, J노시개발구역의 시성 등 J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제안할 수 있다.

- ⑥ 토지 소유자 또는 제1항제7호부터 제 11호까지(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제5항에 따라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지상권자를 포함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⑦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 청장은 제안자와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 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 1.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행정처분으로 시행자의 지정이나 실시 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 3. 시행자의 부도·파산, 그 밖에 이와 유 사한 사유로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제1항 단서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된 자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⑨ 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규모, 제안 절차, 제출 서류, 기초조사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J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제 5항과 J기초조사 등」를 준용한다.
- ⑩ 제2항제3호 및 제6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동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①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 · 분양 등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주택건설사업자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 ① 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가 도시개발구 역의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 나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 로 시행할 수 있다.
- ②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지정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변경할 수있다.
- 1. J시행자 등 J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
- 2. J시행자 등J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혼용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 벼격하는 경우

포 많아되는 ㅇㅜ

3. J시행자 등」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서 혼용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이나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할 수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용검사 등)

① 사업주체는 J사업계획의 승인 J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 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 는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 군수 · 구청 장(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 체인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만, J**사업계획의 승인**J제3항에 따라 사업 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공구별로 사용검사(이하 "분할 사 용검사"라 한다)를 받을 수 있고, 사업계 획승인 조건의 미이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이하 "동 별 사용검사"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았을 때에는 J**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 · 허가 등의 의제 등J제1항에 따라 의제되

는 인·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미리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해당 주택의 시공자 또는 입주예정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 2. 사업주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검사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해당 주택의 시공자 또는 입주예정자.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유를 밝히지 못하면사용검사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수 없다.
- ④ 사업주체 또는 입주예정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로서 사용검사권자의 임시 사용승인을 받 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 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 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 록한 경우

- 2. J**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J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일시적으로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3.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를 잘못 시공하 여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입주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 4. J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J제1호부터 제 4호까지 또는 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J등록 사업자의 결격사유J제6호에 해당하는 사 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다른 사람으로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 J**등록증의 대여 등 금지**J를 위반하여 등록증의 대여 등을 한 경우
-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 가. J설계도서의 작성 등J제4항에 따른 시 공상세도면의 작성 의무를 위반하거나 건 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 고 시공한 경우
- 나. J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J제1항 또는 J시정명령J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다. J건설공사의 품질관리 J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라. J**건설공사의 안전관리**J에 따른 안전점 검을 하지 아니한 경우
- 7. J**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J제1항을 위반하여 택지를 전매(轉賣)한 경우
- 8. J**벌칙**J제1호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9. J**과태료**J제2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 으
-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처 분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택의 공급)

- ① 사업주체(J건축허가」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J사업계획의 승인 J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 · 공급하는 건축주와 J사용검사 등 J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사업주체로부터 일괄하여 양수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 ·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철거주택의 소유자,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자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모집조건 등을 달리 정하여 별도로 공급할 수 있다.
- 1. 사업주체(공공주택사업자는 제외한다) 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 청장의 승인(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신고를 말한다)을 받을 것
- 2.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하려 는 경우
- 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모집의 시기(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영업정지를 받거나 벌점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 달리 정한입주자모집의 시기를 포함한다)·조건·반변·정차 인주극의 난부 반변·시기·

ㅇㅂ 글씨, ㅂ구ㅁㅋ ㅂ구 ㅇㅂ 씨기 절차, 주택공급계약의 방법·절차 등에 적 합할 것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벽지·바닥재·주방용구·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따로 제시하고, 이 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

- ②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에 맞게 주택을 공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J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J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및 J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J제1항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 ·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의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③ 사업주체가 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를 말한다)에는 J견본주택의 건축기준」에 따라 건설하는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의 규격·성능및 재질을 적은 목록표(이하 "마감자재 목록표"라 한다)와 견본주택의 각 실의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 등을 제작하여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사업주체는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입주예정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 모 집공고에 이를 표시(인터넷에 게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제3항에 따른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 자재 목록표
- 2. 공동주택 발코니의 세대 간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하거나 경계벽을 경량구조 로 건설한 경우 그에 관한 정보
-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받은 마감자재 목록표와 영상물 등을 J사 용검사 등J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⑥ 사업주체가 마감자재 생산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제품의 품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J사업계획의 승인J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마감자재 목록표의 마감자재와 다르게 마감자재를 시공・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당초의 마감자재와 같은 질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⑦ 사업주체가 제6항에 따라 마감자재 목 록표의 자재와 다른 마감자재를 시공·설 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주예정자 에게 알려야 한다.
- ® 사업주체는 공급하려는 주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표시 및 광고(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 상 보관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열람을 요 구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의 거 주의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입주자(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

- 하 이 조 및 J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거주실태 조사 등 J에서 "거주의무자"라 한다)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주택의 분양가 격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방법으로 결정된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거주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본다.
- 1. 사업주체가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에서 건설·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 2. 투기과열지구를 말한다)에서 건설·공 급하는 주택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 전하거나 신설되는 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 람에게 입주자 모집조건을 달리 정하여 별 도로 공급되는 주택
- 3. 공공재개발사업(J**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J제1항제2호의 지역에 한정한다)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
- ② 거주의무자가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유 없이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 거주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사업주체가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J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에서 같다)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2항에 따라 매
- 입신청을 받거나 거주의무자가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위반사 실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주택을 매 입하여야 한다.
- ④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3항에 따라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거주의무자에게 그가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이하 "매입비용"이라 한다)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⑤ 거주의무자는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 하여 거주하여야 함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 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주택의 소유 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하며, 부기등 기에 포함되어야 할 표기내용 등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⑦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 공사가 취득한 주택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받은 사람은 J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제1항에 따른 전매 제한기간 중 잔여기간 동안 그 주택을 전매(제64조제1항에 따른 전매를 말한다)할수 없으며 거주의무기간 중 잔여기간 동안 계속하여 그 주택에 거주하여야 한다.
-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주택을 취득하거나 제7항에 따라 주 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J**주택의 전매행** 위 제한 등J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 ① 사업주체가 건설 · 공급하는 주택[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 자격 · 지위 등을 말한다)를 포함한다. 이하이 조 및 J벌칙 J에서 같다]으로서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을 전매 (매매 · 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매제한기간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1.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 택
- 2.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다만, J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J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 중주택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제외한다.
- 3.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다만,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J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J에 따라 지정 해제된 지역 중 공공택지 외의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적용주택은 제외한다.
- 4.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다만, J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J제2항 각 호의 주택 및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제외한다.
- 5. 공공재개발사업(J**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J제1항제2호의 지역에 한정한다)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
- ② 제1항 각 호의 주택을 공급받은 자의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주택을 공급받은 자 가 전매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가 그 주택을 우선 매입할 수 있다.
-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가 매입비용을 그 매수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날에 사업주체가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보며, 제2항 단서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우선 매입하는 경우에도 매입비용을 준용하되, 해당주택의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 및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매입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④ 사업주체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

- ⑤ 제4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주택의 소유 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하며, 부기등 기에는 "이 주택은 최초로 소유권이전등기 가 된 후에는 J**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J제1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국 토지주택공사(J**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J제2항 단서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매입한 주택을 공급받는 자를 포함한 다) 외의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어떠 한 행위도 할 수 없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⑥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2항 단서에 따라 우선 매입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항을 준용한다.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주택정책 관련 자료 등의 종합관리)

-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적절한 주택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주택(준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건설·공급·관리 및 이와 관련된 자금의 조달, 주택가격 동향 등 이 법에 규정된 주택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 1항에 따른 주택 관련 정보를 종합관리하 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 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 라야 한다.
- ③ 사업주체 또는 관리주체는 주택을 건설 · 공급·관리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필요한 주택의 소유 여부 확 인, 입주자의 자격 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 에 자료 제공 또는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체납된 분양대금 등의 강제징수)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주체가 건설한 국민주택의 분양대금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체납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 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입주자가 장기간의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 이한 사유로 분양대금 · 임대보증금 및 임 대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강제징수하지 아 니할 수 있다.
- ②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그가 건설한 국민주택의 분양대금·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체납된 경우에는 주택의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징수를 위탁받은 시장· 군수·구청장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 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시장·군 수·구청장이 징수한 금액의 2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시·군·구에 위탁 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1. J**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J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자

1의2. J**주택조합업무의 대행 등**J제4항을 위반하여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업무대행자

1의3. J실적보고 및 관련 자료의 공개」제 1항을 위반하여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J실적보고 및 관련 자료의 공 개」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지 않고 작성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 2. J실적보고 및 관련 자료의 공개J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 3. J실적보고 및 관련 자료의 공개J제3항을 위반하여 조합원의 열람·복사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
- 4. 삭제 <2020. 1. 23.>

4의2. J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등」제4항에 따른 시정요구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4의3. J주택조합의 해산 등」제3항을 위반하여 총회의 개최를 통지하지 아니한 자4의4. J회계감사 J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4의5. J회계감사J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아니하 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 5. 삭제 <2018. 12. 18.>
- 6. 과실로 J**감리자의 업무 등**J제1항에 따 른 감리업무를 게을리하여 위법한 주택건 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

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 7. J**감리자의 업무 등**J제4항을 위반하여 시정 통지를 받고도 계속하여 주택건설공 사를 시공한 시공자 및 사업주체
- 8. J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J제1항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제68조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기준, J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 J제3항에 따른 검토기준 또는 J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구조기준 J에 따른 구조기준을 위반하여 사업주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 9. J**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등**J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 를 하지 아니하고 감리를 한 자
- 10. J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의 거주의무 등 J제1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거주의무기간 중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고 거주한 것으로 속인 자
- 11. J**리모델링의 허가 등**J제1항 및 제2항 을 위반한 자
- 12. J**등록증의 대여 등 금지** J를 위반하여 등록증의 대여 등을 한 자
- 13. J**보고 · 검사 등**J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을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14. J**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도·감독**J에 따른 공사 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 ·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적장가격(이하 "표준지공시지가"라 한다나의 조사 · 평가하고 교육아보도사가격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 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화경 그 반이 자연전 · 사히전 조거

이기로 보시 경기에도, JOSTS단기 공시위원회 J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 시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 1. 부동산 가격공시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 에 관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2.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3.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에 따라 조사·평가된 표준지공시지가 4. 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 른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5. J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른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 6. J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라 조사·산정된 표준주택가격 7. J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8. J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른 공동주택의 조사 및 산정지침 9. J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라 조사·산정된 공동주택가격 10. J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11. J**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산** 정 및 공시 등J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의 선정 및 관리지침
- 12. J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산 정 및 공시 등J에 따라 조사·산정된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 13. J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14. J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산 정 및 공시 등 J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 의 조사 및 산정 지침
- 15. J**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J에 따라 조사·산정된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 16. J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산 정 및 공시 등J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17. J**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 등** J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18. 그 밖에 부동산정책에 관한 사항 등 국 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TC CO, C NT NCT (NAT LC O)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이하 "표준지공시지가"라 한다)을 조사·평가하고, J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위하여 표준지의 가격을 조사· 평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 · 평가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 지공시지가를 조사 · 평가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 · 임대료 및 해 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 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 특수 성, 표준지공시지가 변동의 예측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 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 지공시지가를 조사 · 평가할 때에는 업무 실적, 신인도(信認度)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 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의뢰
- 하여야 한다. 다만, 지가 변동이 작은 경우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표준지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표준 지공시지가 조사 ·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 평가업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당 업 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⑦ 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기준 및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국토교통부장관은 J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산정대상 개별 토지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토지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 ①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 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 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등」에 따라 해당 표준 지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의신정 및 저리설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 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 (이하 "표준주택가격"이라 한다)을 조사·산정하고, J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표준주택의 지번
- 2. 표준주택가격
- 3. 표준주택의 대지면적 및 형상
- 4. 표준주택의 용도, 연면적, 구조 및 사용 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을 포함한다)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표준주택의 선정, 공시기 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산정 기준 및 공 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표준 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에 의뢰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 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경우에는 인 근 유사 단독주택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해당 단독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다고 인정되는 단독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특수성, 표준주택가격 변동의 예 측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 하여야 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J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 등J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주택과 산정대상 개별주택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주택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⑦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제2항·」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협조」· J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등」· 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및 J타인토지에의 출입 등」는 제1항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에 준용한다. 이 경우 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제2항 후단 중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는 "J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로 본다.

(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공동주택가격"이라 한다)을 조사·산정하여 J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주택가격을 별도로 결정·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가격을 공 시하기 위하여 그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 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조사대상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공시사항, 조사·산정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공동주택가격을 결정 · 공시하여야 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공동 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경우에는 인 근 유사 공동주택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해당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특수성, 공동주택가격 변동의 예 측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 하여야 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공동 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부동산원에 의뢰한다.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공시한 가격에 틀린 계산, 오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 정하여야 한다.
- ® 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대하여는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협조」· J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등」· 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이의신청」및 J타인토지에의 출입 등」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이의신청」제2항 후단 중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는 "J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로 본다.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 이용상황,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 정되는 일단의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중에 서 선정한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이라 한다)을 조사·산정하고, J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 격의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 1.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지번
- 2.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 3.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대지면적 및 형 상
- 4.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용도, 연면적, 구조 및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을 포 함한다)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제1하에 따르 비즈기요 표즈브도사이

- 의 제18에 따는 미구기중 표군구중인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산 정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비주 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을 조사 · 산정하려는 경우 감정평가법인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가격의 조사 · 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에게 의뢰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비주거용 표준부동 산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의 거래가격· 임대료 및 해당 비주거용 일반부동산과 유 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비주 거용 일반부동산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 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J비주거용 개별부동 산가격의 결정·공시 등」에 따른 비주거 용 개별부동산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과 산정대상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 (이하 "비주거용 부동산가격비준표"라 한 다)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⑦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에 대하여는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J제2항·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 협조J·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및 J타인토지에의 출입 등J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J제2항 후단 중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 · 평가 및 공시 등」"는 "J비주거용 표준 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로 본다.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이라 한다)을 조사·산정하여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거쳐 공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또는 구청장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결정·공시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가격을 별도로 결정·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공시하지 아니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집합부동 산가격을 공시하기 위하여 비주거용 집합 부동산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주거용 집합부동 산의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 을 들어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조사대상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 기, 공시사항, 조사·산정 기준 및 공시절 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ㆍ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 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가격을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비주 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해당 비주거용 집 합부동산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 하여야 한다.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비주 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조사·산정할 때 에는 부동산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가격의 조사·산정에 관한 전문성 이 있는 자에게 의뢰한다.
- ®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공시한 가격에 틀린 계산, 오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 정하여야 한다.
- ⑨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공시에 대해서는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협조」・」 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등」・」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및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제2항 후단중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

시 등」"는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로 본다.

(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공시가격이 적정가격을 반영하고 부동산의 유형·지역 등에 따른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부동산 가격의 변동 상황, 지역 간의 형평 성, 해당 부동산의 특수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공청회를 실시하고, J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 장은 부동산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계획에 부합하도록 하 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 이 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 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6명 이내의 공 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숭 국토교통무장관이 위족하는 사람이 된다.

-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토지 · 주택 등에 관한 이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 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자 격이 있는 사람
- 3.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 관련 분야 에서 10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기 전에 미리 관계 전 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 ·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위하여 표준지의 가격을 조사 · 평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 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공시기 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평가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 지공시지가를 조사 · 평가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 · 임대료 및
-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특수성, 표준지공시지가 변동의 예측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 지공시지가를 조사ㆍ평가할 때에는 업무실적, 신인도(信認度) 등을 고려하여 둘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지가 변동이 작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표준지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할 수 있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표준 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의뢰받은 감정 평가업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⑦ 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기준 및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 ® 국토교통부장관은 J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산정대상 개별 토지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 (이하 "토지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세·지방세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J**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 원회J에 따른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 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으로 시·군 ·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둔다.
- 1. J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J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 2. J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J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을 결정 · 공시하고, 이들 관계 행정기관 능에 제공하여야 한다.

- 3. J**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 등**J에 따 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 4. J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 등J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5. J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공 시 등J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의 결정에 관한 사항
- 6. J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공 시 등 J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심 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시·군·구부 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
- 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 되, 해당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하여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감정 평가법인등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그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지가의 변동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에 따른 검증을 받으려는 때에는 해당 지역의 표준지 의 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한 감정평가법인 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실적 등이 우수한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여야 한다.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지가공시 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와의 균형유지 등 적정한 지가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 ®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검증 및 결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산정의 기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감정평가법인등의 지정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협조」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의 선정 또는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해당 토지의 인ㆍ허가 내용, 개별법에 따른 등 록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 료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J에 따른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표준지의 지번
- 2.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 3. 표준지의 면적 및 형상
- 4. 표준지 및 주변토지의 이용상황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이하 "표준지공시지가"라 한다)을 조사·평가하고, J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 1. 부동산 가격공시 관계 법령의 제정·개 정에 관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 에 부치는 사항
- 2.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J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3.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J에 따라 조사·평가된 표준지공시지가
- 4. 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5. J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른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 6. J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 등」에 따라 조사·산정된 표준주택가격 7. J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에 관한 사항
- 8. J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른 공동주택의 조사 및 산정지침 9. J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라 조사·산정된 공동주택가격 10. J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11. J**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 ·** 산정 및 공시 등J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 동산의 선정 및 관리지침
- 12. J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 · 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라 조사 · 산정된 비 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 13. J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 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 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4. J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 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
- 동산의 조사 및 산정 지침 15. J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 산정 및 공시 등J에 따라 조사·산정된 비 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 16. J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 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 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7. J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 등 J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부동산정책에 관한 사항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 관이 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6명 이내 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 는 사람이 된다.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토지 · 주택 등에 관한 이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 람
- 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3.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 관련 분 야에서 10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기 전에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 ·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공 시하기 위하여 표준지의 가격을 조사·평가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평가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 · 평가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 · 임대료 및 해당 토지 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 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 특수성, 표준지공 시지가 변동의 예측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 · 평가할 때에는 업무실적, 신인도(信認度)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 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지가 변동이 작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표준지에 대해서 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할 수 있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 업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 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⑦ 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기 준 및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공시 등」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 지와 산정대상 개별 토지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토지가격비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세·지방 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 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 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풍되노녹 아기 뉘아어 J시·군·구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J에 따른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 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 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 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 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 야 한다.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 가를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 가를 산정하되, 해당 토지의 가격과 표준 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 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하여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가의 변동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에 따른 검증을 받으려는 때에는 해당 지역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한 감정 평가법인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 정평가실적 등이 우수한 감정평가법인등 에 의뢰하여야 한다.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지가공시 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와의 균형유지 등 적정한지가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 ®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검증 및 결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산정의 기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감정평가법 인등의 지정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J에 따라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한 때에는 그 내용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게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 · 사회적 조건이 일 바전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다의 토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송부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도 서 · 도표 등으로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 관 등에 공급하여야 한다. 다 그 그 표 표 기 이 되고 다 하시는 로 다 그 보이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 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이하 "표 준지공시지가"라 한다)을 조사ㆍ평가하고, ↓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 1. 부동산 가격공시 관계 법령의 제정·개 정에 관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 에 부치는 사항
- 2.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J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3.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J에 따라 조사·평가된 표준지공시지가
- 4. 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5. J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른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 6. J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라 조사·산정된 표준주택가격 7. J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에 관한 사항
- 8. J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른 공동주택의 조사 및 산정지침 9. J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라 조사·산정된 공동주택가격 10. J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11. J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 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 동산의 선정 및 관리지침
- 12. J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 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라 조사·산정된 비 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 13. J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 ·
- 산정 및 공시 등 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 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4. J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 산정 및 공시 등 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 동산의 조사 및 산정 지침
- 15. J**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라 조사·산정된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 16. J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 · 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7. J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 등 J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부동산정책에 관한 사항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 관이 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6명 이내 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 는 사람이 된다.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토지 · 주택 등에 관한 이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 람
- 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3.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 관련 분 야에서 10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 ⑤ 고므위이 아니 의위이 이기느 2년0근

♥ 8구전의 의교 되전의 B기를 2만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기 전에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 ·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공 시하기 위하여 표준지의 가격을 조사ㆍ평가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평가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 · 평가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 · 임대료 및 해당 토지 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 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 특수성, 표준지공 시지가 변동의 예측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ㆍ평가할 때에는 업무실적, 신인도(信認度)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 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 다만, 지가 변동이 작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표준지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할 수 있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 업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 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⑦ 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기 준 및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 공시 등」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 지와 산정대상 개별 토지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토지가격비준 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 ∙ 군수 또는 구 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J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따른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 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 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

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 야 한다.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 가를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 가를 산정하되, 해당 토지의 가격과 표준 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 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하여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 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감 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지가의 변동상황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법 인등의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에 따른 검증을 받으려는 때에는 해당 지역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한 감정 평가법인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 정평가실적 등이 우수한 감정평가법인등 에 의뢰하여야 한다.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지가공시 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와의 균형유지 등 적정한지가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 ®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검증 및 결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산정의 기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감정평가법 인등의 지정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 ①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 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국토교통 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 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 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J표준지공시지 가의 조사 · 평가 및 공시 등 J에 따라 해 당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 시하여야 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이하 "표준지공시지가"라 한다)을 조사·평가하고, J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 1. 부동산 가격공시 관계 법령의 제정·개 정에 관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 에 부치는 사항
- 2.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3.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에 따라 조사·평가된 표준지공시 지가
- 4. 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5 대주주택가격의 조사 사정 및 공시

등」에 따른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 6. J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라 조사·산정된 표준주택가격 7. J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에 관한 사항

- 8. J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른 공동주택의 조사 및 산정지침 9. J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라 조사·산정된 공동주택가격 10. J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11. J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 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 동산의 선정 및 관리지침
- 12. J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 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라 조사·산정된 비 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 13. J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 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 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4. J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 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 동산의 조사 및 산정 지침
- 15. J**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J에 따라 조사·산정된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 16. J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 · 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7. J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 등 J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부동산정책에 관한 사항 등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 관이 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6명 이내 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 는 사람이 된다.
-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토지 · 주택 등에 관한 이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 람
- 고.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3.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 관련 분 야에서 10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기 전에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 ·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애당 도시 소유사의 의견을 들어야 안나.

- ③ 제1항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ㆍ평가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 · 평가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 · 임대료 및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 특수성, 표준지공시지가 변동의 예측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할 때에는 업무실적, 신인도(信認度)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 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지가 변동이 작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표준지에 대해서 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할 수 있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 업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 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⑦ 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기 준 및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 공시 등」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 지와 산정대상 개별 토지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토지가격비준 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 · 군수 또는 구 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J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따른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 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 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 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 야 한다.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 가를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 가를 산정하되, 해당 토지의 가격과 표준 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 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하여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가저편가버이드이 거즈은 바고 트피스으

마이이 1 다음이 마음을 모고 모시고까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가의 변동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에 따른 검증을 받으려는 때에는 해당 지역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한 감정 평가법인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실적 등이 우수한 감정평가법인등 에 의뢰하여야 한다.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지가공시 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와의 균형유지 등 적정한지가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 ®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검증 및 결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산정의 기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감정평가법 인등의 지정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의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

제1호 각 목의 자가 제2호 각 목의 목적을 위하여 지가를 산정할 때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직접 산정하거나 감정평가법인등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산정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정된 지가를 제2호 각 목의 목적에 따라 가감 (加減)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1. 지가 산정의 주체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 체
- 2. 지가 산정의 목적
- 가.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사 용에 대한 보상
- 나. 국유지ㆍ공유지의 취득 또는 처분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의 산정

」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 평가법인등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

J개별공시지가의 결정 · 공시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세·지 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J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J에 따른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① 나금 각 호의 사양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둔다.
- 1. J**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J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 2. J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J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 등」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 4. J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 등」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J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공시 등」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 6. J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공시 등」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 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심의 에 부치는 사항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J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따른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 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 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 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 야 한다.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 가를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 가를 산정하되, 해당 토지의 가격과 표준 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 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하여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가의 변동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에 따른 검증을 받으려는 때에는 해당 지역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한 감정 평가법인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 정평가실적 등이 우수한 감정평가법인등 에 의뢰하여야 한다.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지가공시 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와의 균형유지 등 적정한지가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 ®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검증 및 결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산정의 기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감정평가법 인등의 지정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작 · 구수 또는 구천작에게 이의록 시청

의 이 보고 보다 기 이 이 의 의 기 의 기 의 이 이 이 있다.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J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J에 따라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의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 등)

-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J**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따른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주택의 가격(이하 "개별주택가격"이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하여는 해당 주택의 표준주택가격을 개별주택가격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공시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개별주택의 지번
- 2. 개별주택가격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주택가격 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주택가 격을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 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 를 사용하여 가격을 산정하되, 해당 주택 의 가격과 표준주택가격이 균형을 유지하 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주택가 격을 결정·공시하기 위하여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표준주택가격과의 균형 등 그 타당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원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 장은 부동산원의 검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주택가격의 변동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부동산원의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행정의 합리적 인 발전을 도모하고 표준주택가격과 개별 주택가격과의 균형유지 등 적정한 가격형 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 등에 관하 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도·감독

할 수 있다.

®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및 개별 주택가격의 정정에 대하여는 J개별공시지 가에 대한 이의신청」및 J개별공시지가의 정정」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J개별공 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J제2항 후단 중 "J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는 "J 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 등」"로 본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검증 및 결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산정의 기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공시등)

-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J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따른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기 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비주거용 개별부동산의 가격(이하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이라 한다)을 결정·공시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비주거용 개별부동산의 가격을 별도로 결정·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주거용 표준부 동산으로 선정된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주거용 일반부동 산에 대하여는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을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 우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으로 선정된 비주 거용 일반부동산에 대하여는 해당 비주거 용 표준부동산가격을 비주거용 개별부동 산가격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 격의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 1. 비주거용 부동산의 지번
- 2.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가격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비주거용 개 별부동산가격을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주거용 일반부동산과 유사한 이용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가격을 기준으로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가격을 산정하되, 해당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의 가격과 비주 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이 균형을 유지하도 록 하여야 한다.
-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공시하기 위하여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과의 균형등 그 타당성에 대하여 J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을 의뢰 받은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검증을 받고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의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시장 · 군수 또는 구청 장은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검 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비주거 용 부동산가격의 변동상황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행정의 합리적 인 발전을 도모하고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가격과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과의 균 형유지 등 적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가격의 결정 · 공시 등에 관하여 시 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도 · 감독할 수 있다.
- ®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정정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및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2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 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제2항 후단 중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는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 ・공시 등」"로 본다.
-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산정, 검 증 및 결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 사·산정의 기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시·군·구부동 산가격공시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 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토지 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 다.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 지가를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 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 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 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되, 해당 토지의 가 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 록 하여야 한다.
-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 지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하여 개별토지 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 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받고 토 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 청장은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가의 변동상 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 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에 따른 검증을 받으려는 때에는 해당 지역

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조사 · 평가한 감정평가법인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감정평가실적 등이 우수한 감정평가 법인등에 의뢰하여야 한다.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지가공시 행정의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와의 균형유지 등 적정한 지가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 ®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검증 및 결 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산 정의 기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감정 평가법인등의 지정 및 공시절차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 ①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 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때에는 J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J에 따라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다시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세·지방세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하기 위하여 J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 원회」에 따른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으로 시·군 ·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둔다.
- 1. J**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J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 2. J**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J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3. J**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 등**J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 4. J**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 등**J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5. J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공 시 등 J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의 결정에 관한 사항
- 6. J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공 시 등 J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그 바에 시자 . 그스 또는 그처자이 시
- 7.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심 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시·군·구부 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로 선정된 토 지에 대하여는 해당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 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 를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와 유 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

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 되, 해당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하여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감정 평가법인등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그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지가의 변동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에 따른 검증을 받으려는 때에는 해당 지역의 표준지 의 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한 감정평가법인 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실적 등이 우수한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여야 한다.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지가공시 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와의 균형유지 등 적정한 지가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 ®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검증 및 결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산정의 기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감정평가법인등의 지정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의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별공시지가의 정정」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에 틀린 계산, 오기, 표준지 선정의 착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① 관계 공무원 또는 부동산가격공시업무를 의뢰받은 자(이하 "관계공무원등"이라 한다)는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J제4항에 따른 표준지가격의 조사·평가 또는 J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J제4항에 따른 토지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 ·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이하 "표준지공시지가"라 한다)을 조사 · 평가하고, J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 1. 부동산 가격공시 관계 법령의 제정·개 정에 관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 에 부치는 사항
- 2.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3.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에 따라 조사·평가된 표준지공시 지가
- 4. 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5. J**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J에 따른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

- 6. J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라 조사·산정된 표준주택가격 7. J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에 관한 사항
- 8. J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른 공동주택의 조사 및 산정지침 9. J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라 조사·산정된 공동주택가격 10. J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에 관한 사항
- 11. J**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 ·** 산정 및 공시 등J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 동산의 선정 및 관리지침
- 12. J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 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라 조사·산정된 비 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 13. J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 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 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자리
- 14. J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 산정 및 공시 등J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 동산의 조사 및 산정 지침
- 15. J**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라 조사·산정된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 16. J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7. J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 등 J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부동산정책에 관한 사항 등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 관이 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6명 이내 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 는 사람이 된다.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토지 · 주택 등에 관한 이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 람
- 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3.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 관련 분 야에서 10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기 전에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 ·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당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평가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 · 평가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 · 임대료 및 해당 토지 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 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 특수성, 표준지공 시지가 변동의 예측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할 때에는 업무실적, 신인도(信認度)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 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지가 변동이 작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표준지에 대해서 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할 수 있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 업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 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⑦ 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기 준 및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 공시 등」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 지와 산정대상 개별 토지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토지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J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따른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 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 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 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 야 한다.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 가를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 가를 산정하되, 해당 토지의 가격과 표준 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 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하여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가져되기법이들이 거짓을 바고 토지스의

대성정기답인증의 대증할 본과 도시오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가의 변동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에 따른 검증을 받으려는 때에는 해당 지역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한 감정 평가법인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 정평가실적 등이 우수한 감정평가법인등 에 의뢰하여야 한다.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지가공시 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와의 균형유지 등 적정한지가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 ®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검증 및 결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산정의 기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감정평가법 인등의 지정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 공시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세·지방세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J**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

원회」에 따른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 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 에 제공하여야 한다.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으로 시·군 ·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둔다.
- 1. J**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J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 2. J**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J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3. J**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 등**J에 따 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 4. J**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 등**J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5. J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공 시 등 J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의 결정에 관한 사항
- 6. J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공 시 등 J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심 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시·군·구부 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DIEGOTORIE EGI OTTORIETI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되, 해당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하여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감정 평가법인등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그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지가의 변동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에 따른 검증을 받으려는 때에는 해당 지역의 표준지 의 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한 감정평가법인 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실적 등이 우수한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지가공시 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와의 균형유지 등 적정한 지가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

에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검증 및 결정, 공시 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산정의 기준, 이 해관계인의 의견청취, 감정평가법인등의 지 정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② 관계공무원등이 제1항에 따라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 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부동산가격공 시업무를 의뢰 받은 자에 한정한다)를 받 아 출입할 날의 3일 전에 그 점유자에게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일출 전 · 일몰 후에는 그 토지의 점유 자의 승인 없이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 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 ④ 제2항에 따라 출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증표와 허가증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J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비용의 보조」

J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세·지방세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J**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 원회J에 따른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으로 시·군 ·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둔다.
- 1 |개벽공시지가의 결정 · 공시 등 |에 따

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 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을 결정 · 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 에 제공하여야 한다.

- 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J**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J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 사항 3. J**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 등**J에 따 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 4. J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 등 J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5. J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공 시 등 J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의 결정에 관한 사항
- 6. J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공 시 등J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심 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시·군·구부 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되, 해당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하여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감정 평가법인등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그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가의 변동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에 따른 검증을 받으려는 때에는 해당 지역의 표준지 의 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한 감정평가법인 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실적 등이 우수한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여야 하다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지가공시 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와의 균형유지 등 적정한 지가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 ®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검증 및 결정, 공시기주일, 공시의 시기, 조사·산정의 기준, 이

해관계인의 의견청취, 감정평가법인등의 지 정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부동산 가격정보 등의 조사」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의 적정가격 조사 등 부동산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위하여 부동산 시장동향, 수익률 등의 가 격정보 및 관련 통계 등을 조사·관리하 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 가격정보 등의 조사의 대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국세, 지방세, 토지, 건물 등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하거나타인의 토지 등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J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협조」및 J타인토지에의 출입 등」를 각각 준용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협조)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의 선정 또는 표준 지공시지가의 조사 ·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해당 토지의 인 · 허가 내용, 개별법에 따른 등록사항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제 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 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① 관계 공무원 또는 부동산가격공시업무를 의뢰받은 자(이하 "관계공무원등"이라 한 다)는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 시 등 J제4항에 따른 표준지가격의 조사·평

가 또는 J**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J제 4항에 따른 토지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 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이하 "표준지공시지가"라 한다)을 조사·평가하고, J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위하여 표준지의 가격을 조사 · 평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공시기준 일, 공시의 시기, 조사 · 평가 기준 및 공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 지공시지가를 조사 · 평가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 · 임대료 및 해 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 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 특수 성, 표준지공시지가 변동의 예측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 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 지공시지가를 조사 · 평가할 때에는 업무실적, 신인도(信認度) 등을 고려하여 둘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지가 변동이 작은 경우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표주지에 대해서는 하나의 간정평가범인

표로 시에 데에서는 이미리 ㅁㅇㅇ//ㅂ년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표준 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의뢰받은 감정 평가업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당 업 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⑦ 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기준 및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국토교통부장관은 J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산정대상 개별 토지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토지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J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따른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 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 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 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 야 한다.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 가를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 가를 산정하되, 해당 토지의 가격과 표준 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 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하여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 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감 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지가의 변동상황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법 인등의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에 따른 검증을 받으려는 때에는 해당 지역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한 감정 평가법인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 정평가실적 등이 우수한 감정평가법인등 에 의뢰하여야 한다.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지가공시 행정의 합 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표준지공시지가

와 개별공시지가와의 균형유지 등 적정한 지가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도 ·감독할 수 있다.

®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검증 및 결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산정의 기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감정평가법 인등의 지정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관계공무원등이 제1항에 따라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 장의 허가(부동산가격공시업무를 의뢰 받은 자에 한정한다)를 받아 출입할 날의 3일 전에 그 점유자에게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일출 전·일몰 후에는 그 토지의 점유자의 승인 없이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 ④ 제2항에 따라 출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증표와 허가증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J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

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 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표준주택가격"이라 한다)을 조사·산정하고, J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 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부동산 가격공시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 에 관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2.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3.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에 따라 조사·평가된 표준지공시지가 4. 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5. J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른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 6. J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라 조사·산정된 표준주택가격 7. J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8. J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른 공동주택의 조사 및 산정지침 9. J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라 조사·산정된 공동주택가격 10. J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J에 모르고등 전에 되었다면 되었다.
- 10. J공동수택가격의 소사·산성 및 공시 등J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에 관한 사항
- 11. J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산 정 및 공시 등 J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의 선정 및 관리지침
- 12. J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산 정 및 공시 등」에 따라 조사·산정된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 13. J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 · 산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이하 "표준지공시지가"라 한다)을 조사·평가하고, J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위하여 표준지의 가격을 조사· 평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평가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 지공시지가를 조사 · 평가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 · 임대료 및 해 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 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 특수 성, 표준지공시지가 변동의 예측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 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 지공시지가를 조사 \cdot 평가할 때에는 업무

정 및 공시 등」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4. J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산 정 및 공시 등 J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의 조사 및 산정 지침

15. J**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산** 정 및 공시 등 J에 따라 조사·산정된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16. J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7. J**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 등** J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부동산정책에 관한 사항 등 국 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실석, 신인노(信認度) 능을 고려하여 눌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지가 변동이 작은 경우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표준지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할 수 있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표준 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의뢰받은 감정 평가업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당 업 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⑦ 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기준 및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국토교통부장관은 J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산정대상 개별 토지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토지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 ①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 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 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등J에 따라 해당 표준 지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의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표준주택가격"이라 한다)을 조사·산정하고, J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표준주택의 지번
- 2. 표준주택가격
- 3. 표준주택의 대지면적 및 형상
- 4. 표준주택의 용도, 연면적, 구조 및 사용 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을 포함한다)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표준주택의 선정, 공시기 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산정 기준 및 공 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표준 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부동산워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워

(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에 의뢰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 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경우에는 인 근 유사 단독주택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해당 단독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다고 인정되는 단독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특수성, 표준주택가격 변동의 예 측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 하여야 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J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 등J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주택과 산정대상 개별주택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주택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⑦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J제2항·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협조 J·J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등 J·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J및 J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J는 제1항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에 준용한다. 이 경우 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J제2항 후단 중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J"는 "J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J"로 본다.

(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 "공동주택가격"이라 한다)을 조사·산정하여 J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협의하여 공동주택가격을 별도로 결정·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가격을 공 시하기 위하여 그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 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조사대상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공시사항, 조사·산정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 · 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공동주택가격을 결정 · 공시하여야 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공동 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경우에는 인 근 유사 공동주택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해당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특수성, 공동주택가격 변동의 예 측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 하여야 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공동

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부동산원에 의뢰한다.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공시한 가격에 틀린 계산, 오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 정하여야 한다.
- ® 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대하여는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협조」· J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등」· 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이의신청」및 J타인토지에의 출입 등」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이의신청」제2항 후단 중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는 "J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로 본다.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 이용상황,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 정되는 일단의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중에 서 선정한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이라 한다)을 조사·산정하고, J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 원회」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 격의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 1.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지번
- 2.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 3.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대지면적 및 형 상
- 4.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용도, 연면적, 구조 및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을 포 함한다)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산 정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비주 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을 조사·산정하려는 경우 감정평가법인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가격의 조사·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에게 의뢰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비주거용 표준부동 산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의 거래가격· 임대료 및 해당 비주거용 일반부동산과 유 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비주 거용 일반부동산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 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J비주거용 개별부동 산가격의 결정·공시 등」에 따른 비주거 용 개별부동산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과 산정대상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 (이하 "비주거용 부동산가격비준표"라 한 다)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⑦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에 대

아버는 J표준시공시시가의 소사·평가 및 공시 등 J제2항 ·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 협조 J · J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등 J · J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J 및 J타 인토지에의 출입 등 J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J제2항 후단 중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J "는 "J비주거용 표준 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J "로 본다.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이라 한다)을 조사·산정하여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거쳐 공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결정·공시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가격을 별도로 결정·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공시하지 아니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집합부동 산가격을 공시하기 위하여 비주거용 집합 부동산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주거용 집합부동 산의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 을 들어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조사대상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 기, 공시사항, 조사·산정 기준 및 공시절 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 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가격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비주 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해당 비주거용 집 합부동산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 하여야 한다.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비주 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조사·산정할 때 에는 부동산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가격의 조사·산정에 관한 전문성 이 있는 자에게 의뢰한다.
- ®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공시한 가격에 틀린 계산, 오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 정하여야 한다.
- ⑨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공시에 대해서는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협조」· J

표준시공시시가의 열담 등」· 」표준시공시 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및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표준 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제2항 후단 중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 시 등」"는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로 본다.

(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공시가격이 적정가격을 반영하고 부동산의 유형·지역 등에 따른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부동산 가격의 변동 상황, 지역 간의 형평 성, 해당 부동산의 특수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공청회를 실시하고, J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따른 중앙부동산가 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 장은 부동산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계획에 부합하도록 하 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 이 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 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6명 이내의 공 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토지 · 주택 등에 관한 이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 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자 격이 있는 사람
-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 관련 분야 에서 10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기 전에 미리 관계 전 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 ·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표준주택의 지번
- 2. 표준주택가격
- 3. 표준주택의 대지면적 및 형상
- 4. 표준주택의 용도, 연면적, 구조 및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을 포함한다)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표준주택의 선정, 공시 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산정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표준 주택가격을 조사 · 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 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에 의뢰한 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 주택가격을 조사 · 산정하는 경우에는 인 근 유사 단독주택의 거래가격 · 임대료 _ 및 해당 단독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단독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인근지역 및 다른 지 역과의 형평성 · 특수성, 표준주택가격 변동의 예측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 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J개별주택가격의 결정 · 공시 등 J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표준주택과 산정대상 개별주택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 (이하 "주택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 하여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 하여야 한다.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 공시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J 시·군·구부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따른 시·군·구부 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 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 의 개별주택의 가격(이하 "개별주택가격"이 라 한다)을 결정 · 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 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으로 시 · 군 · 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둔다.
- 1. J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J에 따 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 2. J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J에 따 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3. J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 등 J에 따 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 4. J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 등 J에 따 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5. J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 · 공 시 등 J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의 결정에 관한 사항
- 6. J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 · 공 시 등」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심 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시·군·구부 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주택으로 선정 된 단독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주 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하여는 해당 주택의 표준주택가격을 개별주택가격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개별주택의 지번
- 2. 개별주택가격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 후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 공시하여야 한다.
- ⑤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주택가격 을 결정 · 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과 유 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주

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 하여 가격을 산정하되, 해당 주택의 가격과 표준주택가격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 위하여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표준주택가격과의 균형 등그 타당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원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동산원의 검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주택가격의 변동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부동산원의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표준주택가격과 개별주택 가격과의 균형유지 등 적정한 가격형성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별주 택가격의 결정·공시 등에 관하여 시장·군 수 또는 구청장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및 개별주택가격의 정정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및 」개별공시지가의 정정 」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제2항 후단 중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는 "」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 등」"로 본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 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J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J에 따라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의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별공시지가의 정정)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에 틀린 계산, 오기, 표준지 선정의 착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 공시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J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따른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 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③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주익

이후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 가를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 가를 산정하되, 해당 토지의 가격과 표준 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 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하여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 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감 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지가의 변동상황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법 인등의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에 따른 검증을 받으려는 때에는 해당 지역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한 감정 평가법인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실적 등이 우수한 감정평가법인등 에 의뢰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지가공시 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와의 균형유지 등 적정한지가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검증 및 결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산정의 기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감정평가법 인등의 지정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J**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따른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주택의 가격(이하 "개별주택가격"이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하여는 해당 주택의 표준주택가격을 개별주택가격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공시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개별주택의 지번
- 2. 개별주택가격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주택가격 을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주택가 격을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가격을 산정하되, 해당 주택의 가격과 표준주택가격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주택가 격을 결정 · 공시하기 위하여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표준주택가격과의 균형 등 그 타당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원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들어야 한다. 다만, 시장 · 군수 또는 구청 장은 부동산원의 검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주택가격의 변동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부동산원의 검증의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표준주택가격과 개별 주택가격과의 균형유지 등 적정한 가격형 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 등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도·감독 할 수 있다.
- ®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및 개별 주택가격의 정정에 대하여는 J개별공시지 가에 대한 이의신청」및 J개별공시지가의

정정」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J개별공 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J제2항 후단 중 "J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는 "J 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 등」"로 본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것외에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검증 및 결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산정의기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및 공시절차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검증 및 결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산정의 기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제2항·」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협조」·」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등」·」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및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는 제1항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에 준용한다. 이 경우 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J제2항 후단 중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로 본다.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이하 "표준지공시지가"라 한다)을 조사·평가하고, J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 1. 부동산 가격공시 관계 법령의 제정·개 정에 관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 에 부치는 사항
- 2.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3.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에 따라 조사·평가된 표준지공시 지가
- 4. 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5 대주주택가격의 조사 사장 및 공시

등」에 따른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 6. J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라 조사·산정된 표준주택가격 7. J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에 관한 사항

- 8. J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른 공동주택의 조사 및 산정지침 9. J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라 조사·산정된 공동주택가격 10. J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에 관한 사항
- 11. J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 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 동산의 선정 및 관리지침
- 12. J**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 · 산정 및 공시 등**J에 따라 조사 · 산정된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 13. J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 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 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4. J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 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 동산의 조사 및 산정 지침
- 15. J**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 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라 조사·산정된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 16. J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 · 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7. J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 등 J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부동산정책에 관한 사항 등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 관이 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6명 이내 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 는 사람이 된다.
-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토지 · 주택 등에 관한 이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 람
- 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3.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 관련 분 야에서 10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기 전에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 ·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글 떼에는 데등이어스 이에 띄게 되어 해당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평가 기준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 · 평가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 · 임대료 및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 특수성, 표준지공시지가 변동의 예측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 · 평가할 때에는 업무실적, 신인도(信認度)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 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지가 변동이 작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표준지에 대해서 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할 수 있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 업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 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⑦ 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기 준 및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국토교통부장관은 J개별공시지가의 결정
- · 공시 등」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 지와 산정대상 개별 토지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토지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J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따른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 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 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 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 야 한다.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 가를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 가를 산정하되, 해당 토지의 가격과 표준 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 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하여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각정평가번이들의 건즉을 받고 투지소유

-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에 따른 검증을 받으려는 때에는 해당 지역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한 감정 평가법인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 정평가실적 등이 우수한 감정평가법인등 에 의뢰하여야 한다.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지가공시 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와의 균형유지 등 적정한지가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 ®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검증 및 결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산정의 기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감정평가법 인등의 지정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협조)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의 선정 또는 표준 지공시지가의 조사 ·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해당 토지의 인 · 허가 내용, 개별법에 따른 등록사항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제 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 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 · 평가 및 공시 등 J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한 때에는 그 내용을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도서 · 도표 등으로 작성하여관계 행정기관 등에 공급하여야 한다.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이하 "표준지공시지가"라 한다)을 조사·평가하고, J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위하여 표준지의 가격을 조사· 평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공시기준 일, 공시의 시기, 조사ㆍ평가 기준 및 공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 지공시지가를 조사 · 평가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 · 임대료 및 해 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 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 특수

영, 표군시중시시기 연중의 에목 기증영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 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 지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할 때에는 업무 실적, 신인도(信認度)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 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의뢰 하여야 한다. 다만, 지가 변동이 작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표준지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표준 지공시지가 조사 ·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 평가업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당 업 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⑦ 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기준 및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J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산정대상 개별 토지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토지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 ①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 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및 공시 등」에 따라 해당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여야 한다.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 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 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 가격(이하 "표준지공시지가"라 한다)을 조 사·평가하고, J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 회J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위하여 표준지의 가격을 조사· 평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평가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 지공시지가를 조사 · 평가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 · 임대료 및 해 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 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 특수 성, 표준지공시지가 변동의 예측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 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 지공시지가를 조사 · 평가할 때에는 업무

실적, 신인도(信認度) 등을 고려하여 둘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지가 변동이 작은 경우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표준지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표준 지공시지가 조사 ·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 평가업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당 업 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⑦ 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기준 및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국토교통부장관은 J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산정대상 개별 토지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토지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의 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① 관계 공무원 또는 부동산가격공시업무를 의뢰받은 자(이하 "관계공무원등"이라 한 다)는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 시 등J제4항에 따른 표준지가격의 조사·평

가 또는 J**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J제 4항에 따른 토지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 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
- 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 가격(이하 "표준지공시지가"라 한다)을 조사·평가하고, J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위하여 표준지의 가격을 조사 · 평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공시기준 일, 공시의 시기, 조사 · 평가 기준 및 공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 지공시지가를 조사 · 평가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 · 임대료 및 해 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 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 특수 성, 표준지공시지가 변동의 예측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 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 지공시지가를 조사 · 평가할 때에는 업무 실적, 신인도(信認度)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 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의뢰 하여야 한다. 다만, 지가 변동이 작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표주지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표준 지공시지가 조사 ·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 평가업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당 업 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⑦ 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기준 및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국토교통부장관은 J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산정대상 개별 토지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토지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J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J에 따른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
- 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 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 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 야 한다.
- ④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 가를 결정 · 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 가를 산정하되, 해당 토지의 가격과 표준 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 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하여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 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감 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지가의 변동상황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법 인등의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에 따른 검증을 받으려는 때에는 해당 지역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한 감정 평가법인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 정평가실적 등이 우수한 감정평가법인등 에 의뢰하여야 한다.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지가공시 행정의 합

디식인 발전을 노보아고 표준시공시시가와 개별공시지가와의 균형유지 등 적정한 지가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도 ·감독할 수 있다.

®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검증 및 결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산정의 기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감정평가법 인등의 지정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관계공무원등이 제1항에 따라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 장의 허가(부동산가격공시업무를 의뢰 받은 자에 한정한다)를 받아 출입할 날의 3일 전 에 그 점유자에게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일출 전·일몰 후에는 그 토지의 점유자의 승인 없이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 ④ 제2항에 따라 출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증표와 허가증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표준주택가격"이라 한다)을 조사·산정하고, J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 1. 부동산 가격공시 관계 법령의 제정·개 정에 관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 에 부치는 사항
- 2.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J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3.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J에 따라 조사·평가된 표준지공시지가
- 4. 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5. J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른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 6. J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라 조사·산정된 표준주택가격 7. J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8. J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른 공동주택의 조사 및 산정지침 9. J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라 조사·산정된 공동주택가격 10. J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11. J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 산정 및 공시 등J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 동산의 선정 및 관리지침
- 12. J**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 · 산정 및 공시 등**J에 따라 조사 · 산정된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 13. J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 ·
 산정 및 공시 등」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
 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4. J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 ·
 산정 및 공시 등」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
 동산의 조사 및 산정 지침
 15. J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 ·
 산정 및 공시 등」에 따라 조사 · 산정된 비
 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16. J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 ·
 산정 및 공시 등」에 따라 최수 · 산정된 비
 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16. J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 ·
 산정 및 공시 등」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
 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7. J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 등
 J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부동산정책에 관한 사항 등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 관이 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6명 이내 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 는 사람이 된다.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토지 · 주택 등에 관한 이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 람
- 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3.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 관련 분

야에서 10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기 전에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표준주택의 지번
- 2. 표준주택가격
- 3. 표준주택의 대지면적 및 형상
- 4. 표준주택의 용도, 연면적, 구조 및 사용승 인일(임시사용승인일을 포함한다)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표준주택의 선정, 공시기준 일, 공시의 시기, 조사·산정 기준 및 공시절 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표준주 택가격을 조사·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한 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에 의뢰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주 택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 사 단독주택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해당 단 독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

되는 민축구택의 신혈에 필요한 미융주정택,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 특수성, 표준주택가격 변동의 예측 가능성 등 제반사 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 공시 등」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 주택과 산정대상 개별주택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주택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 등)

-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J**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J에 따른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주택의 가격(이하 "개별주택가격"이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하여는해당 주택의 표준주택가격을 개별주택가격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공시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개별주택의 지번
- 2. 개별주택가격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주택가격 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주택가 격을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가격을 산정하되, 해당 주택의 가격과 표준주택가격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주택가 격을 결정·공시하기 위하여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표준주택가격과의 균형 등 그 타당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원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 장은 부동산원의 검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주택가격의 변동상황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부동산원의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행정의 합리적 인 발전을 도모하고 표준주택가격과 개별 주택가격과의 균형유지 등 적정한 가격형 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 등에 관하 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도·감독 할 수 있다.
- ®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및 개별 주택가격의 정정에 대하여는 J개별공시지 가에 대한 이의신청」및 J개별공시지가의 정정」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J개별공 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J제2항 후단 중 "J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는 "J 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 등」"로 본다.
-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검증 및 결정, 공시기주일, 공시의 시기, 조사·산정의

⑦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J제2항 ·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협조 J · J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등 J · J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J 및 J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J는 제1항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에 준용한다. 이 경우 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J제2항 후단 중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J"는 "J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J"로 본다.

기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이하 "표준지공시지가"라 한다)을 조사·평가하고, J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위하여 표준지의 가격을 조사 · 평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평가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 지공시지가를 조사 · 평가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 · 임대료 및 해 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 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 특수 성, 표준지공시지가 변동의 예측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 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 지공시지가를 조사ㆍ평가할 때에는 업무실적, 신인도(信認度) 등을 고려하여 둘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지가 변동이 작은 경우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표준지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표준 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의뢰받은 감정 평가업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당 업 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⑦ 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기준 및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국토교통부장관은 J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산정대상 개별 토지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토지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협조)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의 선정 또는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해당 토지의 인·허가 내용, 개별법에 따른 등록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의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관계 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요구를 따라야 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한 때에는 그 내용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도서·도표등으로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공급하여야 한다.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 ①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에 따라 해당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여야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의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 ① 관계 공무원 또는 부동산가격공시업무를 의뢰받은 자(이하 "관계공무원등"이라한다)는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J제4항에 따른 표준지가격의 조사·평가 또는 J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J제4항에 따른 토지가격의 산정을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 ② 관계공무원등이 제1항에 따라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부동산가격공시업무를 의뢰 받은 자에 한정한다)를 받아 출입할 날의 3일 전에 그 점유자에게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일출 전 · 일몰 후에는 그 토지의 점유 자의 승인 없이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 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 ④ 제2항에 따라 출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 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증표와 허가증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표준주택가격"이라 한다)을 조사산정하고, J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기에따른 정앙론공산기업공사 한다.

기서 이글 중시아어아 인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표준주택의 지번
- 2. 표준주택가격
- 3. 표준주택의 대지면적 및 형상
- 4. 표준주택의 용도, 연면적, 구조 및 사용 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을 포함한다)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표준주택의 선정, 공시기 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산정 기준 및 공 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표준 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에 의뢰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 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경우에는 인 근 유사 단독주택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해당 단독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다고 인정되는 단독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특수성, 표준주택가격 변동의 예 측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 하여야 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J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 등 J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주택과 산정대상 개별주택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 "주택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 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 다.
- ⑦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제2항·」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협조」·」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등」·」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및 J타인토지에의 출입 등」는 제1항에 따른 표준 주택가격의 공시에 준용한다. 이 경우 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제2항 후단 중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는 "」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로 본다.

J개별주택가격의 결정 · 공시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J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따른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주택의 가격(이하 "개별주택가격"이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둔다.
- 1. J**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J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 2. J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J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 등」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 4. J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 등」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J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공시 등」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 6. J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공시 등J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 하 이의시청에 과하 사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J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따른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 고시하지 아니하 스 이다. 이 겨우 표조지

근 기그는 6개 년년 기 6 7.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심의 에 부치는 사항

- 중시에서 에너를 구 쓰다. 이 중구 표군시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 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 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 야 한다.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 가를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 가를 산정하되, 해당 토지의 가격과 표준 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 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하여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가의 변동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에 따른 검증을 받으려는 때에는 해당 지역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한 감정 평가법인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 정평가실적 등이 우수한 감정평가법인등 에 의뢰하여야 한다.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지가공시 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와의 균형유지 등 적정한지가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 ®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검증 및 결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산정의 기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감정평가법 인등의 지정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 ①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 할 수 있다.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J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J에 따라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의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 등)

♠ 시자 . 그스 ㄸ느 그처자으 : 시 . 그 . 그

♥ 시영 ' 군구 모든 무영영은 J에 ' 군 ' 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따른 시 · 군 · 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주택의 가격(이하 "개별주택가격"이라 한다)을 결정 · 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하여는 해당 주택의 표준주택가격을 개별주택가격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공시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개별주택의 지번
- 2. 개별주택가격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주택가격 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주택가 격을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가격을 산정하되, 해당 주택의 가격과 표준주택가격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주택가 격을 결정·공시하기 위하여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표준주택가격과의 균형 등 그 타당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원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들어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 장은 부동산원의 검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주택가격의 변동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부동산원의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행정의 합리적 인 발전을 도모하고 표준주택가격과 개별 주택가격과의 균형유지 등 적정한 가격형 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 공시 등에 관하 여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도 · 감독 할 수 있다.
- ®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및 개별 주택가격의 정정에 대하여는 J개별공시지 가에 대한 이의신청」및 J개별공시지가의 정정」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J개별공 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J제2항 후단 중 "J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는 "J 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 등」"로 본다.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것외에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검증 및 결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산정의기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및 공시절차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공시등)

- ① 시상·군수 또는 구성상은 J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따른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비주거용 개별부동산의 가격(이하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이라 한다)을 결정·공시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비주거용 개별부동산의 가격을 별도로 결정·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주거용 표준부 동산으로 선정된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에 대하여는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으로 선정된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에 대하여는 해당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으로 개별부동산 대하여는 해당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을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 격의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 1. 비주거용 부동산의 지번
- 2.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가격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비주거용 개 별부동산가격을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주거용 일반부동산과 유사한 이용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가격을 기준으로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가격을 산정하되, 해당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의 가격과 비주 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이 균형을 유지하도 록 하여야 한다.
- ⑥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비주거용 개 별부동산가격을 결정 · 공시하기 위하여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의 가격을 산정할 때 에는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과의 균형 등 그 타당성에 대하여 기비주거용 표준부 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 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 · 산 정을 의뢰 받은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자의 검증을 받고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의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 장은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검 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비주거 용 부동산가격의 변동상황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행정의 합리적 인 발전을 도모하고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가격과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과의 균 형유지 등 적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가격의 결정 · 공시 등에 관하여 시 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도 · 감독할 수 있다.
- ® 비즈거요 개별브도사가겨에 대하 이이

의 비구기당 개월구당 단기 국에 테던 에 다신청 및 정정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및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2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제2항 후단 중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는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공시 등」"로 본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것외에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산정, 검증 및 결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산정의 기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주택으로 선 정된 단독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개별주택가격 을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하 여는 해당 주택의 표준주택가격을 개별 주택가격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개별주택의 지번
- 2. 개별주택가격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
- 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축 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 정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 격비준표를 사용하여 가격을 산정하되, 해당 주택의 가격과 표준주택가격이 균 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하기 위하여 개별주택 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표준주택가격 과의 균형 등 그 타당성에 대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원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 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동산원의 검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주택가격의 변동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부동산원의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행정의 합리적 인 발전을 도모하고 표준주택가격과 개 별주택가격과의 균형유지 등 적정한 가 격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 등 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 도·감독할 수 있다.
- ⑧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및 개별주택가격의 정정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및 」개별공시지가의 정정」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

J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제2항 후단 중 "J개별공시지가의 결정 · 공시 등」"는 "J개별주택가격의 결정 · 공시 등」"로 본다. 성·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상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의결정·공시 등」에 따라 해당 개별공시지가 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J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따른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 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 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 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 야 한다.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 가를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

가를 산정하되, 해당 토지의 가격과 표준 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 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하여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가의 변동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에 따른 검증을 받으려는 때에는 해당 지역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한 감정 평가법인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 정평가실적 등이 우수한 감정평가법인등 에 의뢰하여야 한다.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지가공시 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와의 균형유지 등 적정한지가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 ®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검증 및 결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산정의 기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감정평가법 인등의 지정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개별공시지가의 정정)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에 틀린 계산, 오기, 표준지 선정의 착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세·지방세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하기 위하여 J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 원회」에 따른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로 선정된 토 지에 대하여는 해당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 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되, 해당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하여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감정 평가법인등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그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지가의 변동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으로 시·군 ·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둔다.
- 1. J**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J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 2. J**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J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3. J**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 등**J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 4. J**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 등**J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5. J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공 시 등 J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의 결정에 관한 사항
- 6. J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공 시 등J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심

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시 \cdot 군 \cdot 구부 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에 따른 검증을 받으려는 때에는 해당 지역의 표준지 의 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한 감정평가법인 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실적 등이 우수한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지가공시 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와의 균형유지 등 적정한 지가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검증 및 결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산정의 기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감정평가법인등의 지정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J시·군·구부 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따른 시·군·구부 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 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 의 개별주택의 가격(이하 "개별주택가격"이 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 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으로 시·군 ·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둔다.
- 1. J**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J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 2. J**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J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3. J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 등 J에 따

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 4. J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 등 J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5. J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공 시 등 J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의 결정에 관한 사항
- 6. J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공 시 등 J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작·구소 또는 구청작이 신
- 7.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심 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시·군·구부 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주택으로 선정 된 단독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주 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하여는 해당 주택의 표준주택가격을 개별주택가격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개별주택의 지번
- 2. 개별주택가격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주택가격 을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과 유

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주 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 하여 가격을 산정하되, 해당 주택의 가격과 표준주택가격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 위하여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표준주택가격과의 균형 등그 타당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원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동산원의 검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주택가격의 변동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부동산원의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표준주택가격과 개별주택 가격과의 균형유지 등 적정한 가격형성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별주 택가격의 결정·공시 등에 관하여 시장·군 수 또는 구청장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 ®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및 개별주택가격의 정정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및 」개별공시지가의 정정 」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제2항 후단 중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는 "」개별주택가 격의 결정・공시 등」"로 본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 ①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 할 수 있다.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J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에 따라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의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별공시지가의 정정)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에 틀린 계산, 오기, 표준지 선정의 착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 공시 등)

-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J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따른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 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 ③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주익

이후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 가를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 가를 산정하되, 해당 토지의 가격과 표준 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 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하여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가의 변동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에 따른 검증을 받으려는 때에는 해당 지역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한 감정 평가법인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 정평가실적 등이 우수한 감정평가법인등 에 의뢰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지가공시 행정의 합 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표준지공시지가 와 개별공시지가와의 균형유지 등 적정한

지가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도 ·감독할 수 있다.

®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검증 및 결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산정의 기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감정평가법 인등의 지정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J**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따른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주택의 가격(이하 "개별주택가격"이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하여는 해당 주택의 표준주택가격을 개별주택가격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공시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개별주택의 지번
- 2. 개별주택가격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우에 도시의 문알 · 압명이나 건숙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주택가격 을 결정 · 공시하여야 한다.

-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주택가 격을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가격을 산정하되, 해당 주택의 가격과 표준주택가격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주택가 격을 결정·공시하기 위하여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표준주택가격과의 균형 등 그 타당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원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 장은 부동산원의 검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주택가격의 변동상황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부동산원의 검증의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행정의 합리적 인 발전을 도모하고 표준주택가격과 개별 주택가격과의 균형유지 등 적정한 가격형 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 공시 등에 관하 여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도 · 감독 할 수 있다.
- ®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및 개별 주택가격의 정정에 대하여는 J개별공시지 가에 대한 이의신청」및 J개별공시지가의 정정」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J개별공 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J제2항 후단 중 "J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로 본다. 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 등」"로 본다.
- ®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것외에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검증 및 결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산정의기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및 공시절차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검증 및 결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산정의 기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검증 및 결 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산 정의 기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및 공 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J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공동주택가격"이라 한다)을 조사·산 정하여 J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주택가격을 별도로 결정·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 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부동산 가격공시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2.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이하 "표준지공시지가"라 한다)을 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

- 5. J 보준시공시시기의 소사·생기 및 공시 등 J에 따라 조사·평가된 표준지공시지가 4. J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J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5. J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른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 6. J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라 조사·산정된 표준주택가격
- 7. J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8. J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른 공동주택의 조사 및 산정지침 9. J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 9. J용동수택가격의 소사·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라 조사·산정된 공동주택가격 10. J<mark>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mark>
- 10. J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에 관한 사항
- 11. J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산 정 및 공시 등 J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의 선정 및 관리지침
- 12. J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산 정 및 공시 등」에 따라 조사·산정된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 13. J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산 정 및 공시 등 J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14. J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산 정 및 공시 등 J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의 조사 및 산정 지침
- 15. J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J에 따라 조사·산정된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 16. J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 · 산
- 정 및 공시 등」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17. J**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 등** J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18. 그 밖에 부동산정책에 관한 사항 등 국 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회**」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위하여 표준지의 가격을 조사 · 평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평가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 지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해 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 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특수 성, 표준지공시지가 변동의 예측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 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 지공시지가를 조사ㆍ평가할 때에는 업무 실적, 신인도(信認度)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 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의뢰 하여야 한다. 다만, 지가 변동이 작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표준지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표준 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의뢰받은 감정 평가업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당 업 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⑦ 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기준 및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J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산정대상 개별 토지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토지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 ①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등」에 따라 해당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여야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의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 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 (이하 "표준주택가격"이라 한다)을 조사·산정하고, J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표준주택의 지번
- 2. 표준주택가격
- 3. 표준주택의 대지면적 및 형상
- 4. 표준주택의 용도, 연면적, 구조 및 사용 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을 포함한다)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표준주택의 선정, 공시기 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산정 기준 및 공 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표준 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에 의뢰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 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경우에는 인 근 유사 단독주택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해당 단독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다고 인정되는 단독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특수성, 표준주택가격 변동의 예 측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 하여야 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J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 등」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주택과 산정대상 개별주택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주택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⑦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제2항·」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협조」·」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등」·」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및 J타인토지에의 출입 등」는 제1항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에 준용한다. 이 경우 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제2항 후단 중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는 "」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로 본다.

(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공동주택가격"이라 한다)을 조사·산정하여 J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주택가격을 별도로 결정·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가격을 공

시아기 귀아서 그 기억을 현용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 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조사대상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공시사항, 조사·산정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 · 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공동주택가격을 결정 · 공시하여야 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공동 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경우에는 인 근 유사 공동주택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해당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특수성, 공동주택가격 변동의 예 측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 하여야 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공동 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부동산원에 의뢰한다.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공시한 가격에 틀린 계산, 오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 정하여야 한다.
- ® 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대하여는 J표준 지공시지가의 조사협조」· J표준지공시지 가의 열람 등」· 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및 J타인토지에의 출입 등」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제2항 후단 중 "J표준 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는 "J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로 본다.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 이용상황,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 정되는 일단의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중에 서 선정한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이라 한다)을 조사·산정하고, J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 원회」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 격의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 1.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지번
- 2.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 3.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대지면적 및 형 상
- 4.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용도, 연면적, 구조 및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을 포 함한다)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산

정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비주 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을 조사·산정하려는 경우 감정평가법인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가격의 조사·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에게 의뢰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비주거용 표준부동 산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의 거래가격· 임대료 및 해당 비주거용 일반부동산과 유 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비주 거용 일반부동산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 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J비주거용 개별부동 산가격의 결정·공시 등 J에 따른 비주거 용 개별부동산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과 산정대상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 (이하 "비주거용 부동산가격비준표"라 한 다)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②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에 대하여는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J제2항 · J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등 J · J 표준지공시지가에 열람 등 J · J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J 및 J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J를 각각 준용한다. 이경우 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J제2항 후단 중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J"는 "J비주거용 표준

부동산가격의 조사 · 산정 및 공시 등」"로 본다.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이라 한다)을 조사·산정하여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거쳐 공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결정·공시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가격을 별도로 결정·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공시하지 아니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집합부동 산가격을 공시하기 위하여 비주거용 집합 부동산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주거용 집합부동 산의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 을 들어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조사대상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 기, 공시사항, 조사·산정 기준 및 공시절 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문할 · 합병이나 건죽물의 신죽 능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가격을 결정 · 공시하여야 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비주 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해당 비주거용 집 합부동산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 하여야 한다.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비주 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조사·산정할 때 에는 부동산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가격의 조사·산정에 관한 전문성 이 있는 자에게 의뢰한다.
- ®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공시한 가격에 틀린 계산, 오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 정하여야 한다.
- ®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공시에 대해서는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협조」·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협조」· 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및 J타인토지에의 출입 등」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제2항 후단중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는 "J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조사·산정 및 공시 등」"로 본다.

(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공시가격이 적정가격을 반영하고 부동산의 유형·지역 등에 따른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부동산 가격의 변동 상황, 지역 간의 형평 성, 해당 부동산의 특수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공청회를 실시하고, J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 장은 부동산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계획에 부합하도록 하 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 이 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 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6명 이내의 공 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토지 · 주택 등에 관한 이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 관련 분야 에서 10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기 전에 미리 관계 전 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 ·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가격을 공 시하기 위하여 그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 택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 을 들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조사대상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공시사 항, 조사·산정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 · 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공동주택가격
- 을 결정 · 공시하여야 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공동 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경우에는 인 근 유사 공동주택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해당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인근지역 및 다른 지 역과의 형평성·특수성, 공동주택가격 변동의 예측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 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공동 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부동산원에 의뢰한다.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공시한 가격에 틀린 계산, 오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 ® 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대하여는 」표 준지공시지가의 조사협조」· 」표준지공 시지가의 열람 등」·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및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표준지공 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제2항 후단 중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는 "」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로 본다.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협조)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의 선정 또는 표준 지공시지가의 조사 ·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해당 토지의 인 · 허가 내용, 개별법에 따른 등록사항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제 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 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 · 평가 및 공시 등 J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 를 고기한 메에트 그 내용은 트립니다. 관연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들 중시안 때에는 그 내용을 득열시성 · 정역 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에 한정 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 일반인이 열 람할 수 있게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이를 도서 · 도표 등으로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공급하여야 한다.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이하 "표준지공시지가"라 한다)을 조사·평가하고, J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위하여 표준지의 가격을 조사· 평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ㆍ평가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 지공시지가를 조사 · 평가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 · 임대료 및 해 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 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 특수 성, 표준지공시지가 변동의 예측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 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 지공시지가를 조사 · 평가할 때에는 업무 실적, 신인도(信認度)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

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의뢰 하여야 한다. 다만, 지가 변동이 작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표준지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표준 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의뢰받은 감정 평가업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당 업 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⑦ 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기준 및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국토교통부장관은 J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산정대상 개별 토지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토지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 ①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 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및 공시 등」에 따라 해당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저하여 다니 고시하여야 하다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 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 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 고등이어 되지 증시이어야 한다.

가격(이하 "표준지공시지가"라 한다)을 조사·평가하고, J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위하여 표준지의 가격을 조사 · 평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평가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 지공시지가를 조사 · 평가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 · 임대료 및 해 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 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 특수 성, 표준지공시지가 변동의 예측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 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 지공시지가를 조사ㆍ평가할 때에는 업무실적, 신인도(信認度) 등을 고려하여 둘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지가 변동이 작은 경우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표준지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표준 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의뢰받은 감정 평가업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당 업 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⑦ 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기준 및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국토교통부장관은 J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산정대상 개별 토지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토지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의 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① 관계 공무원 또는 부동산가격공시업무를 의뢰받은 자(이하 "관계공무원등"이라 한다)는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J제4항에 따른 표준지가격의 조사·평가 또는 J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J제4항에 따른 토지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 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 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 가격(이하 "표준지공시지가"라 한다)을 조 사·평가하고, J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위하여 표준지의 가격을 조사 ·

정기월 때에는 대충성당으도 정이는 마에 따라 해당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 · 평가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 지공시지가를 조사 · 평가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 · 임대료 및 해 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 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 특수 성, 표준지공시지가 변동의 예측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 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 지공시지가를 조사ㆍ평가할 때에는 업무 실적, 신인도(信認度)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 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의뢰 하여야 한다. 다만, 지가 변동이 작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표준지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표준 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의뢰받은 감정 평가업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당 업 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⑦ 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기준 및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국토교통부장관은 J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산정대상 개별 토지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토지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 공시 등)

-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J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따른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 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 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 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 야 한다.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 가를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이나 또는 할 이용의 표준시의 중시시기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 가를 산정하되, 해당 토지의 가격과 표준 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 가를 결정 · 공시하기 위하여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다만,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가의 변동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에 따른 검증을 받으려는 때에는 해당 지역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한 감정 평가법인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 정평가실적 등이 우수한 감정평가법인등 에 의뢰하여야 한다.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지가공시 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와의 균형유지 등 적정한지가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 ®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검증 및 결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산정의 기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감정평가법 인등의 지정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관계공무원등이 제1항에 따라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 장의 허가(부동산가격공시업무를 의뢰 받은 자에 한정한다)를 받아 출입할 날의 3일 전 에 그 점유자에게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일출 전·일몰 후에는 그 토지의 점유자의 승인 없이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 ④ 제2항에 따라 출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증표와 허가증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이하 "표준지공시지가"라 한다)을 조사·평가하고, J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 1. 부동산 가격공시 관계 법령의 제정·개 정에 관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 에 부치는 사항
- 2.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3.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에 따라 조사·평가된 표준지공시지가

- 4. 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5. J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른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 6. J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라 조사·산정된 표준주택가격 7. J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8. J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른 공동주택의 조사 및 산정지침 9. J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라 조사·산정된 공동주택가격 10. J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11. J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 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 동산의 선정 및 관리지침
- 12. J**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J에 따라 조사·산정된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 13. J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 산정 및 공시 등」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 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4. J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 산정 및 공시 등」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 동산의 조사 및 산정 지침
- 15. J**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J에 따라 조사·산정된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 16. J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 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 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17. J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 등 J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부동산정책에 관한 사항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 관이 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6명 이내 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 는 사람이 된다.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토지 · 주택 등에 관한 이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 라
- 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3.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 관련 분 야에서 10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기 전에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 ·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위하여 표준지의 가격을 조사·평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해당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평가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 · 평가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 · 임대료 및 해당 토지 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 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 특수성, 표준지공 시지가 변동의 예측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할 때에는 업무실적, 신인도(信認度)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 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지가 변동이 작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표준지에 대해서 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할 수 있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 업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 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⑦ 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기 준 및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공시 등」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 지와 산정대상 개별 토지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토지가격비준 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 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J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따른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 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 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 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 야 한다.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 가를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 가를 산정하되, 해당 토지의 가격과 표준 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 가를 결정 · 공시하기 위하여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다만,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가의 변동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에 따른 검증을 받으려는 때에는 해당 지역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한 감정 평가법인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 정평가실적 등이 우수한 감정평가법인등 에 의뢰하여야 한다.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지가공시 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와의 균형유지 등 적정한지가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 ®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검증 및 결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산정의 기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감정평가법 인등의 지정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공동주택가격"이라 한다)을 조사·산정하여 J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주택가격을 별도로 결정·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 1. 부동산 가격공시 관계 법령의 제정·개 정에 관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 에 부치는 사항
- 2.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3.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에 따라 조사·평가된 표준지공시지가
- 4. 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5. J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른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 6. J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라 조사·산정된 표준주택가격
- 7. J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에 관한 사항
- 8. J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른 공동주택의 조사 및 산정지침 9. J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라 조사·산정된 공동주택가격 10. J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11. J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 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 동산의 선정 및 관리지침
- 12. J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 산정 및 공시 등J에 따라 조사·산정된 비 자기요 표조비도사기계

テクサ エモテちひがら

13. J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 · 산정 및 공시 등]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 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4. J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 · 산정 및 공시 등」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 동산의 조사 및 산정 지침 15. J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 · 산정 및 공시 등」에 따라 조사 · 산정된 비 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16. J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 · 산정 및 공시 등」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 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7. J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 등 」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부동산정책에 관한 사항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 관이 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6명 이내 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 는 사람이 된다.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토지 · 주택 등에 관한 이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 라
- 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3.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 관련 분 야에서 10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기 전에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 ·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가격을 공시 하기 위하여 그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소유자 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 다
- ③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조사대상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공시사항, 조사·산정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공동주 택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 사 공동주택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해당 공 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 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특수성,

공동주택가격 변동의 예측 가능성 등 제반사 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공동주 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부동 산원에 의뢰한다.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공시한 가격에 틀린 계산, 오기, 그 밖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 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 야 한다.
- ® 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대하여는 J표준지 공시지가의 조사협조」· J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등」· 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 청」 및 J타인토지에의 출입 등」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제2항 후단 중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로 본다.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협조)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의 선정 또는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 ·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해당 토지의 인 · 허가 내용, 개별법에 따른 등록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의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관계 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요구를 따라야 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한 때에는 그 내용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도서·도표등으로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공급하여야 한다.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 ①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 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 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등」에 따라 해당 표준 지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의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 ① 관계 공무원 또는 부동산가격공시업무를 의뢰받은 자(이하 "관계공무원등"이라한다)는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및 공시 등J제4항에 따른 표준지가격의조사·평가 또는 J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J제4항에 따른 토지가격의 산정을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 ② 관계공무원등이 제1항에 따라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부동산가격공시업무를 의뢰 받은 자에 한정한다)를 받아 출입할 날의 3일 전에 그 점유자에게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점유자를 알 수 어게 나 보드이하 사으가 이느 겨오에는 그

짜기의 구극적인 작품기 쓰는 중구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 ③ 일출 전·일몰 후에는 그 토지의 점유 자의 승인 없이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 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 ④ 제2항에 따라 출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 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증표와 허가증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 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 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 가격(이하 "표준지공시지가"라 한다)을 조 사·평가하고, J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 회J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위하여 표준지의 가격을 조사 · 평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 · 평가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 지공시지가를 조사 · 평가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 · 임대료 및 해 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 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 특수 성, 표준지공시지가 변동의 예측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 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 지공시지가를 조사ㆍ평가할 때에는 업무실적, 신인도(信認度) 등을 고려하여 둘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지가 변동이 작은 경우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표준지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표준 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의뢰받은 감정 평가업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당 업 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⑦ 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기준 및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국토교통부장관은 J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산정대상 개별 토지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토지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사정 및 공시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공동주택가격"이라 한다)을 조사·산정하여 J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협의하여 공동주택가격을 별도로 결정·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가격을 공 시하기 위하여 그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 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조사대상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공시사항, 조사·산정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 · 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공동주택가격을 결정 · 공시하여야 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공동 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경우에는 인 근 유사 공동주택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해당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 형평성 · 특수성, 공동주택가격 변동의 예 측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 하여야 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공동 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부동산원에 의뢰한다.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공시한 가격에 틀린 계산, 오기,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 ® 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대하여는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협조」· J표준지공시지가의 역함 등」· 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이의신청」및 J타인토지에의 출입 등」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이의신청」제2항 후단 중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는 "J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로 본다.

Ј주택가격 공시의 효력∫

- ① 표준주택가격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가격 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 ②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 이용상황,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중에서 선정한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이라 한다)을 조사·산정하고, J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공시할 수 있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 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부동산 가격공시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 에 관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2.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3.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에 따라 조사·평가된 표준지공시지가 4. 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5. J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른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 6. J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라 조사·산정된 표준주택가격 7. J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8. J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른 공동주택의 조사 및 산정지침 9. J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라 조사·산정된 공동주택가격 10. J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11. J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산 정 및 공시 등 J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의 선정 및 관리지침
- 12. J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산 정 및 공시 등 J에 따라 조사·산정된 비주거 용 표준부동산가격
- 13. J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14. J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조사 및 산정 지침
- 15. J**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산** 정 및 공시 등 J에 따라 조사·산정된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 16. J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17. J**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 등** J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18. 그 밖에 부동산정책에 관한 사항 등 국 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이하 "표준지공시지가"라 한다)을 조사·평가하고, J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위하여 표준지의 가격을 조사· 평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평가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 지공시지가를 조사 · 평가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 · 임대료 및 해 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 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 특수 성, 표준지공시지가 변동의 예측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 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 지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할 때에는 업무 실적, 신인도(信認度)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 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의뢰 하여야 한다. 다만, 지가 변동이 작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표준지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표준 지공시지가 조사 ·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 평가업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당 업 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⑦ 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기준 및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국토교통부장관은 J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산정대상 개별 토지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토지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 ①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 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

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J에 따라 해당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여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의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표준주택가격"이라 한다)을 조사·산정하고, J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표준주택의 지번
- 2. 표준주택가격
- 3. 표준주택의 대지면적 및 형상
- 4. 표준주택의 용도, 연면적, 구조 및 사용 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을 포함한다)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표준주택의 선정, 공시기 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산정 기준 및 공 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표준

주택가격을 조사 · 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에 의뢰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 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경우에는 인 근 유사 단독주택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해당 단독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다고 인정되는 단독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특수성, 표준주택가격 변동의 예 측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 하여야 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J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 등」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주택과 산정대상 개별주택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주택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⑦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제2항·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협조」·J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등」·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및 J타인토지에의 출입 등」는 제1항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에 준용한다. 이 경우 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제2항 후단 중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는 "J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로 본다.

(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공동주택가격"이라 한다)을 조사·산정하여 J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협의하여 공동주택가격을 별도로 결정·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가격을 공 시하기 위하여 그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 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조사대상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공시사항, 조사·산정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 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공동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여야 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공동 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경우에는 인 근 유사 공동주택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해당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특수성, 공동주택가격 변동의 예 측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 하여야 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공동 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부동산원에 의뢰한다.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공시한 가격에 틀린 계산, 오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 정하여야 한다.
- ® 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대하여는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협조」· J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등」· 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이의신청」및 J타인토지에의 출입 등」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이의신청」제2항 후단 중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는 "J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로 본다.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 이용상황,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 정되는 일단의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중에 서 선정한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이라 한다)을 조사·산정하고, J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 원회」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 격의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 1.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지번
- 2 비즈거요 표주브도사가견

- 4. 되구기의 파고구의 다기의 3.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대지면적 및 형 사
- 4.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용도, 연면적, 구조 및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을 포 함한다)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산 정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비주 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을 조사·산정하려는 경우 감정평가법인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가격의 조사·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에게 의뢰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비주거용 표준부동 산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의 거래가격· 임대료 및 해당 비주거용 일반부동산과 유 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비주 거용 일반부동산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 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J비주거용 개별부동 산가격의 결정·공시 등」에 따른 비주거 용 개별부동산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과 산정대상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 (이하 "비주거용 부동산가격비준표"라 한 다)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②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에 대하여는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J제2항·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 협조 J·J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등 J·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J및 J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J를 각각 준용한다. 이경우 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J제2항 후단 중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J"는 "J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J"로본다.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이라 한다)을 조사·산정하여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거쳐 공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또는 구청장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결정·공시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가격을 별도로 결정·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공시하지 아니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집합부동 산가격을 공시하기 위하여 비주거용 집합 부동산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주거용 집합부동

산의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조사대상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 기, 공시사항, 조사·산정 기준 및 공시절 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 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가격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비주 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해당 비주거용 집 합부동산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 하여야 한다.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비주 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조사·산정할 때 에는 부동산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가격의 조사·산정에 관한 전문성 이 있는 자에게 의뢰한다.
- ®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공시한 가격에 틀린 계산, 오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 정하여야 한다.
- ⑨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공시에 대

해서는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협조」· J 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등」· J표준지공시 지가에 대한 이의신청」및 J타인토지에의 출입 등」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J표준 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제2항 후단 중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 시 등」"는 "J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로 본다.

(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공시가격이 적정가격을 반영하고 부동산의 유형·지역 등에 따른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부동산 가격의 변동 상황, 지역 간의 형평 성, 해당 부동산의 특수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공청회를 실시하고, J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 장은 부동산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계획에 부합하도록 하 여야 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 이 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 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6명 이내의 공 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토지· 주택 등에 관한 이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 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자 격이 있는 사람
- 3.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 관련 분야 에서 10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 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기 전에 미리 관계 전 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 ·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 격의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 1.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지번
- 2.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 3.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대지면적 및

- 4.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용도, 연면적, 구조 및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을 포함한다)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 · 산정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비주 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을 조사·산정하려 는 경우 감정평가법인등 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부동산 가격의 조사 · 산정 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에게 의뢰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비주거용 표준부동 산가격을 조사 · 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의 거래가격 · 임대료 및 해당 비주거용 일반부동산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J비주거용 개별부 동산가격의 결정 · 공시 등 J에 따른 비주 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과 산정대상 비주거용 개별부 동산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비주거용 부동산가격비준 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 · 군수 또 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공시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J 시·군·구부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따른 시·군·구부 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비 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비주거용 개별부동산의 가격 (이하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이라 한 다)을 결정·공시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그네처자이 그ㅌㅠㅌㅂ자라고 혀이치어 비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으로 시 · 군 · 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둔다.
- 1. J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J에 따 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 2. J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J에 따 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국세경경이 국도교충구경진과 합의이어 미 주거용 개별부동산의 가격을 별도로 결정 ·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사항

- 3. J**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 등**J에 따 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 4. J**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 등**J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5. J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공 시 등 J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의 결정에 관한 사항
- 6. J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공 시 등 J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그 방에 시장·구수 또는 구청장이 신
- 7.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심 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시·군·구부 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주거용 표준부동 산으로 선정된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에 대 하여는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 ·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으로 선정된 비주거용 일반부동 산에 대하여는 해당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 격을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의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
- 1. 비주거용 부동산의 지번
- 2.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
- 후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 격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가격을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해 당 비주거용 일반부동산과 유사한 이용가치 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가격을 기준으로 비주거용 부동산가격비준 표를 사용하여 가격을 산정하되, 해당 비주 거용 일반부동산의 가격과 비주거용 표준부 동산가격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가격을 결정・공시하기 위하여 비주 거용 일반부동산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비 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과의 균형 등 그 타당 성에 대하여 J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른 비주거용 표 준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을 의뢰 받은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검증을 받고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의 소유자와 그 밖의 이 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가격에 대한 검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변동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검증 을 생략할 수 있다.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 이용상황,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 정되는 일단의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중에 서 선정한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이라 한다)을 조사·산정하고, J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 원회」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 격의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 1.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지번
- 2.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 3.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대지면적 및 형 상
- 4.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용도, 연면적, 구조 및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을 포 함한다)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산 정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비주 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을 조사 · 산정하려는 경우 감정평가법인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가격의 조사 · 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에게 의뢰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비주거용 표준부동 산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의 거래가격· 임대료 및 해당 비주거용 일반부동산과 유 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비주 거용 일반부동산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 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J비주거용 개별부동 산가격의 결정·공시 등J에 따른 비주거 용 개별부동산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과 산정대상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 (이하 "비주거용 부동산가격비준표"라 한 다)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⑦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에 대하여는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J제2항 ·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 협조 J · J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등 J · 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J 및 J타

인토지에의 출입 등」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J제2항 후단 중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 ·평가 및 공시 등」"는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가격의 조사 · 산정 및 공시 등」"로 본다.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과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과의 균형유지 등 적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의 결정·공시 등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 ®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정정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및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2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제2항 후단 중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는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공시 등 」 기로 본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 ①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 할 수 있다.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J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J에 따라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의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J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따른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 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 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 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 야 한다.
- ④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 가를 결정 · 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 가를 산정하되, 해당 토지의 가격과 표준 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 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하여 개별토지의
-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가의 변동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에 따른 검증을 받으려는 때에는 해당 지역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한 감정 평가법인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 정평가실적 등이 우수한 감정평가법인등 에 의뢰하여야 한다.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지가공시 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와의 균형유지 등 적정한지가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 ®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검증 및 결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산정의 기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감정평가법 인등의 지정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공시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J**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J에 따른 시·군· 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비주거용 표주부독산가격의 공시기

전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의 가격(이하 "비주거용 개별부동 산가격"이라 한다)을 결정 · 공시할 수 있 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국토교 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비주거용 개별부동 산의 가격을 별도로 결정 · 고시하는 경우 는 제외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주거용 표준부 동산으로 선정된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에 대하여는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으로 선정된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에 대하여는 해당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기록을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 격의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 1. 비주거용 부동산의 지번
- 2.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가격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비주거용 개 별부동산가격을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주거용 일반부동산과 유사한 이용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가격을 기준으로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가격을 산정하되, 해당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의 가격과 비주 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이 균형을 유지하도 록 하여야 한다.
-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비주거용 개 별부동산가격을 결정 · 공시하기 위하여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의 가격을 산정할 때 에는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과의 균형 등 그 타당성에 대하여 기비주거용 표준부 동산가격의 조사 · 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 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 · 산 정을 의뢰 받은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자의 검증을 받고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의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시장 · 군수 또는 구청 장은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검 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비주거 용 부동산가격의 변동상황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행정의 합리적 인 발전을 도모하고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가격과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과의 균 형유지 등 적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가격의 결정 · 공시 등에 관하여 시 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도 · 감독할 수 있다.
- ®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정정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및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2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 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제2항

후단 중 "J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J"는 "J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 ·공시 등J"로 본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것외에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산정, 검증 및 결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산정의 기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산정, 검증 및 결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산 정의 기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및 공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에 대하여는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J제2항·J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등J·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및 J타인토지에의 출입 등J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J제2항 후단 중 "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J제2항 후단 중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J"는 "J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J"로 본다.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 ·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이하 "표준지공시지가"라 한다)을 조사 · 평가하고, J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 1. 부동산 가격공시 관계 법령의 제정·개 정에 관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 에 부치는 사항
- 2.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3.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에 따라 조사·평가된 표준지공시지가
- 4. 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5. J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른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 6. J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라 조사·산정된 표준주택가격 7. J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8. J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른 공동주택의 조사 및 산정지침 9. J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라 조사·산정된 공동주택가격 10. J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에 관한 사항
- 11. J**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 ·** 산정 및 공시 등J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 동산의 선정 및 관리지침
- 12. J**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 · 산정 및 공시 등**J에 따라 조사 · 산정된 비 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 13. J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 · 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 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4. J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 · 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
- 동산의 조사 및 산정 지침 15. J**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 · 산정 및 공시 등**J에 따라 조사 · 산정된 비 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 16. J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 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 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7. J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 등 J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18. 그 밖에 무농산정잭에 관한 사항 능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 관이 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6명 이내 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 는 사람이 된다.
-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토지 · 주택 등에 관한 이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 람
- 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3.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 관련 분 야에서 10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기 전에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 ·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공
- 시하기 위하여 표준지의 가격을 조사 · 평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해당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평가 기준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 · 평가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 · 임대료 및 해당 토지 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 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 특수성, 표준지공 시지가 변동의 예측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할 때에는 업무실적, 신인도(信認度)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 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지가 변동이 작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표준지에 대해서 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할 수 있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 업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 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⑦ 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기 준 및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구트교토브자과으 □개**변고시되가이 견저 / 게벼고**니되기에 겨저 . 고니 트V

(개월당시시기의 월영 ' 당시 당/

-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세·지방 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 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J시·군·구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에 따른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 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 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 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 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 야 한다.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 가를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 가를 산정하되, 해당 토지의 가격과 표준 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

가를 결정 · 공시하기 위하여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 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감 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지가의 변동상황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법 인등의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에 따른 검증을 받으려는 때에는 해당 지역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한 감정 평가법인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 정평가실적 등이 우수한 감정평가법인등 에 의뢰하여야 한다.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지가공시 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와의 균형유지 등 적정한지가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 ®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검증 및 결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산정의 기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감정평가법 인등의 지정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협조)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의 선정 또는 표준 지공시지가의 조사 ·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해당 토지의 인 · 허가 내용, 개별법에 따른 등록사항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제 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 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J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한 때에는 그 내용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도서·도표 등으로 작성하여관계 행정기관 등에 공급하여야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이하 "표준지공시지가"라 한다)을 조사·평가하고, J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위하여 표준지의 가격을 조사· 평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평가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 지공시지가를 조사 · 평가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 · 임대료 및 해 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 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 특수 성, 표준지공시지가 변동의 예측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 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 지공시지가를 조사ㆍ평가할 때에는 업무실적, 신인도(信認度) 등을 고려하여 둘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지가 변동이 작은 경우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표준지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표준 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의뢰받은 감정 평가업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당 업 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⑦ 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기준 및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국토교통부장관은 J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산정대상 개별 토지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토지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표하하다 이하 간다)으로 구트교통보자과에 포함한다. 에에 트네/프포 녹포파증구승단에 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및 공시 등」에 따라 해당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여야 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이하 "표준지공시지가"라 한다)을 조사·평가하고, J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위하여 표준지의 가격을 조사· 평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 · 평가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 지공시지가를 조사 · 평가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 · 임대료 및 해 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 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 특수 성, 표준지공시지가 변동의 예측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 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 지공시지가를 조사ㆍ평가할 때에는 업무실적, 신인도(信認度) 등을 고려하여 둘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지가 변동이 작은 경우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표준지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표준 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의뢰받은 감정 평가업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당 업 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⑦ 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기준 및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국토교통부장관은 J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산정대상 개별 토지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토지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의 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① 관계 공무원 또는 부동산가격공시업무를 의뢰받은 자(이하 "관계공무원등"이라 한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나)는 J 보준시공시시가의 소사·평가 및 중시 등 J제4항에 따른 표준지가격의 조사·평가 또는 J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J제 4항에 따른 토지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이하 "표준지공시지가"라 한다)을 조사·평가하고, J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위하여 표준지의 가격을 조사· 평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평가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 지공시지가를 조사 · 평가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 · 임대료 및 해 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 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 특수 성, 표준지공시지가 변동의 예측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 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 지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할 때에는 업무 실적, 신인도(信認度)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

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의뢰 하여야 한다. 다만, 지가 변동이 작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표준지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표준 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의뢰받은 감정 평가업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당 업 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⑦ 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기준 및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국토교통부장관은 J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산정대상 개별 토지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토지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J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J에 따른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들 결성 ·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 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 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 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 야 한다.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 가를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 가를 산정하되, 해당 토지의 가격과 표준 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 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하여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 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감 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지가의 변동상황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법 인등의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에 따른 검증을 받으려는 때에는 해당 지역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한 감정 평가법인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 정평가실적 등이 우수한 감정평가법인등
- 에 의뢰하여야 한다.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지가공시 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와의 균형유지 등 적정한지가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 ®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검증 및 결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산정의 기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감정평가법 인등의 지정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관계공무원등이 제1항에 따라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 장의 허가(부동산가격공시업무를 의뢰 받은 자에 한정한다)를 받아 출입할 날의 3일 전 에 그 점유자에게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일출 전 · 일몰 후에는 그 토지의 점유자의 승인 없이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 ④ 제2항에 따라 출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증표와 허가증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 · 산정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 이용상황,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 되는 일단의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중에서 선 정한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에 대하여 매년 공 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이라 한다)을 조사·산정하 고, J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따른 중 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를 공시할 수 있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 1. 부동산 가격공시 관계 법령의 제정·개 정에 관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 에 부치는 사항
- 2.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3.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에 따라 조사·평가된 표준지공시지가
- 4. 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5. J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른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 6. J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라 조사·산정된 표준주택가격 7. J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8. J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른 공동주택의 조사 및 산정지침 9. J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라 조사·산정된 공동주택가격 10. J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11. J**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 · 산정 및 공시 등**J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 동산의 선정 및 관리지침
- 12. J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 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라 조사·산정된 비 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 13. J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 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 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4. J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 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 동산의 조사 및 산정 지침
- 15. J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 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라 조사·산정된 비 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 16. J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 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 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7. J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 등 J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부동산정책에 관한 사항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 관이 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6명 이내 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 는 사람이 된다.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토지 · 주택 등에 관한 이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 람
- 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3.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 관련 분 야에서 10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기 전에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 ·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의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
- 1.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지번
- 2.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 3.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대지면적 및 형상
- 4.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용도, 연면적, 구 조 및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을 포함한 다)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산정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을 조사·산정하려는 경우 감정평가법인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가격의 조사·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에게 의뢰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해당 비주거용 일반부동산과 유사한 이용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비주거용 일반부 동산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 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J비주거용 개별부동산 가격의 결정·공시 등 J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과 산정대상 비주거용 개별부동산의 가격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비주거용 부동산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공시 등)

-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J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따른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비주거용 개별부동산의 가격(이하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이라 한다)을 결정·공시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비주거용 개별부동산의 가격을 별도로 결정·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주거용 표준부 동산으로 선정된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주거용 일반부동 산에 대하여는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을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 우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으로 선정된 비주 거용 일반부동산에 대하여는 해당 비주거 용 표준부동산가격을 비주거용 개별부동 산가격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 겨이 고시에는 다은 가 ㅎ이 사하이 표하

크리 증시에는 다듬 ㅋ 포리 시중의 포함 되어야 한다.

- 1. 비주거용 부동산의 지번
- 2.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가격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비주거용 개 별부동산가격을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주거용 일반부동산과 유사한 이용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가격을 기준으로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가격을 산정하되, 해당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의 가격과 비주 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이 균형을 유지하도 록 하여야 한다.
-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비주거용 개 별부동산가격을 결정 · 공시하기 위하여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의 가격을 산정할 때 에는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과의 균형 등 그 타당성에 대하여 」비주거용 표준부 동산가격의 조사 · 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 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 · 산 정을 의뢰 받은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자의 검증을 받고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의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 장은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검 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비주거 용 부동산가격의 변동상황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행정의 합리적 인 발전을 도모하고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가격과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과의 균 형유지 등 적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가격의 결정 · 공시 등에 관하여 시 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도 · 감독할 수 있다.
- ®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정정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및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2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제2항 후단 중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는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공시 등」"로 본다.
-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산정, 검 증 및 결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 사·산정의 기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⑦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에 대하여는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J제2항·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협조 J·J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등J·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및 J타인토지에의 출입 등J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J제2항 후단중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등J"는 "J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선정 및 공시 등J"로 본다.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 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 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 가격(이하 "표준지공시지가"라 한다)을 조 사ㆍ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

의 J에 따든 숭양무농산가격공시위원회의 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위하여 표준지의 가격을 조사· 평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 · 평가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 지공시지가를 조사 · 평가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 · 임대료 및 해 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 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 특수 성, 표준지공시지가 변동의 예측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 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 지공시지가를 조사ㆍ평가할 때에는 업무 실적, 신인도(信認度)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 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의뢰 하여야 한다. 다만, 지가 변동이 작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표준지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표준 지공시지가 조사 ·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 평가업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당 업 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⑦ 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기준 및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국토교통부장관은 J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산정대상 개별 토지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토지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협조)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의 선정 또는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 ·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해당 토지의 인 · 허가 내용, 개별법에 따른 등록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의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관계 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요구를 따라야 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한 때에는 그 내용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도서·도표등으로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공급하여야 한다.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 ①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에 따라 해당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여야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의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 ① 관계 공무원 또는 부동산가격공시업무를 의뢰받은 자(이하 "관계공무원등"이라한다)는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J제4항에 따른 표준지가격의 조사·평가 또는 J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J제4항에 따른 토지가격의 산정을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 ② 관계공무원등이 제1항에 따라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부동산가격공시업무를 의뢰 받은 자에 한정한다)를 받아 출입할
- 날의 3일 전에 그 점유자에게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일출 전·일몰 후에는 그 토지의 점유 자의 승인 없이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 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 ④ 제2항에 따라 출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 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증표와 허가증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 이용상황,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 정되는 일단의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중에 서 선정한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이라 한다)을 조사·산정하고, J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 원회」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 격의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 1.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지번
- 2.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 3.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대지면적 및 형 상
- 4.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용도, 연면적,

下文 및 시청중단원(검시시청중단원을 포 함한다)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산 정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비주 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을 조사·산정하려는 경우 감정평가법인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가격의 조사·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에게 의뢰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비주거용 표준부동 산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의 거래가격· 임대료 및 해당 비주거용 일반부동산과 유 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비주 거용 일반부동산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 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J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공시 등J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과 산정대상 비주거용 개별부동산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비주거용 부동산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⑦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에 대하여는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J제2항·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

협조 J· J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등 J· J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J 및 J타 인토지에의 출입 등 J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J제2항 후단 중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 · 평가 및 공시 등 J"는 "J비주거용 표준 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J"로 본다.

J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공시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J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따른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비주거용 개별부동산의 가격(이하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이라 한다)을 결정·공시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비주거용 개별부동산의 가격을 별도로 결정·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둔다.
- 1. J**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J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 2. J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J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 등」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 4. J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 등」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J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공시 등」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 6. J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공시 등」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 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심의 에 부치는 사항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 공시 등)

-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J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따른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 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

아버는 내동덩덩으도 영야는 달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 공시하여 야 한다.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 가를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 가를 산정하되, 해당 토지의 가격과 표준 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 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하여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 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감 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지가의 변동상황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법 인등의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에 따른 검증을 받으려는 때에는 해당 지역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한 감정 평가법인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 정평가실적 등이 우수한 감정평가법인등 에 의뢰하여야 한다.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지가공시 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와의 균형유지 등 적정한지가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 ®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검증 및 결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산정의 기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감정평가법 인등의 지정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 ①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 할 수 있다.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J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J에 따라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의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J**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J에 따른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주택의 가격(이하 "개별주택가격"이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 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하여는해당 주택의 표준주택가격을 개별주택가격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공시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개별주택의 지번
- 2. 개별주택가격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주택가격 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주택가 격을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가격을 산정하되, 해당 주택의 가격과 표준주택가격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주택가 격을 결정·공시하기 위하여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표준주택가격과의 균형 등 그 타당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원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 들어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 장은 부동산원의 검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주택가격의 변동상황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부동산 원의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표준주택가격과 개별주택가격과의 균형유지 등 적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 등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 ®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및 개별 주택가격의 정정에 대하여는 J개별공시지 가에 대한 이의신청」및 J개별공시지가의 정정」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J개별공 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J제2항 후단 중 "J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는 "J 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 등」"로 본다.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검증 및 결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산정의 기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공시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J**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따른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비주거용 개별부동산의 가격(이하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기격"이라 한다)을 결정·공시할 수 있다. 다마 대투려령으로 저희는 바에 따라

다. 나고, 네ㅎㅎㅎ 보고 하이는 비에 떠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국토교 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비주거용 개별부동 산의 가격을 별도로 결정 · 고시하는 경우 는 제외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주거용 표준부 동산으로 선정된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에 대하여는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으로 선정된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에 대하여는 해당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기록을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 격의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 1. 비주거용 부동산의 지번
- 2.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가격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비주거용 개 별부동산가격을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주거용 일반부동산과 유사한 이용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가격을 기준으로 비주거용 부동산
- 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가격을 산정하되, 해당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의 가격과 비주 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이 균형을 유지하도 록 하여야 한다.
-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비주거용 개 별부동산가격을 결정 · 공시하기 위하여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의 가격을 산정할 때 에는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과의 균형 등 그 타당성에 대하여 J비주거용 표준부 동산가격의 조사 · 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 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 · 산 정을 의뢰 받은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자의 검증을 받고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의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 장은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검 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비주거 용 부동산가격의 변동상황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행정의 합리적 인 발전을 도모하고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가격과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과의 균 형유지 등 적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가격의 결정 · 공시 등에 관하여 시 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도 · 감독할 수 있다.
- ®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정정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및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2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 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제2항 후단 중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J"는 "J비주거용 개열무농산가격의 결정 ·공시 등J"로 본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산정, 검 증 및 결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 사·산정의 기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시 \cdot 군 \cdot 구부동 산가격공시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주거용 표준부 동산으로 선정된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가격을 결정 ·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으로 선정된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에 대하여는 해당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을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 격의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 1. 비주거용 부동산의 지번
- 2.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비주

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 · 공시하여 야 한다.

-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주거용 일반부동산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을 기준으로 비주거용 부동산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가격을 산정하되, 해당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의가격과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 · 공시하기 위하 여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의 가격을 산정 할 때에는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과의 균형 등 그 타당성에 대하여 기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 · 산정 및 공시 등」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 · 산정을 의뢰 받은 자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의 검증을 받고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의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 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비주거용 개별부 동산가격에 대한 검증이 필요 없다고 인 정하는 때에는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변동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을 고려하여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 이용상황,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 되는 일단의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중에서 선 정한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에 대하여 매년 공 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이라 한다)을 조사·산정하 고, J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J에 따른 중 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를 공시할 수 있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 1. 부동산 가격공시 관계 법령의 제정·개 정에 관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 에 부치는 사항
- 2.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3.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에 따라 조사·평가된 표준지공시지가
- 4. 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5. J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른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 6. J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라 조사·산정된 표준주택가격 7. J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에 관한 사항

8. J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른 공동주택의 조사 및 산정지침 9. J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라 조사·산정된 공동주택가격 10. J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1. J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 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 동산의 선정 및 관리지침

12. J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 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라 조사·산정된 비 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13. J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 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 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4. J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

14. J**비수거용 십압무동산가격의 소사ㆍ 산정 및 공시 등**J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 동산의 조사 및 산정 지침

15. J**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된 비** 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16. J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 · 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7. J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 등 J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부동산정책에 관한 사항 등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 관이 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6명 이내 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 는 사람이 된다.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토지 · 주택 등에 관한 이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 라
- 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3.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 관련 분 야에서 10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기 전에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 · 연구를의뢰할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의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
- 1.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지번
- 2.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 3.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대지면적 및 형상
- 4.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용도, 연면적, 구
- 조 및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을 포함하

- ^ 100ce(마개기00cee - ac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산정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을 조사·산정하려는 경우 감정평가법인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가격의 조사·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에게 의뢰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해당 비주거용 일반부동산과 유사한 이용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비주거용 일반부 동산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 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J비주거용 개별부동산 가격의 결정·공시 등 J에 따른 비주거용 개 별부동산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과 산정대상 비주거용 개별부동산의 가격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비주거 용 부동산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 다.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공시 등)

-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J**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따른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비주거용 개별부동산의 가격(이하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이라 한다)을 결정·공시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비주거용 개별부동산의 가격을 별도로 결정·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주거용 표준부 동산으로 선정된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주거용 일반부동 산에 대하여는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을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 우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으로 선정된 비주 거용 일반부동산에 대하여는 해당 비주거 용 표준부동산가격을 비주거용 개별부동 산가격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 격의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 1. 비주거용 부동산의 지번
- 2.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가격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주거용 일반부동산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을 기준으로 비주거용 부동산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가격을 산정하되, 해당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의 가격과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비주거용 개 별부동산가격을 결정·공시하기 위하여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의 가격을 산정할 때

에는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과의 균형 등 그 타당성에 대하여 J비주거용 표준부 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J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을 의뢰 받은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검증을 받고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의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들어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 장은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검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변동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검증을 생략할수 있다.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행정의 합리적 인 발전을 도모하고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가격과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과의 균 형유지 등 적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가격의 결정·공시 등에 관하여 시 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 ®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정정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및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2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제2항 후단 중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는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공시 등」"로 본다.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것외에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산정, 검증 및 결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
- 사·산정의 기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⑦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에 대하여는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J제2항·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협조 J·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J및 J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J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J제2항 후단중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등 J"는 "J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J"로 본다.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이하 "표준지공시지가"라 한다)을 조사·평가하고, J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위하여 표준지의 가격을 조사· 평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공시기준 일, 공시의 시기, 조사ㆍ평가 기준 및 공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 지공시지가를 조사 · 평가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 · 임대료 및 해 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 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 특수 성, 표준지공시지가 변동의 예측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 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 지공시지가를 조사ㆍ평가할 때에는 업무실적, 신인도(信認度) 등을 고려하여 둘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지가 변동이 작은 경우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표준지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표준 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의뢰받은 감정 평가업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당 업 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⑦ 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기준 및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국토교통부장관은 J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산정대상 개별 토지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토지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협조)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의 선정 또는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해당 토지의 인·허가 내용, 개별법에 따른 등록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의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관계 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요구를 따라야 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J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한 때에는 그 내용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도서·도표등으로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공급하여야 한다.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 ①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 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 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에 따라 해당 표준 지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의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① 관계 공무원 또는 부동산가격공시업무

를 의뢰받은 자(이하 "관계공무원등"이라 한다)는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J제4항에 따른 표준지가격의 조사·평가 또는 J개별공시지가의 결정· 공시 등J제4항에 따른 토지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 할 수 있다.

- ② 관계공무원등이 제1항에 따라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부동산가격공시업무를 의뢰 받은 자에 한정한다)를 받아 출입할 날의 3일 전에 그 점유자에게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일출 전·일몰 후에는 그 토지의 점유 자의 승인 없이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 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 ④ 제2항에 따라 출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 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증표와 허가증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 이용상황,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 정되는 일단의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중에 서 선정한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이라 한다)을 조사·산정하고, J**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 원회」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 격의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 1.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지번
- 2.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 3.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대지면적 및 형 상
- 4.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용도, 연면적, 구조 및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을 포 함한다)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산 정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비주 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을 조사·산정하려는 경우 감정평가법인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가격의 조사·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에게 의뢰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비주거용 표준부동 산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의 거래가격· 임대료 및 해당 비주거용 일반부동산과 유 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비주 거용 일반부동산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 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J비주거용 개별부동

산가격의 결정·공시 등」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과 산정대상 비주거용 개별부동산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비주거용 부동산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⑦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에 대하여는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J제2항·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 협조J·J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등J·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및 J타인토지에의 출입 등J를 각각 준용한다. 이경우 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J제2항 후단 중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J"로본다.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행정의 합리적 인 발전을 도모하고 비주거용 표준부동 산가격과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과의 균형유지 등 적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 · 공시 등에 관하 여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도 · 감 독할 수 있다.
- ®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정정에 대하여는 J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및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2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J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J제2항 후단 중 "J개별공시지가의결정・공시 등」"는 "J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공시 등」"로 본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 ①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
- 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의결정·공시 등」에 따라 해당 개별공시지가 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J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따른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 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 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 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 야 한다.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 가를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 가를 산정하되, 해당 토지의 가격과 표준 되고니되기가 그렇은 오지치도로 하여야

시당시시기기 판성할 규시약도속 약석약 한다.

-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 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하여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 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감 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지가의 변동상황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법 인등의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에 따른 검증을 받으려는 때에는 해당 지역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한 감정 평가법인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실적 등이 우수한 감정평가법인등 에 의뢰하여야 한다.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지가공시 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와의 균형유지 등 적정한지가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 ®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검증 및 결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산정의 기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감정평가법 인등의 지정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의 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세·지방세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하기 위하여 J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 원회」에 따른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으로 시·군 ·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둔다.
- 1. J**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J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 2. J**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J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3. J**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 등** J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 4. J**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 등**J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5. J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공 시 등 J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의 결정에 관한 사항
- 6. J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공 시 등 J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심
-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시·군·구부 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로 선정된 토 지에 대하여는 해당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 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 후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 공시하여야 한다.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 를 결정 · 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와 유 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 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 되. 해당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 를 결정 · 공시하기 위하여 개별토지의 가격 을 산정할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감정 평가법인등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 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가의 변동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항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생 략할 수 있다.
- ⑥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에 따른 검증을 받으려는 때에는 해당 지역의 표준지 의 공시지가를 조사 · 평가한 감정평가법인 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실적 등이 우수한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여야 하다.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지가공시 행정의 합리 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표준지공시지가와 개 별공시지가와의 균형유지 등 적정한 지가형 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 공시 등에 관하여 시 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도 · 감독할 수 있 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 에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검증 및 결정, 공시 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산정의 기준, 이 해관계인의 의견청취, 감정평가법인등의 지 정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공시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J 시·군·구부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따른 시·군·구부 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비 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비주거용 개별부동산의 가격 (이하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이라 한 다)을 결정·공시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비 주거용 개별부동산의 가격을 별도로 결정 ·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으로 시 · 군 · 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둔다.
- 1. 기개별공시지가의 결정 · 공시 등 기에 따 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 2.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 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3. J**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 등**J에 따 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 4. J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 등 J에 따 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5. J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 · 공 시 등 J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의 결정에 관한 사항
- 6.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 · 공 시 등」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심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시·군·구부 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주거용 표준부동 산으로 선정된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에 대 하여는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 ·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으로 선정된 비주거용 일반부동 산에 대하여는 해당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 격을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의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
- 1. 비주거용 부동산의 지번
- 2.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가격을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해 당 비주거용 일반부동산과 유사한 이용가치 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가격을 기준으로 비주거용 부동산가격비준 표를 사용하여 가격을 산정하되, 해당 비주 거용 일반부동산의 가격과 비주거용 표준부 동산가격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가격을 결정・공시하기 위하여 비주 거용 일반부동산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비 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과의 균형 등 그 타당 성에 대하여 J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른 비주거용 표 준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을 의뢰 받은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검증을 받고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의 소유자와 그 밖의 이 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가격에 대한 검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변동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검증 을 생략할 수 있다.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 이용상황,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 정되는 일단의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중에 서 선정한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이라 한다)을 조사·산정하고, J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 원회」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 격의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 1.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지번
- 2.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 3.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대지면적 및 형 상
- 4.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용도, 연면적, 구조 및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을 포 함한다)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산 정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비주 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을 조사·산정하려는 경우 감정평가법인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가격의 조사·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에게 의뢰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비주거용 표준부동 사가격을 조사·사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의 거래가격 · 임대료 및 해당 비주거용 일반부동산과 유 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비주 거용 일반부동산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 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J비주거용 개별부동 산가격의 결정·공시 등」에 따른 비주거 용 개별부동산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과 산정대상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 (이하 "비주거용 부동산가격비준표"라 한 다)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②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에 대하여는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J제2항·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 협조 J·J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등 J·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J및 J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J를 각각 준용한다. 이경우 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J제2항 후단 중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J"는 "J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J"로본다.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과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과의 균형유지 등 적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의 결정·공시 등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 ®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정정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및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2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제2항 후단 중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는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공시 등 」 『로 본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 ①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 할 수 있다.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J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J에 따라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의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J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따른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니 투지 그 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는 소의, 그 함께 제공 88 - 포 8위 도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 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 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 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 야 한다.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 가를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 가를 산정하되, 해당 토지의 가격과 표준 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 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하여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 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감 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지가의 변동상황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법 인등의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에 따른 검증을 받으려는 때에는 해당 지역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한 감정 평가법인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 정평가실적 등이 우수한 감정평가법인등 에 의뢰하여야 한다.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지가공시 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와의 균형유지 등 적정한지가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 ®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검증 및 결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산정의 기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감정평가법 인등의 지정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공시 등)

-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J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따른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비주거용 개별부동산의 가격(이하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이라 한다)을 결정·공시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비주거용 개별부동산의 가격을 별도로 결정·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주거용 표준부 동산으로 선정된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주거용 일반부동 산에 대하여는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을 결정 ·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

두 미구기당 표군무당인으도 인정된 미구 거용 일반부동산에 대하여는 해당 비주거 용 표준부동산가격을 비주거용 개별부동 산가격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 격의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 1. 비주거용 부동산의 지번
- 2.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 · 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가격을 결정 · 공시하여야 한다.
-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비주거용 개 별부동산가격을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주거용 일반부동산과 유사한 이용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가격을 기준으로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가격을 산정하되, 해당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의 가격과 비주 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이 균형을 유지하도 록 하여야 한다.
-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공시하기 위하여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과의 균형등 그 타당성에 대하여 J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을 의뢰 받은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자의 검증을 받고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의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들어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검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변동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검증을 생략할수 있다.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행정의 합리적 인 발전을 도모하고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가격과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과의 균 형유지 등 적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가격의 결정 · 공시 등에 관하여 시 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도 · 감독할 수 있다.
- ®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정정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및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2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제2항 후단 중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는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공시 등」"로 본다.
-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산정, 검 증 및 결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 사·산정의 기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및 열성, 중시기군물, 중시의 시기, 소사 · 선정의 기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산정, 검증 및 결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 · 산정의 기준,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J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이라 한다)을 조사·산정하여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심의를 거쳐 공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결정·공시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가격을 별도로 결정·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공시하지 아니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집합부동 산가격을 공시하기 위하여 비주거용 집 합부동산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주거용 집

합부동산의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 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조사대상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 기, 공시사항, 조사·산정 기준 및 공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 · 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비주거용 집합 부동산가격을 결정 · 공시하여야 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비주 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비주거용 집합부동 산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해당 비주거 용 집합부동산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 닌다고 인정되는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 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비주 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조사·산정할 때 에는 부동산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부동산 가격의 조사·산정에 관한 전 문성이 있는 자에게 의뢰한다.
-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공시한 가격에 틀린 계산, 오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 ⑨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공시에 대해서는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협조

J. J표군시증시시/[의 월급 중]. J표군 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및 J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J제2항 후단 중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 사·평가 및 공시 등」"는 "J비주거용 집 합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J"로 본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의 선정 또는 표준 지공시지가의 조사 ·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해당 토지의 인 · 허가 내용, 개별법에 따른 등록사항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제 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 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 · 평가 및 공시 등 J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한 때에는 그 내용을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도서 · 도표 등으로 작성하여관계 행정기관 등에 공급하여야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이하 "표준지공시지가"라 한다)을 조사·평가하고, J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위하여 표준지의 가격을 조사 · 평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평가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 지공시지가를 조사 · 평가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 · 임대료 및 해 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 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 특수 성, 표준지공시지가 변동의 예측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 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 지공시지가를 조사ㆍ평가할 때에는 업무실적, 신인도(信認度) 등을 고려하여 둘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지가 변동이 작은 경우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표준지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표준 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의뢰받은 감정 평가업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당 업 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⑦ 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기준 및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국토교통부장관은 J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산정대상 개별 토지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토지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표준시공시시기에 내안 이의신정)

- ①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 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및 공시 등」에 따라 해당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여야 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이하 "표준지공시지가"라 한다)을 조사·평가하고, J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위하여 표준지의 가격을 조사· 평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평가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 지공시지가를 조사 · 평가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 · 임대료 및 해 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 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 특수 성, 표준지공시지가 변동의 예측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 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 지공시지가를 조사ㆍ평가할 때에는 업무실적, 신인도(信認度) 등을 고려하여 둘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지가 변동이 작은 경우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표준지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표준 지공시지가 조사 ·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 평가업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당 업 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⑦ 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기준 및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국토교통부장관은 J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산정대상 개별 토지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토지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의 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① 관계 공무원 또는 부동산가격공시업무를

의뢰받은 자(이하 "관계공무원등"이라 한다)는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J제4항에 따른 표준지가격의 조사·평가 또는 J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J제4항에 따른 토지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 가격(이하 "표준지공시지가"라 한다)을 조사·평가하고, J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위하여 표준지의 가격을 조사· 평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공시기준 일, 공시의 시기, 조사ㆍ평가 기준 및 공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 지공시지가를 조사 · 평가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 · 임대료 및 해 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 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 특수 성, 표준지공시지가 변동의 예측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 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 지공시지가를 조사 · 평가할 때에는 업무 실적, 신인도(信認度) 등을 고려하여 둘
- 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 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의뢰 하여야 한다. 다만, 지가 변동이 작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표준지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표준 지공시지가 조사 ·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 평가업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당 업 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⑦ 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기준 및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국토교통부장관은 J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산정대상 개별 토지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토지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J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J에 따른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 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 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 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 야 한다.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 가를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 가를 산정하되, 해당 토지의 가격과 표준 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 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하여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 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감 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지가의 변동상황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법 인등의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에 따른 검증을 받으려는 때에는 해당 지역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한 감정 평가법인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실적 등이 우수한 감정평가법인등 에 의뢰하여야 한다.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지가공시 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와의 균형유지 등 적정한지가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 ®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검증 및 결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산정의 기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감정평가법 인등의 지정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관계공무원등이 제1항에 따라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 장의 허가(부동산가격공시업무를 의뢰 받은 자에 한정한다)를 받아 출입할 날의 3일 전 에 그 점유자에게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일출 전·일몰 후에는 그 토지의 점유자의 승인 없이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 ④ 제2항에 따라 출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증표와 허가증에 필요한 사하으 그트교투법적으로 저하다.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이하 "표준지공시지가"라 한다)을 조사·평가하고, J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 1. 부동산 가격공시 관계 법령의 제정·개 정에 관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 에 부치는 사항
- 2.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3.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에 따라 조사·평가된 표준지공시 지가
- 4. 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5. J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른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 6. J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라 조사·산정된 표준주택가격 7. J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8. J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른 공동주택의 조사 및 산정지침 9. J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라 조사·산정된 공동주택가격 10. J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11. J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 ·

산정 및 공시 등」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 동산의 선정 및 관리지침

- 12. J**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 · 산정 및 공시 등**J에 따라 조사 · 산정된 비 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 13. J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 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 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4. J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 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 동산의 조사 및 산정 지침
- 15. J**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라 조사·산정된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 16. J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 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 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7. J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 등 J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부동산정책에 관한 사항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 관이 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6명 이내 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 는 사람이 된다.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토지 · 주택 등에 관한 이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 람

- 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3.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 관련 분 야에서 10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기 전에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 ·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공 시하기 위하여 표준지의 가격을 조사·평가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평가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 · 평가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 · 임대료 및 해당 토지 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 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 특수성, 표준지공 시지가 변동의 예측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ㆍ평가할 때에는 업무실적, 신인도(信認度)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 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지가 변동이 작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표준지에 대해서 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할 수 있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 업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 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⑦ 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기 준 및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공시 등」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 지와 산정대상 개별 토지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토지가격비준 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 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J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J에 따른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 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 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 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 야 한다.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 가를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 가를 산정하되, 해당 토지의 가격과 표준 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 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하여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 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감 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지가의 변동상황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법 인등의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에 따른 검증을 받으려는 때에는 해당 지역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한 감정 평가법인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 정평가실적 등이 우수한 감정평가법인등 에 의뢰하여야 한다.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지가공시 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와의 균형유지 등 적정한지가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 ®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검증 및 결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산정의 기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감정평가법 인등의 지정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이라 한다)을 조사·산정하여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결정·공시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가격을 별도로 결정·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공시하지 아니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가격을 공시하기 위하여 비주거용 집합부동 사이 가격은 사저하 때에느 대통려려이르 저

으크 기국을 보증을 빼깨는 네ㅎㅎㅎ으로 증하는 바에 따라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소유 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조 사대상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공 시사항, 조사·산정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해당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조사·산정할 때에는 부동산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가격의 조사·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에게 의뢰한다.
- ®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공시한 가격에 틀린 계산, 오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 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 야 한다.
- ⑨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공시에 대해서는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협조」・」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등」・」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및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제2항 후단 중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제2항 후단 중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는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로 본다.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협조)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의 선정 또는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해당 토지의 인ㆍ허가 내용, 개별법에 따른 등록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의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관계 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요구를 따라야 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한 때에는 그 내용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도서·도표등으로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공급하여야 한다.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 ①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등」에 따라 해당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여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의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 ① 관계 공무원 또는 부동산가격공시업무를 의뢰받은 자(이하 "관계공무원등"이라한다)는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및 공시 등 J제4항에 따른 표준지가격의조사·평가 또는 J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J제4항에 따른 토지가격의 산정을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수 있다.
- ② 관계공무원등이 제1항에 따라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부동산가격공시업무를 의뢰 받은 자에 한정한다)를 받아 출입할 날의 3일 전에 그 점유자에게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일출 전·일몰 후에는 그 토지의 점유 자의 승인 없이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 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 ④ 제2항에 따라 출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 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증표와 허가증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이하 "표준지공시지가"라 한다)을 조사·평가하고, J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위하여 표준지의 가격을 조사· 평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공시기준 일, 공시의 시기, 조사ㆍ평가 기준 및 공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 지공시지가를 조사 · 평가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 · 임대료 및 해 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 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 특수 성, 표준지공시지가 변동의 예측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 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 지공시지가를 조사ㆍ평가할 때에는 업무 실적, 신인도(信認度)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이 「간정평가 및 간정평가사에 과하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지가 변동이 작은 경우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표준지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표준 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의뢰받은 감정 평가업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당 업 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⑦ 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기준 및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국토교통부장관은 J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산정대상 개별 토지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토지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이라 한다)을 조사·산정하여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거쳐 공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결정·공시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가격을 별도로 결정·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공시하지 아니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집합부동 산가격을 공시하기 위하여 비주거용 집합 부동산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주거용 집합부동 산의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 을 들어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조사대상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 기, 공시사항, 조사·산정 기준 및 공시절 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 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가격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비주 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해당 비주거용 집 합부동산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 하여야 한다.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비주 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조사·산정할 때 에느 브독사워 또느 대통령령으로 정하느

에는 무슨단단 모든 테흐흐흐는도 증억 부동산 가격의 조사 · 산정에 관한 전문성 이 있는 자에게 의뢰한다.

-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공시한 가격에 틀린 계산, 오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 정하여야 한다.
- ⑨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공시에 대 해서는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협조J·J 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등」· 」표준지공시 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및 J타인토지에의 출입 등」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J표준 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J제2항 후단 중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 시 등」"는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로 본다.

」비주거용 부동산가격공시의 효력」

①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 · **산정 및 공시 등**」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가격은 국가 · 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비주거용 개별부동 산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 다.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 이용상황,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 되는 일단의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중에서 선 정한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에 대하여 매년 공 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이라 한다)을 조사 · 산정하 고, J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J에 따른 중 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를 공시할 수 있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 1. 부동산 가격공시 관계 법령의 제정 · 개 정에 관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 에 부치는 사항
- 2.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 · 평가 및 공 시 등]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3.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 · 평가 및 공 시 등 J에 따라 조사 · 평가된 표준지공시
- 4. 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J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지가

- 5. J표준주택가격의 조사 · 산정 및 공시 등」에 따른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 6. J표준주택가격의 조사 · 산정 및 공시 등」에 따라 조사 · 산정된 표준주택가격 7. J표준주택가격의 조사 · 산정 및 공시 등」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에 관한 사항
- 8. J공동주택가격의 조사 · 산정 및 공시 등」에 따른 공동주택의 조사 및 산정지침 9. J공동주택가격의 조사 · 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라 조사 · 산정된 공동주택가격 10. J공동주택가격의 조사 · 산정 및 공시 등」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에 관한 사항
- 11.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 · 산정 및 공시 등」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 동산의 선정 및 관리지침
- 12. J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 · 산정 및 공시 등」에 따라 조사 · 산정된 비 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 13. J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 · 산정 및 공시 등」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 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4.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 ·
- 산정 및 공시 등」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 동산의 조사 및 산정 지침
- 15. J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 · 산정 및 공시 등」에 따라 조사 · 산정된 비 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 16. J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 · 산정 및 공시 등」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

농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정에 관한 사항 17. J**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 등** J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부동산정책에 관한 사항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 관이 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6명 이내 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 는 사람이 된다.
-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토지 · 주택 등에 관한 이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 람
- 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3.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 관련 분 야에서 10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기 전에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 ·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의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
- 1.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지번
- 2.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 3.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대지면적 및 형상
- 4.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용도, 연면적, 구조 및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을 포함한다)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산정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을 조사·산정하려는 경우 감정평가법인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가격의 조사·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에게 의뢰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해당 비주거용 일반부동산과 유사한 이용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비주거용 일반부 동산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 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J비주거용 개별부동산 가격의 결정·공시 등 J에 따른 비주거용 개 별부동산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과 산정대상 비주거용 개별부동산의 가격형성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공시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J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J에 따른 시·군· 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인에 판단 표준식인 미교표(이야 "미우거 용 부동산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 다 매년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기 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의 가격(이하 "비주거용 개별부동 산가격"이라 한다)을 결정 · 공시할 수 있 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국토교 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비주거용 개별부동 산의 가격을 별도로 결정 · 고시하는 경우 는 제외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주거용 표준부 동산으로 선정된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에 대하여는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으로 선정된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에 대하여는 해당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기록을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 격의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 1. 비주거용 부동산의 지번
- 2.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 · 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가격을 결정 · 공시하여야 한다.
-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비주거용 개 별부동산가격을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주거용 일반부동산과 유사한 이용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가격을 기준으로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가격을 산정하되, 해당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의 가격과 비주 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이 균형을 유지하도 록 하여야 한다.

- ⑥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비주거용 개 별부동산가격을 결정 · 공시하기 위하여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의 가격을 산정할 때 에는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과의 균형 등 그 타당성에 대하여 」비주거용 표준부 동산가격의 조사 · 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 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 · 산 정을 의뢰 받은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자의 검증을 받고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의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 장은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검 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비주거 용 부동산가격의 변동상황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행정의 합리적 인 발전을 도모하고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가격과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과의 균 형유지 등 적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가격의 결정 · 공시 등에 관하여 시 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도 · 감독할 수 있다.
- ®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정정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및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2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

부 J개별공시시가에 내면 이의선정J제∠망후단 중 "J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J"는 "J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공시 등」"로 본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산정, 검 증 및 결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 사·산정의 기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⑦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에 대하여는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J제2항·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협조 J·J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등J·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및 J타인토지에의 출입 등J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J제2항 후단중 "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J제2항 후단중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등J"는 "J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J"로 본다.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이하 "표준지공시지가"라 한다)을 조사·평가하고, J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위하여 표준지의 가격을 조사· 평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공시기준 일, 공시의 시기, 조사ㆍ평가 기준 및 공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

지공시지가를 조사 · 평가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 · 임대료 및 해 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 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 특수 성, 표준지공시지가 변동의 예측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 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 지공시지가를 조사ㆍ평가할 때에는 업무실적, 신인도(信認度) 등을 고려하여 둘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지가 변동이 작은 경우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표준지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표준 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의뢰받은 감정 평가업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당 업 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⑦ 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기준 및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국토교통부장관은 J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산정대상 개별 토지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토지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협조)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의 선정 또는 표

준지공시지가의 조사 ·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해당 토지의 인 · 허가 내용, 개별법에 따른 등록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의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관계 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요구를 따라야 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J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한 때에는 그 내용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도서·도표등으로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공급하여야 한다.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 ①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 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 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에 따라 해당 표준 지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의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 ① 관계 공무원 또는 부동산가격공시업무를 의뢰받은 자(이하 "관계공무원등"이라한다)는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및 공시 등J제4항에 따른 표준지가격의조사·평가 또는 J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J제4항에 따른 토지가격의 산정을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수 있다.
- ② 관계공무원등이 제1항에 따라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부동산가격공시업무를 의뢰 받은 자에 한정한다)를 받아 출입할 날의 3일 전에 그 점유자에게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일출 전 · 일몰 후에는 그 토지의 점유 자의 승인 없이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 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 ④ 제2항에 따라 출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 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증표와 허가증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 · 산정 및 공시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 이용상황,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 정되는 일단의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중에 서 선정한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이라 한다)을 조사 · 산정하고, J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 원회」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 격의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 1.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지번
- 2.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 3.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대지면적 및 형
- 4.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용도, 연면적, 구조 및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을 포 함한다)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 · 산 정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비주 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을 조사 · 산정하려는 경우 감정평가법인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가격의 조사 · 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에게 의뢰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비주거용 표준부동 산가격을 조사 · 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의 거래가격 · 임대료 및 해당 비주거용 일반부동산과 유 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비주 거용 일반부동산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 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개별부동 **산가격의 결정 · 공시 등**」에 따른 비주거 용 개별부동산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과 산정대상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 (이하 "비주거용 부동산가격비준표"라 한 다)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⑦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에 대 하여는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제2항 ·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 협조J·J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등J·J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및 」타 **인토지에의 출입 등**」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J제2항 후단 중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 · 평가 및 공시 등」"는 "J비주거용 표준 부동산가격의 조사 · 산정 및 공시 등」"로 본다.

②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 • 공시 등」및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의 조사 · 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른 비주 거용 개별부동산가격 및 비주거용 집합 부동산가격은 비주거용 부동산시장에 가 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이 언모와 과려하여 비주거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공시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J 시·군·구부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따른 시·군·구부 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비 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으로 시 · 군 · 구부동사가결공시위원회록 두다

ㅇ의 취에 ㅇ귀 밥무취 근근의의 뭐무기 용 부동산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관할 구역 안의 비주거용 개별부동산의 가격 (이하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이라 한 다)을 결정 · 공시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비 주거용 개별부동산의 가격을 별도로 결정 ·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J개별공시지가의 결정 · 공시 등 J에 따 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 2. 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기에 따 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3. J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 등 J에 따 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 4. J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 등 J에 따 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5. J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ㆍ공 시 등」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의 결정에 관한 사항
- 6.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 · 공 시 등 J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심 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시ㆍ군ㆍ구부 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주거용 표준부동 산으로 선정된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에 대 하여는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 ·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으로 선정된 비주거용 일반부동 산에 대하여는 해당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 격을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의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
- 1. 비주거용 부동산의 지번
- 2.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 후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 격을 결정 · 공시하여야 한다.
- ⑤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가격을 결정 · 공시하는 경우에는 해 당 비주거용 일반부동산과 유사한 이용가치 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가격을 기준으로 비주거용 부동산가격비준 표를 사용하여 가격을 산정하되, 해당 비주 거용 일반부동산의 가격과 비주거용 표준부 동산가격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가격을 결정 · 공시하기 위하여 비주 거용 일반부동산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비 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과의 균형 등 그 타당 성에 대하여 기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 · 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른 비주거용 표 준부동산가격의 조사 · 산정을 의뢰 받은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검증을 받고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의 소유자와 그 밖의 이 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가격에 대한 검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변동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검증 을 생략할 수 있다.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 이용상황,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 정되는 일단의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중에 서 선정한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이라 한다)을 조사 · 산정하고, J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 **원회**」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 격의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 1.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지번
- 2.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 3.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대지면적 및 형

- 4.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용도, 연면적, 구조 및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을 포 함한다)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산 정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비주 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을 조사·산정하려는 경우 감정평가법인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가격의 조사·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에게 의뢰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비주거용 표준부동 산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의 거래가격· 임대료 및 해당 비주거용 일반부동산과 유 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비주 거용 일반부동산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 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J비주거용 개별부동 산가격의 결정·공시 등」에 따른 비주거 용 개별부동산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과 산정대상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 (이하 "비주거용 부동산가격비준표"라 한 다)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⑦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에 대

하여는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J제2항·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 협조 J· J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등 J· J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J 및 J타 인토지에의 출입 등 J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J제2항 후단 중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 ·평가 및 공시 등 J"는 "J비주거용 표준 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J"로 본다.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과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과의 균형유지 등 적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의 결정·공시 등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 ®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정정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및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2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개 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제2항 후단 중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는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공시 등 」"로 본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 ①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 할 수 있다.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J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J에 따라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의신성 및 서디일사 등에 벌보인 사망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J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따른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 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 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 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 야 한다.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 가를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 가를 산정하되, 해당 토지의 가격과 표준 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 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하여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 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감 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지가의 변동상황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법 인등의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에 따른 검증을 받으려는 때에는 해당 지역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한 감정 평가법인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 정평가실적 등이 우수한 감정평가법인등 에 의뢰하여야 한다.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지가공시 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와의 균형유지 등 적정한지가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 ®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검증 및 결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산정의 기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감정평가법 인등의 지정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공시등)

- ① 시장·군수 또는 구정장은 J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따른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기 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비주거용 개별부동산의 가격(이하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이라 한다)을 결정·공시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비주거용 개별부동산의 가격을 별도로 결정·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주거용 표준부 동산으로 선정된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주거용 일반부동 산에 대하여는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을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 우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으로 선정된 비주 거용 일반부동산에 대하여는 해당 비주거 용 표준부동산가격을 비주거용 개별부동 산가격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 격의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 1. 비주거용 부동산의 지번
- 2.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가격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주거용 일반부동산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을 기준으로 비주거용 부동산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가격을 산정하되, 해당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의 가격과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비주거용 개 별부동산가격을 결정 · 공시하기 위하여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의 가격을 산정할 때 에는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과의 균형 등 그 타당성에 대하여 J**비주거용 표준부** 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 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 · 산 정을 의뢰 받은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자의 검증을 받고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의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 장은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검 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비주거 용 부동산가격의 변동상황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행정의 합리적 인 발전을 도모하고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가격과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과의 균 형유지 등 적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가격의 결정 · 공시 등에 관하여 시 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도 · 감독할 수 있다.
- ⑧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정정에 대하여는 J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및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2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J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J제2항 후단 중 "J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J"는 "J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공시 등 J"로 본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산정, 검 증 및 결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 사·산정의 기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산정, 검증 및 결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산정의 기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이라 한다)을 조사·산정하여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결정·공시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가격을 별도로 결정·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공시하지 아니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가격을 공시하기 위하여 비주거용 집합부동 산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소유 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조 사대상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공 시사항, 조사·산정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해당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조사·산정할 때에는 부동산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가격의 조사·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

·마마 - [무리스트] .

®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공시한 가격에 틀린 계산, 오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⑨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공시에 대해서는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협조」· J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등」· 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및 J타인토지에의 출입 등」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제2항 후단 중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는 "J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로 본다.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협조)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의 선정 또는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해당 토지의 인·허가 내용, 개별법에 따른 등록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의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관계 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요구를 따라야 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한 때에는 그 내용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도서·도표등으로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공급하여야 한다.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 ①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에 따라 해당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여야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의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 ① 관계 공무원 또는 부동산가격공시업무를 의뢰받은 자(이하 "관계공무원등"이라한다)는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J제4항에 따른 표준지가격의 조사·평가 또는 J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J제4항에 따른 토지가격의 산정을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 ② 관계공무원등이 제1항에 따라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부동산가격공시업무를의뢰 받은 자에 한정한다)를 받아 출입할날의 3일 전에 그 점유자에게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일출 전·일몰 후에는 그 토지의 점유 자의 승인 없이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 리로 둑러싸이 타이의 투지에 축인한 수

지수 본지까요 지난지 수에게 본급된다 없다.

- ④ 제2항에 따라 출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 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증표와 허가증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이하 "표준지공시지가"라 한다)을 조사·평가하고, J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위하여 표준지의 가격을 조사· 평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평가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 지공시지가를 조사 · 평가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 · 임대료 및 해 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
- 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 특수 성, 표준지공시지가 변동의 예측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 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 지공시지가를 조사ㆍ평가할 때에는 업무실적, 신인도(信認度) 등을 고려하여 둘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지가 변동이 작은 경우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표준지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표준 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의뢰받은 감정 평가업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당 업 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⑦ 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기준 및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국토교통부장관은 J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산정대상 개별 토지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토지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집합부동 산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 가격(이하 "비주거용 진한부동사가격"이

라 한다)을 조사·산정하여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을 결정·공시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행정 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가격을 별도로 결정·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공시하지 아니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집합부동 산가격을 공시하기 위하여 비주거용 집합 부동산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주거용 집합부동 산의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 을 들어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조사대상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 기, 공시사항, 조사·산정 기준 및 공시절 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 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가격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비주 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해당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인정되는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건설에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비주 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조사·산정할 때 에는 부동산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가격의 조사·산정에 관한 전문성 이 있는 자에게 의뢰한다.
- ®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공시한 가격에 틀린 계산, 오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 정하여야 한다.
- ⑨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공시에 대해서는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협조」・J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등」・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및 J타인토지에의출입 등」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제2항 후단중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는 "J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조사・산정 및 공시 등」"로 본다.

J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J**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부동산가 격공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
- 1. 부동산 가격공시 관계 법령의 제정 ·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 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 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성에 관한 사양 중 국도교동무상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2.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 시 등J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 침
- 3.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 · 평가 및 공 시 등**J에 따라 조사 · 평가된 표준지공시 지가
- 4. 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J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 청에 관한 사항
- 5. J**표준주택가격의 조사 · 산정 및 공시** 등J에 따른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 친
- 6. J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라 조사·산정된 표준주택가격 7. J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 청에 관한 사항
- 8. J**공동주택가격의 조사 · 산정 및 공시** 등J에 따른 공동주택의 조사 및 산정지 침
- 9. J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라 조사·산정된 공동주택가격 10. J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 의신청에 관한 사항
- 11. J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 · 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른 비주거용 표 준부동산의 선정 및 관리지침
- 12. J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 · 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라 조사 · 산정 된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 13. J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른 비주거용 표

준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14. J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 · 산정 및 공시 등J에 따른 비주거용 집 합부동산의 조사 및 산정 지침
- 15. J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 · 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라 조사 · 산정 된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 16. J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사항
- 17. J**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 등J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부동산정책에 관한 사항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 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이하 "표 준지공시지가"라 한다)을 조사·평가하고, J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따른 중앙부 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 국도교농무상판 소쪽으도 중앙무종산가격 공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 1. 부동산 가격공시 관계 법령의 제정·개 정에 관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 에 부치는 사항
- 2.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J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3.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J에 따라 조사·평가된 표준지공시지가
- 4. 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5. J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른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 6. J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라 조사·산정된 표준주택가격
- 7. J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에 관한 사항
- 8. J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른 공동주택의 조사 및 산정지침 9. J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라 조사·산정된 공동주택가격 10. J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에 관한 사항
- 11. J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 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 동산의 선정 및 관리지침
- 12. J**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 · 산정 및 공시 등**J에 따라 조사 · 산정된 비 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 13. J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 ·

산정 및 공시 등」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 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4. J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 산정 및 공시 등」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 동산의 조사 및 산정 지침

- 15. J**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라 조사·산정된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 16. J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 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 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7. J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 등 J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부동산정책에 관한 사항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 관이 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6명 이내 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 는 사람이 된다.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토지 · 주택 등에 관한 이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 람
- 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3.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 관련 분 야에서 10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기 전에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 ·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위하여 표준지의 가격을 조사·평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해당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평가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 · 평가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 · 임대료 및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 특수성, 표준지공시지가 변동의 예측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ㆍ평가할 때에는 업무실적, 신인도(信認度)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 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 다만, 지가 변동이 작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표준지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할 수 있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 업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 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⑦ 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기 준 및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공시 등」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 지와 산정대상 개별 토지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토지가격비준 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 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J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J에 따른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 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 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 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 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되, 해당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한다.
-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 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하여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가의 변동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에 따른 검증을 받으려는 때에는 해당 지역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한 감정 평가법인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 정평가실적 등이 우수한 감정평가법인등 에 의뢰하여야 한다.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지가공시 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와의 균형유지 등 적정한지가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 ®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검증 및 결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산정의 기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감정평가법 인등의 지정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 ①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 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및 공시 등」에 따라 해당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여야 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이하 "표준지공시지가"라 한다)을 조사·평가하고, J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위하여 표준지의 가격을 조사· 평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ㆍ평가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 지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해 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 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특수 성, 표준지공시지가 변동의 예측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 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 지공시지가를 조사ㆍ평가할 때에는 업무 실적, 신인도(信認度)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 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의뢰 하여야 한다. 다만, 지가 변동이 작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표준지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표준 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의뢰받은 감정 평가업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당 업 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⑦ 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기준 및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국토교통부장관은 J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산정대상 개별 토지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토지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의 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표준주택가격"이라 한다)을 조사·산정하고, J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 1. 부동산 가격공시 관계 법령의 제정·개 정에 관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 에 부치는 사항
- 2.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3.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에 따라 조사·평가된 표준지공시지가
- 4. 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5. J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른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 6. J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라 조사·산정된 표준주택가격 7. J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에 관한 사항
- 8. J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른 공동주택의 조사 및 산정지침 9. J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라 조사·산정된 공동주택가격 10. J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에 관한 사항

- 11. J**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 ·** 산정 및 공시 등J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 동산의 선정 및 관리지침
- 12. J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 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라 조사·산정된 비 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 13. J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 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 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14. J**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 ·** 산정 및 공시 등J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 동산의 조사 및 산정 지침
- 15. J**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된 비** 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 16. J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 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 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7. J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 등 J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부동산정책에 관한 사항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 관이 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6명 이내 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 는 사람이 된다.
-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토지 · 주택 등에 관한 이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 람
- 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3.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 관련 분 야에서 10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기 전에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 ·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표준주택의 지번
- 2. 표준주택가격
- 3. 표준주택의 대지면적 및 형상
- 4. 표준주택의 용도, 연면적, 구조 및 사용승 인일(임시사용승인일을 포함한다)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표준주택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산정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표준주 택가격을 조사·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한

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에 의뢰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주 택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 사 단독주택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해당 단 독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 되는 단독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특수성, 표준주택가격 변동의 예측 가능성 등 제반사 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공시 등」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 주택과 산정대상 개별주택의 가격형성요인 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주택가격비 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 등)

-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J**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따른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주택의 가격(이하 "개별주택가격"이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하여는해당 주택의 표준주택가격을 개별주택가격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공시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개별주택의 지번
- 2. 개별주택가격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주택가격 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주택가 격을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 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 를 사용하여 가격을 산정하되, 해당 주택 의 가격과 표준주택가격이 균형을 유지하 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주택가 격을 결정·공시하기 위하여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표준주택가격과의 균형 등 그 타당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원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들어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 장은 부동산원의 검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주택가격의 변동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부동산원의 검증의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행정의 합리적 인 발전을 도모하고 표준주택가격과 개별 주택가격과의 균형유지 등 적정한 가격형 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 등에 관하 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도·감독 할 수 있다.
- ®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및 개별 주택가격의 정정에 대하여는 J개별공시지 가에 대한 이의신청」및 J개별공시지가의 점점 등 가기 중요하다 이 경우 J제병교

성성기를 각각 운용만다. 이 성수 기계별상 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기제2항 후단 중 "기계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는 "기계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 등」"로 본다.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것외에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검증 및 결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산정의기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및 공시절차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J제2항 ·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협조 J · J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등 J · J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J 및 J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J는 제1항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에 준용한다. 이 경우 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J제2항 후단 중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J 프 존지공시지가의 조사· 명가 및 공시 등 J 프 본다.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이하 "표준지공시지가"라 한다)을 조사·평가하고, J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위하여 표준지의 가격을 조사· 평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평가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 지공시지가를 조사 · 평가하는 경우에는
-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 · 임대료 및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 특수성, 표준지공시지가 변동의 예측 가능성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 지공시지가를 조사ㆍ평가할 때에는 업무실적, 신인도(信認度) 등을 고려하여 둘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지가 변동이 작은 경우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표준지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표준 지공시지가 조사 ·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 평가업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당 업 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⑦ 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기준 및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국토교통부장관은 J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산정대상 개별 토지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토지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협조)

국도교농무상반은 표순시의 신성 또는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 ·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해당 토지의 인 · 허가 내용, 개별법에 따른 등록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의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관계 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요구를 따라야 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J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한 때에는 그 내용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도서·도표등으로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공급하여야 한다.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 ①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 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 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에 따라 해당 표준 지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의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 ① 관계 공무원 또는 부동산가격공시업무를 의뢰받은 자(이하 "관계공무원등"이라한다)는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J제4항에 따른 표준지가격의 조사·평가 또는 J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J제4항에 따른 토지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 ② 관계공무원등이 제1항에 따라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부동산가격공시업무를의뢰 받은 자에 한정한다)를 받아 출입할날의 3일 전에 그 점유자에게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일출 전 · 일몰 후에는 그 토지의 점유 자의 승인 없이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 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 ④ 제2항에 따라 출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 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증표와 허가증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표준주택가격"이라 한다)을 조사·산정하고, J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표준주택의 지번
- 2. 표준주택가격
- 3. 표준주택의 대지면적 및 형상
- 4. 표준주택의 용도, 연면적, 구조 및 사용 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을 포함한다)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표준주택의 선정, 공시기 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산정 기준 및 공 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표준 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에 의뢰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 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경우에는 인 근 유사 단독주택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해당 단독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다고 인정되는 단독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특수성, 표준주택가격 변동의 예 측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 하여야 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J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 등」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주택과 산정대상 개별주택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주택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⑦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J제2항·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협조 J· J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등 J· 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J 및 J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J는 제1항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에 준용한다. 이 경우 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J제2항 후단 중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J"는 "J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J"로 본다.

(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공동주택가격"이라 한다)을 조사·산정하여 J중 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주택가격을 별도로 결정·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 1. 부동산 가격공시 관계 법령의 제정·개 정에 관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 에 부치는 사항
- 2.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 시 등 J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3.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 시 등 J에 따라 조사·평가된 표준지공시

- 4. 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5. J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른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 6. J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라 조사·산정된 표준주택가격 7. J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8. J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른 공동주택의 조사 및 산정지침 9. J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라 조사·산정된 공동주택가격 10. J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에 관한 사항
- 11. J**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 ·** 산정 및 공시 등J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 동산의 선정 및 관리지침
- 12. J**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 · 산정 및 공시 등**J에 따라 조사 · 산정된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 13. J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 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 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4. J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
- 14. J미우거용 접접무용산가격의 소사· 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 동산의 조사 및 산정 지침
- 15. J**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된 비** 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 16. J**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 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
- 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7. J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 등 J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부동산정책에 관한 사항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 관이 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6명 이내 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 는 사람이 된다.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토지 · 주택 등에 관한 이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 람
- 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3.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 관련 분 야에서 10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기 전에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 ·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하기 위하여 그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조사대상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공시사항, 조사·산정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공동주택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해당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특수성,공동주택가격 변동의 예측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공동주 택가격을 조사·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부동 산원에 의뢰한다.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공시한 가격에 틀린 계산, 오기, 그 밖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 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 야 한다.
- ® 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대하여는 J표준지 공시지가의 조사협조」· J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등」· 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 청」 및 J타인토지에의 출입 등」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제2항 후단 중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로 본다.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협조)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의 선정 또는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 ·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해당 토지의 인 · 허가 내용, 개별법에 따른 등록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의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관계 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요구를 따라야 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J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한 때에는 그 내용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도서·도표등으로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공급하여야 한다.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 ①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J표준지공시지가의조사·평가 및 공시 등J에 따라 해당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여야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의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 ① 관계 공무원 또는 부동산가격공시업무를 의뢰받은 자(이하 "관계공무원등"이라한다)는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및 공시 등 J제4항에 따른 표준지가격의조사·평가 또는 J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J제4항에 따른 토지가격의 산정을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수 있다.
- ② 관계공무원등이 제1항에 따라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부동산가격공시업무를 의뢰 받은 자에 한정한다)를 받아 출입할 날의 3일 전에 그 점유자에게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일출 전·일몰 후에는 그 토지의 점유 자의 승인 없이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 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 ④ 제2항에 따라 출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 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증표와 허가증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이하 "표준지공시지가"라 한다)을 조사·평가하고, J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위하여 표준지의 가격을 조사· 평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공시기준 일, 공시의 시기, 조사ㆍ평가 기준 및 공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 지공시지가를 조사 · 평가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 · 임대료 및 해 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 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 특수 성, 표준지공시지가 변동의 예측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 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 지공시지가를 조사ㆍ평가할 때에는 업무 실적, 신인도(信認度)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는 감성병가법인등(이야 "감 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의뢰 하여야 한다. 다만, 지가 변동이 작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표준지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표준 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의뢰받은 감정 평가업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당 업 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⑦ 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기준 및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국토교통부장관은 J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산정대상 개별 토지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토지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공동주택가격"이라 한다)을 조사·산정하여 J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협의하여 공동주택가격을 별도로 결정·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가격을 공 시하기 위하여 그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 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조사대상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공시사항, 조사·산정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 · 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공동주택가격을 결정 · 공시하여야 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공동 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경우에는 인 근 유사 공동주택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해당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특수성, 공동주택가격 변동의 예 측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 하여야 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공동 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부동산원에 의뢰한다.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공시한 가격에 틀린 계산, 오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 정하여야 한다.
- ® 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대하여는 J표준 되고 내기가이 조나청조! - IT조되고 내기

시중시시/[의 조사업소] · J표준시중시시 가의 열람 등」 · 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및 J타인토지에의 출입 등」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J제2항 후단 중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 · 평가 및 공시 등」"는 "J공동주택가격의 조사 · 산정 및 공시 등 」"로 본다.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 · 산정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 이용상황,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 되는 일단의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중에서 선 정한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에 대하여 매년 공 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이라 한다)을 조사·산정하 고, J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따른 중 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를 공시할 수 있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 1. 부동산 가격공시 관계 법령의 제정·개 정에 관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 에 부치는 사항
- 2.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J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3.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J에 따라 조사·평가된 표준지공시 지가
- 4. 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5. J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른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 6. J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라 조사·산정된 표준주택가격 7. J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에 관한 사항
- 8. J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른 공동주택의 조사 및 산정지침 9. J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라 조사·산정된 공동주택가격 10. J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11. J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 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 동산의 선정 및 관리지침
- 12. J**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 ·** 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라 조사 · 산정된 비 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 13. J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 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 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4. J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 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 동산의 조사 및 산정 지침
- 15. J**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 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라 조사·산정된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 16. J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 · 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7. J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 등 J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부동산정책에 관한 사항 등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 관이 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막 시네

중앙맹성기관의 상이 시병아는 6병 이내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토지 · 주택 등에 관한 이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 라
- 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3.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 관련 분 야에서 10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기 전에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 ·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의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
- 1.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지번
- 2.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 3.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대지면적 및 형상
- 4.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용도, 연면적, 구조 및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을 포함한다)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산정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을 조사·산정하려는 경우 감정평가법인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가격의 조사·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에게 의뢰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해당 비주거용 일반부동산과 유사한 이용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비주거용 일반부 동산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 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J비주거용 개별부동산 가격의 결정·공시 등 J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과 산정대상 비주거용 개별부동산의 가격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비주거용 부동산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공시 등)

-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J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따른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비주거용 개별부동산의 가격(이하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이라 한다)을 결정·공시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비주거용 개별부동산의 가격을 별도로 결정·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주거용 표준부 동산으로 선정된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주거용 일반부동

산에 대하여는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 ·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으로 선정된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에 대하여는 해당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을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 격의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 1. 비주거용 부동산의 지번
- 2.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가격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비주거용 개 별부동산가격을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주거용 일반부동산과 유사한 이용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가격을 기준으로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가격을 산정하되, 해당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의 가격과 비주 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이 균형을 유지하도 록 하여야 한다.
-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비주거용 개 별부동산가격을 결정·공시하기 위하여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의 가격을 산정할 때 에는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과의 균형 등 그 타당성에 대하여 J비주거용 표준부 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J에 따

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산 정을 의뢰 받은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자의 검증을 받고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의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 장은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검 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비주거 용 부동산가격의 변동상황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행정의 합리적 인 발전을 도모하고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가격과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과의 균 형유지 등 적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가격의 결정 · 공시 등에 관하여 시 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도 · 감독할 수 있다.
- ®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정정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및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2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 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제2항 후단 중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는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 ・공시 등」"로 본다.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산정, 검 증 및 결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 사·산정의 기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여는 J표준시공시시가의 소사·병가 및 공시 등 J제2항·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협조 J·J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등 J·J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J및 J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J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J제2항 후단중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등 J"는 "J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J"로 본다.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 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 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 가격(이하 "표준지공시지가"라 한다)을 조 사·평가하고, J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 회J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위하여 표준지의 가격을 조사· 평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 · 평가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 지공시지가를 조사 · 평가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 · 임대료 및 해 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 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 특수 성, 표준지공시지가 변동의 예측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 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 지공시지가를 조사ㆍ평가할 때에는 업무 실적, 신인도(信認度)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 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의뢰 하여야 한다. 다만, 지가 변동이 작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표준지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표준 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의뢰받은 감정 평가업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당 업 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⑦ 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기준 및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국토교통부장관은 J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산정대상 개별 토지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토지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협조)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의 선정 또는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해당 토지의 인·허가 내용, 개별법에 따른 등록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의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관계 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요구를 따라야 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J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한 때에는 그 내용을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들 거져 시장 · 군 수 또는 구청장(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 장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고,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도서 · 도표 등으로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공급 하여야 한다.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 ①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 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 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에 따라 해당 표준 지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의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① 관계 공무원 또는 부동산가격공시업무를 의뢰받은 자(이하 "관계공무원등"이라한다)는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및 공시 등J제4항에 따른 표준지가격의조사·평가 또는 J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J제4항에 따른 토지가격의 산정을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

할 수 있다.

- ② 관계공무원등이 제1항에 따라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부동산가격공시업무를 의뢰 받은 자에 한정한다)를 받아 출입할 날의 3일 전에 그 점유자에게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일출 전 · 일몰 후에는 그 토지의 점유 자의 승인 없이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 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 ④ 제2항에 따라 출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 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증표와 허가증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 이용상황,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 정되는 일단의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중에 서 선정한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이라 한다)을 조사·산정하고, J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 원회」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 격의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_! _! _` _! _'

되어야 한다.

- 1.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지번
- 2.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 3.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대지면적 및 형 상
- 4.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용도, 연면적, 구조 및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을 포 함한다)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산 정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비주 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을 조사·산정하려는 경우 감정평가법인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가격의 조사·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에게 의뢰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비주거용 표준부동 산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의 거래가격· 임대료 및 해당 비주거용 일반부동산과 유 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비주 거용 일반부동산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 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J비주거용 개별부동 산가격의 결정·공시 등 J에 따른 비주거 용 개별부동산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과 산정대상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 (이하 "비주거용 부동산가격비준표"라 한
- 다)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⑦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에 대하여는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J제2항·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 협조 J·J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등 J·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J및 J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J를 각각 준용한다. 이경우 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J제2항 후단 중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J"로본다.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이라 한다)을 조사·산정하여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결정·공시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가격을 별도로 결정·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공시하지 아니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가격을 공시하기 위하여 비주거용 집합부동

산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소유 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조 사대상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공 시사항, 조사·산정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해당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조사·산정할 때에는 부동산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가격의 조사·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에게 의뢰한다.
- ®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공시한 가격에 틀린 계산, 오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 ⑨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공시에 대해

서는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협조」· J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등」· 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및 J타인토지에의 출입 등」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J제2항 후단 중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는 "J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로 본다.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협조)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의 선정 또는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해당 토지의 인ㆍ허가 내용, 개별법에 따른 등록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의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관계 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요구를 따라야 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한 때에는 그 내용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도서·도표등으로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공급하여야 한다.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 ①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에 따라 해당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여야한다.

스 레르쉬 다 레스쉬시니 크리쉬 키 이제 시

③ 세1양 및 세2양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의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 ① 관계 공무원 또는 부동산가격공시업무를 의뢰받은 자(이하 "관계공무원등"이라한다)는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및 공시 등 J제4항에 따른 표준지가격의조사·평가 또는 J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J제4항에 따른 토지가격의 산정을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수 있다.
- ② 관계공무원등이 제1항에 따라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부동산가격공시업무를 의뢰 받은 자에 한정한다)를 받아 출입할 날의 3일 전에 그 점유자에게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일출 전·일몰 후에는 그 토지의 점유 자의 승인 없이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 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 ④ 제2항에 따라 출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 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증표와 허가증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이하 "표준지공시지가"라 한다)을 조사·평가하고, J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위하여 표준지의 가격을 조사· 평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공시기준 일, 공시의 시기, 조사ㆍ평가 기준 및 공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 지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해 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 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특수 성, 표준지공시지가 변동의 예측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 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 지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할 때에는 업무 실적, 신인도(信認度)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는 감성병가법인등(이야 "감 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의뢰 하여야 한다. 다만, 지가 변동이 작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표준지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표준 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의뢰받은 감정 평가업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당 업 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⑦ 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기준 및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국토교통부장관은 J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산정대상 개별 토지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토지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이라 한다)을 조사·산정하여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거쳐 공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결정·공시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가격을 별도로 결정·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공시하지 아니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집합부동 산가격을 공시하기 위하여 비주거용 집합 부동산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주거용 집합부동 산의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 을 들어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조사대상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 기, 공시사항, 조사·산정 기준 및 공시절 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 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가격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비주 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해당 비주거용 집 합부동산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 하여야 한다.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비주 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조사·산정할 때 에는 부동산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가격의 조사·산정에 관한 전문성

이 있는 자에게 의뢰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공시한 가격에 틀린 계산, 오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 정하여야 한다.

⑨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공시에 대해서는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협조」· J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등」· 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및 J타인토지에의 출입 등」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제2항 후단중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는 "J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조사·산정 및 공시 등」"로 본다.

(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공시가격이 적 정가격을 반영하고 부동산의 유형·지역 등 에 따른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 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부 동산 가격의 변동 상황, 지역 간의 형평성, 해당 부동산의 특수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공청회를 실시하고, J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부동산 가격공시 관계 법령의 제정·개 정에 관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 에 부치는 사항
- 2.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3.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에 따라 조사·평가된 표준지공시지가
- 4. 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J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5. J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른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 6. J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라 조사·산정된 표준주택가격 7. J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8. J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른 공동주택의 조사 및 산정지침 9. J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라 조사·산정된 공동주택가격 10. J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11. J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 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 동산의 선정 및 관리지침
- 12. J**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 · 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라 조사 · 산정된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 13. J**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 ·** 산정 및 공시 등J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 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14. J비주거봉 집합무농산가격의 조사 · 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조사 및 산정 지침
 15. J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 · 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라 조사 · 산정된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 · 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7. J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 등 J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부동산정책에 관한 사항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 관이 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6명 이내 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 는 사람이 된다.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토지 · 주택 등에 관한 이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 람
- 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3.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 관련 분 야에서 10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기 전에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 ·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동산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계획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 관이 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6명이내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토지·주택 등에 관한 이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감정평가사 의 자격이 있는 사람
- 3.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 이 있는 사람

-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기 전에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 ·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JA · 군 · 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으로 시· 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둔다. 1. J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J에 따르 개벽고시지가의 결정에 과하 사하
- 1. J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J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3. J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 등」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J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 등」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5. J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 공시 등」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 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 6. J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 · 공시 등 J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 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세·지방세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하기 위하여 J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 원회」에 따른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으로 시·군 ·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둔다.
- 1. J**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J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 2. J**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J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3. J**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 등**J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 4. J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 등」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J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공 시 등」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의 결정에 관한 사항
- 6. J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공 시 등 J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 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심 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시·군·구부 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되, 해당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하여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감정 평가법인등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그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지가의 변동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생

당은 수의 기가 1000가 100이 100 이 약할 수 있다.

-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에 따른 검증을 받으려는 때에는 해당 지역의 표준지 의 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한 감정평가법인 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실적 등이 우수한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여야 하다.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지가공시 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와의 균형유지 등 적정한 지가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 ®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검증 및 결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산정의 기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감정평가법인등의 지정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 ①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있다.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 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

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J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J에 따라 해당 개별공시지가 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J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따른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 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 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 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 야 한다.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 가를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 가를 산정하되, 해당 토지의 가격과 표준 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 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하여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 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감 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지가의 변동상황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법 인등의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에 따 른 검증을 받으려는 때에는 해당 지역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조사 · 평가한 감정 평가법인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 정평가실적 등이 우수한 감정평가법인등 에 의뢰하여야 한다.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지가공시 행정의 합 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표준지공시지가 와 개별공시지가와의 균형유지 등 적정한 지가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 공시 등 에 관하여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도 · 감독할 수 있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검증 및 결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산정의 기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감정평가법 인등의 지정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의 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J 시·군·구부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따른 시·군·구부 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

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 의 개별주택의 가격(이하 "개별주택가격"이 라 한다)을 결정 · 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 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으로 시 · 군 · 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둔다.
- 1. J개별공시지가의 결정 · 공시 등 J에 따 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 2. J**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J에 따 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3. J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 등 J에 따 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 4. J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 등 J에 따 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5. J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공 시 등 J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의 결정에 관한 사항
- 6. J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 · 공 시 등 J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심
-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시·군·구부 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주택으로 선정 된 단독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주 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하여는 해당 주택의 표준주택가격을 개별주택가격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개별주택의 지번
- 2. 개별주택가격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가격을 산정하되, 해당 주택의 가격과표준주택가격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한다.

⑥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 공시하기 위하여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표준주택가격과의 균형 등그 타당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원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동산원의 검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주택가격의 변동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부동산원의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표준주택가격과 개별주택 가격과의 균형유지 등 적정한 가격형성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별주 택가격의 결정·공시 등에 관하여 시장·군 수 또는 구청장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및 개별주택가격의 정정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및 」개별공시지가의 정정 」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제2항 후단 중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는 "」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 등」"로 본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 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J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J에 따라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의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별공시지가의 정정)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에 틀린 계산, 오기, 표준지 선정의 착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J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따른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 제18에도 르푸이고 표근이도 단이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 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 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 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 야 한다.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 가를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 가를 산정하되, 해당 토지의 가격과 표준 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 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하여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가의 변동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 ⑥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에 따른 검증을 받으려는 때에는 해당 지역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한 감정 평가법인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 정평가실적 등이 우수한 감정평가법인등 에 의뢰하여야 한다.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지가공시 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와의 균형유지 등 적정한지가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 ®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검증 및 결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산정의 기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감정평가법 인등의 지정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 등)

-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J**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따른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주택의 가격(이하 "개별주택가격"이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하여는 해당 주택의 표준주택가격을 개별주택가격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공시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개별주택의 지번
- 2. 개별주택가격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 · 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주택가격 을 결정 · 공시하여야 한다.
- ⑤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주택가 격을 결정 · 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 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 를 사용하여 가격을 산정하되, 해당 주택 의 가격과 표준주택가격이 균형을 유지하 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주택가 격을 결정 · 공시하기 위하여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표준주택가격과의 균형 등 그 타당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원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 장은 부동산원의 검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주택가격의 변동상황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부동산 원의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행정의 합리적 인 발전을 도모하고 표준주택가격과 개별 주택가격과의 균형유지 등 적정한 가격형 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 공시 등에 관하 여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도 · 감독 할 수 있다.
- ⑧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및 개별 주택가격의 정정에 대하여는 J**개별공시지** 가에 대한 이의신청」 및 」개별공시지가의 정정」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J**개별공** 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제2항 후단 중 "J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J"는 "J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 공시 등 」 "로 본다.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검증 및 결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 · 산정의 기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 에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검증 및 결정, 공시 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산정의 기준, 이 해관계인의 의견청취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공시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J 시·군·구부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따른 시·군·구부 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비 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비주거용 개별부동산의 가격 (이하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이라 한 다)을 결정 · 공시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비 주거용 개별부동산의 가격을 별도로 결정 ·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으로 시 · 군 · 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둔다.
- 1. J개별공시지가의 결정 · 공시 등 J에 따 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 2. 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기에 따 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3. J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 등 J에 따 르 개벽주택가격의 결정에 과하 사항

- 느 게르 : 그거그의 본이에 나는 게이
- 4. J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 등」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5. J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공 시 등J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의 결정에 관한 사항
- 6. J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공 시 등 J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심 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시 \cdot 군 \cdot 구부 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주거용 표준부동 산으로 선정된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에 대 하여는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 ·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으로 선정된 비주거용 일반부동 산에 대하여는 해당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 격을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의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
- 1. 비주거용 부동산의 지번
- 2.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가격을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해 당 비주거용 일반부동산과 유사한 이용가치 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가격을 기준으로 비주거용 부동산가격비준 표를 사용하여 가격을 산정하되, 해당 비주 거용 일반부동산의 가격과 비주거용 표준부 동산가격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가격을 결정·공시하기 위하여 비주 거용 일반부동산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비 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과의 균형 등 그 타당 성에 대하여 J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른 비주거용 표 준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을 의뢰 받은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검증을 받고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의 소유자와 그 밖의 이 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가격에 대한 검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변동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검증 을 생략할 수 있다.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 이용상황,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 정되는 일단의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중에 서 선정한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이라 한다)을 조사·산정하고, J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 원회」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 격의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 1.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지번
- 2.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 3.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대지면적 및 형 상
- 4.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용도, 연면적, 구조 및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을 포 함한다)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선정, 공시기순일, 공시의 시기, 조사·산정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비주 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을 조사·산정하려는 경우 감정평가법인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가격의 조사·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에게 의뢰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비주거용 표준부동 산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의 거래가격· 임대료 및 해당 비주거용 일반부동산과 유 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비주 거용 일반부동산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 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J비주거용 개별부동 산가격의 결정·공시 등J에 따른 비주거 용 개별부동산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과 산정대상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 (이하 "비주거용 부동산가격비준표"라 한 다)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⑦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에 대하여는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J제2항 ·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 협조 J · J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등 J · J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J 및 J타 인토지에의 출입 등 J를 각각 준용한다. 이경우 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J제2항 후단 중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J "는 "J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J "로보다.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과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과의 균형유지 등 적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의 결정·공시 등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 ®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정정에 대하여는 J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및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2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J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J제2항 후단 중 "J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는 "J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공시 등 J"로 본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 ①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 할 수 있다.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J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J에 따라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의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세·지방 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 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 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J**시·군·구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에 따른 시·군·구부동 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 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 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 이 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 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 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 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 야 한다.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 가를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 가를 산정하되, 해당 토지의 가격과 표준 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 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하여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 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감 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지가의 변동상황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법 인등의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에 따른 검증을 받으려는 때에는 해당 지역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한 감정 평가법인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 정평가실적 등이 우수한 감정평가법인등 에 의뢰하여야 한다.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지가공시 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와의 균형유지 등 적정한지가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 ®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검증 및 결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산정의 기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감정평가법 인등의 지정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공시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J**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따른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비주거용 개별부동산의 가격(이하 "비주거용 개별부동 산가격"이라 한다)을 결정·공시할 수 있

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국토교 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비주거용 개별부동 산의 가격을 별도로 결정 · 고시하는 경우 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주거용 표준부 동산으로 선정된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주거용 일반부동 산에 대하여는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을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 우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으로 선정된 비주 거용 일반부동산에 대하여는 해당 비주거 용 표준부동산가격을 비주거용 개별부동 산가격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 격의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 1. 비주거용 부동산의 지번
- 2.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 · 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가격을 결정 · 공시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비주거용 개 별부동산가격을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주거용 일반부동산과 유사한 이용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가격을 기준으로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가격을 산정하되,

해당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의 가격과 비주 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이 균형을 유지하도 록 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비주거용 개 별부동산가격을 결정 · 공시하기 위하여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의 가격을 산정할 때 에는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과의 균형 등 그 타당성에 대하여 J비주거용 표준부 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 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 · 산 정을 의뢰 받은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자의 검증을 받고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의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 장은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검 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비주거 용 부동산가격의 변동상황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행정의 합리적 인 발전을 도모하고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가격과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과의 균 형유지 등 적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가격의 결정·공시 등에 관하여 시 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정정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및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2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제2항후단 중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는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산정, 검 증 및 결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 사·산정의 기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산정, 검증 및 결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산정의 기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시보고서의 제출 등」

- ① 정부는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 격 및 공동주택가격의 주요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의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J표준지공시지가 의 조사 · 평가 및 공시 등」에 따른 표준 지공시지가, J표준주택가격의 조사 · 산정 및 공시 등」에 따른 표준주택가격, J 공동주택가격의 조사 · 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른 공동주택가격, J비주거용 표준 부동산가격의 조사 · 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및 J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 · 산정
- 및 공시 등」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 산가격을 공시하는 때에는 부동산의 시 세 반영률, 조사ㆍ평가 및 산정 근거 등 의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야 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이하 "표준지공시지가"라 한다)을 조사·평가하고, J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따른 중앙부 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 1. 부동산 가격공시 관계 법령의 제정·개 정에 관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 에 부치는 사항
- 2.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J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3.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J에 따라 조사·평가된 표준지공시지가
- 4. 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5. J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른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 6. J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라 조사·산정된 표준주택가격 7. J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에 관한 사항

- 8. J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른 공동주택의 조사 및 산정지침 9. J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라 조사·산정된 공동주택가격 10. J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 10. 기능등수억가격의 조차 한 전 및 등사등 J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11. J**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 ·** 산정 및 공시 등J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 동산의 선정 및 관리지침
- 12. J**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 · 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라 조사 · 산정된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 13. J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 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 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4. J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 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 동산의 조사 및 산정 지침

- 15. J비수거용 집합무농산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라 조사·산정된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16. J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7. J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 등 J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부동산정책에 관한 사항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 관이 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6명 이내 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 는 사람이 된다.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토지 · 주택 등에 관한 이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 람
- 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3.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 관련 분 야에서 10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
- 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기 전에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 ·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위하여 표준지의 가격을 조사·평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해당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평가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 · 평가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 · 임대료 및 해당 토지 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 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 특수성, 표준지공 시지가 변동의 예측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할 때에는 업무실적, 신인도(信認度)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 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지가 변동이 작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표준지에 대해서 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할 수 있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 ·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 업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 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⑦ 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기 준 및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공시 등」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 지와 산정대상 개별 토지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토지가격비준 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 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J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J에 따른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 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 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 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 야 한다.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 가를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 가를 산정하되, 해당 토지의 가격과 표준 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 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하여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 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감 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지가의 변동상황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법 인등의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에 따른 검증을 받으려는 때에는 해당 지역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한 감정 평가법인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실적 등이 우수한 감정평가법인등 에 의뢰하여야 한다.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지가공시 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와의 균형유지 등 적정한지가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것외에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검증 및 결정, 공시기주일, 공시의 시기, 조사·산정의

기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감정평가법 인등의 지정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표준주택가격"이라 한다)을 조사·산정하고, J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 1. 부동산 가격공시 관계 법령의 제정·개 정에 관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 에 부치는 사항
- 2.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3.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에 따라 조사·평가된 표준지공시 지가
- 4. 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5. J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른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 6. J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라 조사·산정된 표준주택가격 7. J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8. J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른 공동주택의 조사 및 산정지침 9. J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라 조사·산정된 공동주택가격 10. J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에 관한 사항

- 11. J**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 ·** 산정 및 공시 등J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 동산의 선정 및 관리지침
- 12. J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 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라 조사·산정된 비 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 13. J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 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 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14. J**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 · 산정 및 공시 등**J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 동산의 조사 및 산정 지침
- 15. J**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 · 산정 및 공시 등**J에 따라 조사 · 산정된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 16. J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 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 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7. J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 등 J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부동산정책에 관한 사항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 관이 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6명 이내 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 는 사람이 된다.
-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토지

- · 주택 등에 관한 이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 락
- 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3.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 관련 분 야에서 10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기 전에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 ·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표준주택의 지번
- 2. 표준주택가격
- 3. 표준주택의 대지면적 및 형상
- 4. 표준주택의 용도, 연면적, 구조 및 사용승 인일(임시사용승인일을 포함한다)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표준주택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산정 기준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표준주 택가격을 조사·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한 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에 의뢰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주 택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 사 단독주택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해당 단 독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 되는 단독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특수성, 표준주택가격 변동의 예측 가능성 등 제반사 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공시 등」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 주택과 산정대상 개별주택의 가격형성요인 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주택가격비 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 등)

-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J**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따른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주택의 가격(이하 "개별주택가격"이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하여는 해당 주택의 표준주택가격을 개별주택가격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공시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개별주택의 지번
- 2. 개별주택가격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 · 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주택가격 을 결정 · 공시하여야 한다.

-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주택가 격을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 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 를 사용하여 가격을 산정하되, 해당 주택 의 가격과 표준주택가격이 균형을 유지하 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주택가 격을 결정 · 공시하기 위하여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표준주택가격과의 균형 등 그 타당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원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시장 · 군수 또는 구청 장은 부동산원의 검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주택가격의 변동상황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부동산 원의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행정의 합리적 인 발전을 도모하고 표준주택가격과 개별 주택가격과의 균형유지 등 적정한 가격형 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 등에 관하 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도·감독 할 수 있다.
- ®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및 개별 주택가격의 정정에 대하여는 J개별공시지 가에 대한 이의신청」및 J개별공시지가의

정정」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J개별공 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J제2항 후단 중 "J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는 "J 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 등」"로 본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것외에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검증 및 결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산정의기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및 공시절차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J제2항 ·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협조 J · J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등 J · J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J 및 J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J는 제1항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에 준용한다. 이 경우 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J제2항 후단 중 "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J제2항 후단 중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J"는 "J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J"로 본다.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이하 "표준지공시지가"라 한다)을 조사·평가하고, J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위하여 표준지의 가격을 조사· 평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평가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 지공시지가를 조사 · 평가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 · 임대료 및 해

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 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 특수 성, 표준지공시지가 변동의 예측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 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 지공시지가를 조사ㆍ평가할 때에는 업무 실적, 신인도(信認度)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 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의뢰 하여야 한다. 다만, 지가 변동이 작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표준지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표준 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의뢰받은 감정 평가업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당 업 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⑦ 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기준 및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국토교통부장관은 J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J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산정대상 개별 토지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토지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협조)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의 선정 또는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해당 토지의 인·허가 내용, 개별법에 따른 등록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의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관계 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요구를 따라야 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한 때에는 그 내용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도서·도표등으로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공급하여야 한다.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 ①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에 따라 해당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여야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의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 ① 관계 공무원 또는 부동산가격공시업무를 의뢰받은 자(이하 "관계공무원등"이라한다)는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및 공시 등 J제4항에 따른 표준지가격의조사·평가 또는 J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J제4항에 따른 토지가격의 산정을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수 있다.
- ② 관계공무원등이 제1항에 따라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부동산가격공시업무를 의뢰 받은 자에 한정한다)를 받아 출입할 날의 3일 전에 그 점유자에게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일출 전·일몰 후에는 그 토지의 점유 자의 승인 없이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 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 ④ 제2항에 따라 출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 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증표와 허가증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표준주택가격"이라 한다)을 조사·산정하고, J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표준주택의 지번
- 2. 표준주택가격
- 3. 표준주택의 대지면적 및 형상
- 4. 표준주택의 용도, 연면적, 구조 및 사용 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을 포함한다)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표준주택의 선정, 공시기 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산정 기준 및 공 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표준 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에 의뢰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 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경우에는 인 근 유사 단독주택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해당 단독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다고 인정되는 단독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특수성, 표준주택가격 변동의 예 측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 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 등」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주택과 산정대상 개별주택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주택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⑦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제2항·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협조」·J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등」·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및 J타인토지에의 출입 등」는 제1항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에 준용한다. 이 경우 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제2항 후단 중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는 "J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로 본다.

(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공동주택가격"이라 한다)을 조사·산정하여 J중 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주택가격을 별도로 결정·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 1. 부동산 가격공시 관계 법령의 제정·개 정에 관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 에 부치는 사항
- 2.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3.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에 따라 조사·평가된 표준지공시

지가

- 4. 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5. J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른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 6. J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라 조사·산정된 표준주택가격 7. J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 7. J표문수택가격의 소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에 관한 사항
- 8. J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른 공동주택의 조사 및 산정지침
- 9. J**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J에 따라 조사·산정된 공동주택가격
- 10. J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에 관한 사항
- 11. J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 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 동산의 선정 및 관리지침
- 12. J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 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라 조사·산정된 비 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 13. J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 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 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14. J**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 · 산정 및 공시 등**J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 동산의 조사 및 산정 지침
- 15. J**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 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라 조사·산정된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 16. J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 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 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17. J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 능 」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부동산정책에 관한 사항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 관이 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6명 이내 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 는 사람이 된다.
-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토지 · 주택 등에 관한 이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
- 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3.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 관련 분 야에서 10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 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기 전에 미리 관 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 ·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가격을 공시 하기 위하여 그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소유자 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 다.
- ③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조사대상의 선 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공시사항, 조 사 · 산정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 지의 분할ㆍ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 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 준으로 하여 공동주택가격을 결정 · 공시하 여야 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공동주 택가격을 조사 · 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 사 공동주택의 거래가격 · 임대료 및 해당 공 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 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 특수성, 공동주택가격 변동의 예측 가능성 등 제반사 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공동주 택가격을 조사 · 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부동 산원에 의뢰한다.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공시한 가격에 틀린 계산, 오기, 그 밖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 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 야 한다.
- ® 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대하여는 J표준지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협조) 공시지가의 조사협조] · 」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등」·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 청」 및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를 각각 준용 한다. 이 경우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제2항 후단 중 "」표준지공시지가의 조 사·평가 및 공시 등」"는 "」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로 본다. 국도교공무성판은 표준시의 신성 또는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 ·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해당 토지의 인 · 허가 내용, 개별법에 따른 등록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의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관계 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요구를 따라야 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J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한 때에는 그 내용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도서·도표등으로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공급하여야 한다.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 ①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 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 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등」에 따라 해당 표준 지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의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 ① 관계 공무원 또는 부동산가격공시업무를 의뢰받은 자(이하 "관계공무원등"이라한다)는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및 공시 등J제4항에 따른 표준지가격의조사·평가 또는 J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J제4항에 따른 토지가격의 산정을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수 있다.
- ② 관계공무원등이 제1항에 따라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부동산가격공시업무를 의뢰 받은 자에 한정한다)를 받아 출입할 날의 3일 전에 그 점유자에게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일출 전·일몰 후에는 그 토지의 점유 자의 승인 없이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 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 ④ 제2항에 따라 출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 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증표와 허가증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이하 "표준지공시지가"라 한다)을 조사·평가하고, J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위하여 표준지의 가격을 조사· 평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평가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 지공시지가를 조사 · 평가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 · 임대료 및 해 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 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 특수 성, 표준지공시지가 변동의 예측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 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 지공시지가를 조사ㆍ평가할 때에는 업무실적, 신인도(信認度) 등을 고려하여 둘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지가 변동이 작은 경우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표준지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표준 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의뢰받은 감정 평가업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당 업 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⑦ 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기준 및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국토교통부장관은 J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산정대상 개별 토지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토지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공동주택가격"이라 한다)을 조사·산정하여 J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주택가격을 별도로 결정·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가격을 공 시하기 위하여 그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 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조사대상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공시사항, 조사·산정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공동주택가격을 결정 · 공시하여야 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공동 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경우에는 인 근 유사 공동주택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해당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특수성, 공동주택가격 변동의 예 측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 하여야 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공동 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부동산원에 의뢰한다.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공시한 가격에 틀린 계산, 오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 정하여야 한다.
- ® 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대하여는 J표준 지공시지가의 조사협조」· J표준지공시지 가의 열람 등」· 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및 J타인토지에의 출입 등」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제2항 후단 중 "J표준 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는 "J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로 본다.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 이용상황,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 되는 일단의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중에서 선 정한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에 대하여 매년 공 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이라 한다)을 조사·산정하 고, J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따른 중 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를 공시할 수 있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 1. 부동산 가격공시 관계 법령의 제정·개 정에 관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 에 부치는 사항
- 2.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J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3.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J에 따라 조사·평가된 표준지공시지가
- 4. 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5. J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른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 6. J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라 조사·산정된 표준주택가격 7. J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에 관한 사항

- 8. J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른 공동주택의 조사 및 산정지침 9. J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라 조사·산정된 공동주택가격 10. J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에 관한 사항
- 11. J**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 ·** 산정 및 공시 등J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 동산의 선정 및 관리지침
- 12. J**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 · 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라 조사 · 산정된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 13. J**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 산정 및 공시 등**J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 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14. J**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 · 산정 및 공시 등**J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 동산의 조사 및 산정 지침
- 15. J**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J에 따라 조사·산정된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 16. J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 · 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7. J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 등 J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부동산정책에 관한 사항 등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 관이 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6명 이내 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 는 사람이 된다.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토지 · 주택 등에 관한 이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 람
- 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3.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 관련 분 야에서 10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기 전에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 ·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의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
- 1.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지번
- 2.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다)

- 3.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대지면적 및 형상
- 4.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용도, 연면적, 구 조 및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을 포함한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산정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을 조사·산정하려는 경우 감정평가법인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가격의 조사·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에게 의뢰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해당 비주거용 일반부동산과 유사한 이용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비주거용 일반부 동산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 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J비주거용 개별부동산 가격의 결정·공시 등 J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과 산정대상 비주거용 개별부동산의 가격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비주거용 부동산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공시 등)

-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J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따른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비주거용 개별부동산의 가격(이하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이라 한다)을 결정·공시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비주거용 개별부동산의 가격을 별도로 결정·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주거용 표준부

동산으로 선정된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에 대하여는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으로 선정된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에 대하여는 해당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을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 격의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 1. 비주거용 부동산의 지번
- 2.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가격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비주거용 개 별부동산가격을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주거용 일반부동산과 유사한 이용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가격을 기준으로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가격을 산정하되, 해당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의 가격과 비주 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이 균형을 유지하도 록 하여야 한다.
-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공시하기 위하여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과의 균형등 그 타당성에 대하여 J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

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 · 산 정을 의뢰 받은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자의 검증을 받고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의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시장 · 군수 또는 구청 장은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검 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비주거 용 부동산가격의 변동상황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행정의 합리적 인 발전을 도모하고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가격과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과의 균 형유지 등 적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가격의 결정 · 공시 등에 관하여 시 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도 · 감독할 수 있다.
- ®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정정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및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2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 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제2항 후단 중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는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 ・공시 등」"로 본다.
-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산정, 검 증 및 결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 사·산정의 기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⑦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에 대하여는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J제2항·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협조 J·J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등J·J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및 J타인토지에의 출입 등J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J제2항 후단중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등J"는 "J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J"로 본다.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 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 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 가격(이하 "표준지공시지가"라 한다)을 조 사·평가하고, J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 회J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위하여 표준지의 가격을 조사 · 평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공시기준 일, 공시의 시기, 조사ㆍ평가 기준 및 공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 지공시지가를 조사 · 평가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 · 임대료 및 해 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 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 특수 성, 표준지공시지가 변동의 예측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 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 지공시지가를 조사ㆍ평가할 때에는 업무 실적, 신인도(信認度)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감성평가 및 감성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 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의뢰 하여야 한다. 다만, 지가 변동이 작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표준지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표준 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의뢰받은 감정 평가업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당 업 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⑦ 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기준 및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국토교통부장관은 J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산정대상 개별 토지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토지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협조)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의 선정 또는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해당 토지의 인·허가 내용, 개별법에 따른 등록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의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관계 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요구를 따라야 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한 때에는 그 내용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도서·도표등으로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공급하여야 한다.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 ①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 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 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에 따라 해당 표준 지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의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① 관계 공무원 또는 부동산가격공시업무를 의뢰받은 자(이하 "관계공무원등"이라한다)는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J제4항에 따른 표준지가격의 조사·평가 또는 J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J제4항에 따른 토지가격의 산정을 이었던 피오한 때에는 타이의 트지에 측이 있었던 피오한 때에는 다이의 트지에 측이 있었다.

게이어 결보인 베에는 나간의 도시에 굴립할 수 있다.

- ② 관계공무원등이 제1항에 따라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부동산가격공시업무를 의뢰 받은 자에 한정한다)를 받아 출입할 날의 3일 전에 그 점유자에게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일출 전 · 일몰 후에는 그 토지의 점유 자의 승인 없이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 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 ④ 제2항에 따라 출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 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증표와 허가증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 이용상황,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 정되는 일단의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중에 서 선정한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이라 한다)을 조사·산정하고, J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 원회」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 격의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 1.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지번
- 2.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 3.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대지면적 및 형 상
- 4.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용도, 연면적, 구조 및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을 포 함한다)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산 정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비주 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을 조사 · 산정하려는 경우 감정평가법인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가격의 조사 · 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에게 의뢰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비주거용 표준부동 산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의 거래가격· 임대료 및 해당 비주거용 일반부동산과 유 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비주 거용 일반부동산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 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J비주거용 개별부동 산가격의 결정·공시 등J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과 산정대상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의 가격형성 유인에 관하 표주적이 비교표

의 기억성정보진에 진한 표한적인 미보표 (이하 "비주거용 부동산가격비준표"라 한 다)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게 제공하여야 한다.

⑦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에 대하여는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J제2항·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 협조J·J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등J·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및 J타인토지에의 출입 등J를 각각 준용한다. 이경우 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J제2항 후단 중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J"로 본다.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이라 한다)을 조사·산정하여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결정·공시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가격을 별도로 결정·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비주

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공시하지 아 니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가격을 공시하기 위하여 비주거용 집합부동 산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소유 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조 사대상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공 시사항, 조사·산정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해당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조사·산정할 때에는 부동산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가격의 조사·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에게 의뢰한다.
- ®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공시한 가격에 틀린 계산, 오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

늘 발선인 때에는 시세 없이 이들 성성<mark>아</mark>어 아 한다.

®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공시에 대해서는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협조」· J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등」· 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및 J타인토지에의 출입 등」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제2항 후단 중 "J표준지공시지가에 조사·평가 및 공시 등」"는 "J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로 본다.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협조)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의 선정 또는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 ·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해당 토지의 인 · 허가 내용, 개별법에 따른 등록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의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관계 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요구를 따라야 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J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한 때에는 그 내용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도서·도표등으로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공급하여야 한다.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 ①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 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

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J에 따라 해당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여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의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 ① 관계 공무원 또는 부동산가격공시업무를 의뢰받은 자(이하 "관계공무원등"이라한다)는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J제4항에 따른 표준지가격의 조사·평가 또는 J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J제4항에 따른 토지가격의 산정을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 ② 관계공무원등이 제1항에 따라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부동산가격공시업무를 의뢰 받은 자에 한정한다)를 받아 출입할 날의 3일 전에 그 점유자에게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일출 전·일몰 후에는 그 토지의 점유 자의 승인 없이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 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 ④ 제2항에 따라 출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 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증표와 허가증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 가격(이하 "표준지공시지가"라 한다)을 조사·평가하고, J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위하여 표준지의 가격을 조사 · 평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공시기준 일, 공시의 시기, 조사ㆍ평가 기준 및 공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 지공시지가를 조사 · 평가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 · 임대료 및 해 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 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 특수 성, 표준지공시지가 변동의 예측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 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 지공시지가를 조사ㆍ평가할 때에는 업무실적, 신인도(信認度) 등을 고려하여 둘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지가 변동이 작은 경우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표준지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표준 지공시지가 조사 ·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 평가업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당 업 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⑦ 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기준 및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국토교통부장관은 J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산정대상 개별 토지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토지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이라 한다)을 조사·산정하여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거쳐 공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또는 구청장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결정·공시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행정

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가격을 별도로 결정·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공시하지 아니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집합부동 산가격을 공시하기 위하여 비주거용 집합 부동산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주거용 집합부동 산의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 을 들어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조사대상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 기, 공시사항, 조사·산정 기준 및 공시절 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 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가격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비주 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해당 비주거용 집 합부동산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 하여야 한다.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비주 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조사·산정할 때 에는 부동산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가격의 조사·산정에 관한 전문성 이 있는 자에게 의뢰한다.
- ®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공시한 가격에 틀린 계산, 오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 정하여야 한다.
- ⑨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공시에 대해서는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협조」・ J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등」・ 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및 J타인토지에의출입 등」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제2항 후단중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는 "J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조사・산정 및 공시 등」"로 본다.

」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공시가격이 적정가격을 반영하고 부동산의 유형·지역 등에 따른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는 부동산 가격의 변동 상황, 지역 간의 형평성, 해당 부동산의 특수성 등 제반사

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공청회를 실시하고, J중앙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J에 따른 중앙부 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 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부동산 가격공시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 에 관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2.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3.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에 따라 조사·평가된 표준지공시지가 4. 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
- 4. J**표순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정**J에 따 른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5. J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른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 6. J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라 조사·산정된 표준주택가격
- 7. J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8. J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른 공동주택의 조사 및 산정지침 9. J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라 조사·산정된 공동주택가격
- 10. J**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J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에 관한 사항
- 11. J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산 정 및 공시 등 J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의 선정 및 관리지침
- 12. J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산 정 및 공시 등 J에 따라 조사·산정된 비주거 용 표준부동산가격
- 13. J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14. J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조사 및 산정 지침
- 15. J**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산** 정 및 공시 등 J에 따라 조사·산정된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 16. J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17. J**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 등** J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18. 그 밖에 부동산정책에 관한 사항 등 국 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이하 "표준지공시지가"라 한다)을 조사·평가하고, J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위하여 표준지의 가격을 조사· 평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평가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 지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해 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 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특수 성, 표준지공시지가 변동의 예측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 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 지공시지가를 조사ㆍ평가할 때에는 업무실적, 신인도(信認度) 등을 고려하여 둘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지가 변동이 작은 경우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표준지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표준 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의뢰받은 감정 평가업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당 업 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⑦ 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기준 및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국토교통부장관은 J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산정대상 개별 토지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토지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 ①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

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 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에 따라 해당 표준 지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의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 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 (이하 "표준주택가격"이라 한다)을 조사 · 산정하고, J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표준주택의 지번
- 2. 표준주택가격
- 3. 표준주택의 대지면적 및 형상
- 4. 표준주택의 용도, 연면적, 구조 및 사용 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을 포함한다)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표준주택의 선정, 공시기 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산정 기준 및 공 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표준 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에 의뢰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 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경우에는 인 근 유사 단독주택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해당 단독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다고 인정되는 단독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특수성, 표준주택가격 변동의 예 측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 하여야 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J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 등」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주택과 산정대상 개별주택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주택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⑦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제2항·」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협조」· J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등」· 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및 J타인토지에의 출입 등」는 제1항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에 준용한다. 이 경우 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제2항 후단 중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는 "J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로 본다.

(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 국도보충구경 한 등 등 도구 학에 네이어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공동주택가격"이라 한다)을 조사·산정하여 J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주택가격을 별도로 결정·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가격을 공 시하기 위하여 그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 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조사대상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공시사항, 조사·산정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 · 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공동주택가격을 결정 · 공시하여야 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공동 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경우에는 인 근 유사 공동주택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해당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특수성, 공동주택가격 변동의 예 측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

하여야 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공동 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부동산원에 의뢰한다.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공시한 가격에 틀린 계산, 오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 정하여야 한다.
- ® 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대하여는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협조」· J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등」· 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이의신청」및 J타인토지에의 출입 등」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이의신청」제2항 후단 중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는 "J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로 본다.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 이용상황,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 정되는 일단의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중에 서 선정한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이라 한다)을 조사·산정하고, J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 원회」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 격의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 1.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지번

- 2.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 3.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대지면적 및 형
- 4.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용도, 연면적, 구조 및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을 포 함한다)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산 정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비주 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을 조사·산정하려는 경우 감정평가법인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가격의 조사·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에게 의뢰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비주거용 표준부동 산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의 거래가격· 임대료 및 해당 비주거용 일반부동산과 유 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비주 거용 일반부동산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 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J비주거용 개별부동 산가격의 결정·공시 등」에 따른 비주거 용 개별부동산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과 산정대상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 (이하 "비주거용 부동산가격비준표"라 한 다)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⑦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에 대하여는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J제2항·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 협조 J·J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등 J·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J및 J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J를 각각 준용한다. 이경우 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J제2항 후단 중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J"는 "J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J"로본다.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이라 한다)을 조사·산정하여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거쳐 공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결정·공시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가격을 별도로 결정·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공시하지 아니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집합부동 산가격을 공시하기 위하여 비주거용 집합 부동산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

-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주거용 집합부동 산의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 을 들어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조사대상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 기, 공시사항, 조사·산정 기준 및 공시절 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 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가격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비주 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해당 비주거용 집 합부동산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 하여야 한다.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비주 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조사·산정할 때 에는 부동산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가격의 조사·산정에 관한 전문성 이 있는 자에게 의뢰한다.
- ®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공시한 가격에 틀린 계산, 오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 정하여야 한다.
- ⑨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공시에 대해서는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협조」· J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등」· 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및 J타인토지에의 출입 등」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제2항 후단중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는 "J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조사·산정 및 공시 등」"로 본다.

(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공시가격이 적정가격을 반영하고 부동산의 유형·지역 등에 따른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부동산 가격의 변동 상황, 지역 간의 형평 성, 해당 부동산의 특수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공청회를 실시하고, J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 장은 부동산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계획에 부합하도록 하 여야 한다.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 이 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 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6명 이내의 공 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토지 · 주택 등에 관한 이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 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자 격이 있는 사람
-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 관련 분야 에서 10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기 전에 미리 관계 전 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 ·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 청장은 부동산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하 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계획에 부합하도 록 하여야 한다.

」공시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 주택 및 비주 거용 부동산의 공시가격과 관련된 정보 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 하여 공시가격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시 가격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 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및 자료 의 종류, 공시가격정보체계의 구축·운 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회의록의 공개」

J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따른 중 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및 J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따른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3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을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 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부동산 가격공시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2.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 3.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J에 따라 조사·평가된 표준지공시지가 4. 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J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이하 "표준지공시지가"라 한다)을 조사·평가하고, J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를

- J. J표단수택/1억의 소사·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른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
 6. J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라 조사·산정된 표준주택가격
 7. J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8. J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른 공동주택의 조사 및 산정지침 9. J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라 조사·산정된 공동주택가격 10. J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11. J**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산** 정 및 공시 등J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의 선정 및 관리지침
- 12. J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산 정 및 공시 등」에 따라 조사·산정된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 13. J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산 정 및 공시 등J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14. J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산 정 및 공시 등J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의 조사 및 산정 지침
- 15. J**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산** 정 및 공시 등J에 따라 조사·산정된 비주거 용 집합부동산가격
- 16. J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17. J**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 등** J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18. 그 밖에 부동산정책에 관한 사항 등 국

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공시아기 위아어 표준시의 가격을 소사 형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평가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 지공시지가를 조사 · 평가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 · 임대료 및 해 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 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 특수 성, 표준지공시지가 변동의 예측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 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 지공시지가를 조사ㆍ평가할 때에는 업무 실적, 신인도(信認度)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 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의뢰 하여야 한다. 다만, 지가 변동이 작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표준지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표준 지공시지가 조사 ·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 평가업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당 업 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⑦ 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기준 및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J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산정대상 개별 토지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토지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 ①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등」에 따라 해당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여야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의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 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 (이하 "표준주택가격"이라 한다)을 조사· 사정하고 교**주악부동사가격공시위워회** 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표준주택의 지번
- 2. 표준주택가격
- 3. 표준주택의 대지면적 및 형상
- 4. 표준주택의 용도, 연면적, 구조 및 사용 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을 포함한다)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표준주택의 선정, 공시기 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산정 기준 및 공 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표준 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에 의뢰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 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경우에는 인 근 유사 단독주택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해당 단독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다고 인정되는 단독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특수성, 표준주택가격 변동의 예 측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 하여야 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 등」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주택과 산정대상 개별주택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주택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⑦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제2항·」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협조」·」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등」·」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및 J타인토지에의 출입 등」는 제1항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에 준용한다. 이 경우 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제2항 후단 중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는 "J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로 본다.

(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공동주택가격"이라 한다)을 조사·산정하여 J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협의하여 공동주택가격을 별도로 결정·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가격을 공 시하기 위하여 그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 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조사대상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공시사항, 조보 사전 기조 및 고기전된 특에 필요하

조선 1 연경 기군 및 중시결사 중에 필표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 · 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공동주택가격을 결정 · 공시하여야 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공동 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경우에는 인 근 유사 공동주택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해당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특수성, 공동주택가격 변동의 예 측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 하여야 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공동 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부동산원에 의뢰한다.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공시한 가격에 틀린 계산, 오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 정하여야 한다.
- ® 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대하여는 J표준 지공시지가의 조사협조」· J표준지공시지 가의 열람 등」· 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및 J타인토지에의 출입 등」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제2항 후단 중 "J표준 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는 "J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로 본다.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 이용상황,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 정되는 일단의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중에 서 선정한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이라 한다)을 조사·산정하고, J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 원회」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 격의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 1.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지번
- 2.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 3.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대지면적 및 형 상
- 4.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용도, 연면적, 구조 및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을 포 함한다)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산 정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비주 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을 조사·산정하려는 경우 감정평가법인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가격의 조사·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에게 의뢰한다.
- ⓒ 그트그토브자과이 비즈기요 표조브로

의 국도보충구성 다시 비구기당 표준구당 산가격을 조사 · 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의 거래가격 · 임대료 및 해당 비주거용 일반부동산과 유 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비주 거용 일반부동산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 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J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공시 등J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과 산정대상 비주거용 개별부동산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비주거용 부동산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⑦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에 대하여는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J제2항·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 협조J·J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등J·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및 J타인토지에의 출입 등J를 각각 준용한다. 이경우 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J제2항 후단 중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J"는 "J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J"로본다.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이라 한다)을 조사·산정하여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거쳐 공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결정·공시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가격을 별도로 결정·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공시하지 아니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집합부동 산가격을 공시하기 위하여 비주거용 집합 부동산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주거용 집합부동 산의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 을 들어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조사대상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 기, 공시사항, 조사·산정 기준 및 공시절 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 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가격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비주 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해당 비주거용 집

합부동산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 하여야 한다.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비주 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조사·산정할 때 에는 부동산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가격의 조사·산정에 관한 전문성 이 있는 자에게 의뢰한다.
- ®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공시한 가격에 틀린 계산, 오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 정하여야 한다.
- ®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공시에 대해서는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협조」· J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등」· 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및 J타인토지에의 출입 등」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제2항 후단중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는 "J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조사·산정 및 공시 등」"로 본다.

(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공시가격이 적정가격을 반영하고 부동산의 유형·지역 등에 따른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부동산 가격의 변동 상황, 지역 간의 형평 성, 해당 부동산의 특수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공청회를 실시하고, J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따른 중앙부동산가 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 장은 부동산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계획에 부합하도록 하 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 이 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 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6명 이내의 공 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토지 · 주택 등에 관한 이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 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자 격이 있는 사람
- 3.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 관련 분야 에서 10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

- 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기 전에 미리 관계 전 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둔다.
- 1. J**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J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 2. J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J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 등」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 4. J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 등」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J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공시 등」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 6. J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공시 등」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 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심의 에 부치는 사항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세·지방 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 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J시·군·구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에 따른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 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 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 이후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 ④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 가를 결정 · 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 가를 산정하되, 해당 토지의 가격과 표준 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 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하여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가의 변동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에 따른 검증을 받으려는 때에는 해당 지역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한 감정 평가법인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 정평가실적 등이 우수한 감정평가법인등 에 의뢰하여야 한다.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지가공시 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와의 균형유지 등 적정한지가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도

· 감독할 수 있다.

®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검증 및 결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산정의 기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감정평가법 인등의 지정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 ①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 할 수 있다.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J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에 따라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의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J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J에 따른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주택의 가격(이하 "개별

주택가격"이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 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하여는 해당 주택의 표준주택가격을 개별주택가격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공시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개별주택의 지번
- 2. 개별주택가격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주택가격 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주택가 격을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 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 를 사용하여 가격을 산정하되, 해당 주택 의 가격과 표준주택가격이 균형을 유지하 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주택가 격을 결정·공시하기 위하여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표준주택가격과의 균형 등 그 타당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원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 장은 부동산원의 검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주택가격의 변동상황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부동산 원의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표준주택가격과 개별주택가격과의 균형유지 등 적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 등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 ®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및 개별 주택가격의 정정에 대하여는 J개별공시지 가에 대한 이의신청」및 J개별공시지가의 정정」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J개별공 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J제2항 후단 중 "J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로 본다. 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 등」"로 본다.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것외에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검증 및 결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산정의기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및 공시절차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공시 등)

-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J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따른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비주거용 개별부동산의 가격(이하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이라 한다)을 결정·공시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비주거용 개별부동산의 가격을 별도로 결정·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주거용 표준부 동산으로 선정된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에 대하여는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으로 선정된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에 대하여는 해당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으로 개별부동산 표준부동산가격을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 격의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 1. 비주거용 부동산의 지번
- 2.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가격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비주거용 개 별부동산가격을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주거용 일반부동산과 유사한 이용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가격을 기준으로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가격을 산정하되, 해당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의 가격과 비주 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이 균형을 유지하도

록 하여야 한다.

-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비주거용 개 별부동산가격을 결정 · 공시하기 위하여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의 가격을 산정할 때 에는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과의 균형 등 그 타당성에 대하여 」비주거용 표준부 동산가격의 조사 · 산정 및 공시 등]에 따 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 · 산 정을 의뢰 받은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자의 검증을 받고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의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 장은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검 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비주거 용 부동산가격의 변동상황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과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과의 균형유지 등 적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공시 등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도·감독할 수있다.
- ®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정정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및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2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 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제2항 후단 중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는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
- · 공시 등]"로 본다.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산정, 검 증 및 결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 사·산정의 기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시·군·구부동 산가격공시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업무위탁」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를 부동산원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 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1. 다음 각 목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업무
- 가.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J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 ·평가
- 나. J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 시 등 J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 정
- 다. J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 시 등 J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 정
- 라. J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 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 마. J**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 · 산정 및 공시 등**J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 부동산가격의 조사 · 산정
- 2. J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등 J에 따른 표조되고시되가 교조조태가격이 조사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이하 "표준지공시지가"라 한다)을 조사·평가하고, J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 1. 부동산 가격공시 관계 법령의 제정·개 정에 관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 에 부치는 사항
- 2.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J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3.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J에 따라 조사·평가된 표준지공시 지가
- 4. 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5. J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른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 6. J표즈즈태가경이 자사·사저 및 고시

- 표는시당시시기, J표는구력기억의 조시·산정 및 공시 등기제7항에 따른 표준주택가격, J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기제8항에 따른 공동주택가격, J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기제7항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및 J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기제9항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기제9항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에 관한도서·도표 등 작성·공급
- 3.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제8항, J표준주택가격의 조사· 산정 및 공시 등」제6항 및 J비주거용 표 준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J제6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 주택가 격비준표 및 비주거용 부동산가격비준표 의 작성·제공
- 4. J**부동산 가격정보 등의 조사**J에 따른 부동산 가격정보 등의 조사
- 5. J**공시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J에 따른 공시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관련 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0. J표단구국기국의 조이 현영 호 중이 등」에 따라 조사·산정된 표준주택가격 7. J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에 관한 사항
- 8. J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른 공동주택의 조사 및 산정지침 9. J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라 조사·산정된 공동주택가격 10. J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11. J**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 ·** 산정 및 공시 등J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 동산의 선정 및 관리지침
- 12. J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 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라 조사·산정된 비 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 13. J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 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 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4. J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 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 동산의 조사 및 산정 지침
- 15. J**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 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라 조사·산정된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 16. J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 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 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7. J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 등 J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부동산정책에 관한 사항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 관이 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6명 이내 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 는 사람이 된다.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토지 · 주택 등에 관한 이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 라
- 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3.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 관련 분 야에서 10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기 전에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 ·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공 시하기 위하여 표준지의 가격을 조사·평가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의 제1성에 따른 표군시의 인정, 중시기군 일, 공시의 시기, 조사ㆍ평가 기준 및 공시절 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 · 평가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 · 임대료 및 해당 토지 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 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 특수성, 표준지공 시지가 변동의 예측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할 때에는 업무실적, 신인도(信認度)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 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지가 변동이 작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표준지에 대해서 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 업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 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기 준 및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공시 등」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 지와 산정대상 개별 토지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토지가격비준 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 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 공시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세·지방세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J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J에 따른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 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 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 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 야 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 가를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 가를 산정하되, 해당 토지의 가격과 표준 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 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하여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 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감

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지가의 변동상황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법 인등의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에 따른 검증을 받으려는 때에는 해당 지역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한 감정 평가법인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 정평가실적 등이 우수한 감정평가법인등 에 의뢰하여야 한다.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지가공시 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와의 균형유지 등 적정한지가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 공시 등에 관하여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도 · 감독할 수 있다.
- ®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검증 및 결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산정의 기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감정평가법 인등의 지정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표 준주택가격"이라 한다)을 조사·산정하고, J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J에 따른 중앙부

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 시하여야 한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 1. 부동산 가격공시 관계 법령의 제정·개 정에 관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 에 부치는 사항
- 2.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3.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에 따라 조사·평가된 표준지공시 지가
- 4. 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5. J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른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 6. J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라 조사·산정된 표준주택가격 7. J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에 관한 사항
- 8. J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른 공동주택의 조사 및 산정지침 9. J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라 조사·산정된 공동주택가격 10. J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11. J**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 · 산정 및 공시 등**J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 동산의 선정 및 관리지침
- 12. J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 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라 조사·산정된 비 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 13. J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 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 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4. J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 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

농산의 조사 및 산성 지점
15. J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 ·
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라 조사 · 산정된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16. J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 ·
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7. J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 등
J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부동산정책에 관한 사항 등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 관이 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6명 이내 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 는 사람이 된다.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토지 · 주택 등에 관한 이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 라
- 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3.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 관련 분 야에서 10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기 전에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 ·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표준주택의 지번
- 2. 표준주택가격
- 3. 표준주택의 대지면적 및 형상
- 4. 표준주택의 용도, 연면적, 구조 및 사용승 인일(임시사용승인일을 포함한다)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표준주택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산정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표준주 택가격을 조사·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한 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에 의뢰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주 택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 사 단독주택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해당 단 독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 되는 단독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특수성, 표준주택가격 변동의 예측 가능성 등 제반사 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J개별주택가격의 결정 (개별즈탠가격의 결정·공시 등)

· 공시 등」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 주택과 산정대상 개별주택의 가격형성요인 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주택가격비 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T¬'|¬¬| =0 0" 0/

-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J**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따른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주택의 가격(이하 "개별주택가격"이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하여는 해당 주택의 표준주택가격을 개별주택가격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공시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개별주택의 지번
- 2. 개별주택가격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주택가격 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주택가 격을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 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 를 사용하여 가격을 산정하되, 해당 주택 의 가격과 표준주택가격이 균형을 유지하

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주택가 격을 결정·공시하기 위하여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표준주택가격과의 균형 등 그 타당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원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 장은 부동산원의 검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주택가격의 변동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부동산원의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표준주택가격과 개별주택가격과의 균형유지 등 적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 등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 ®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및 개별 주택가격의 정정에 대하여는 J개별공시지 가에 대한 이의신청」및 J개별공시지가의 정정」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J개별공 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J제2항 후단 중 "J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는 "J 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 등」"로 본다.
-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것외에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검증 및 결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산정의기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및 공시절차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등」제2항·」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협조 」·」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등」·」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및 J타인토지에 의 출입 등」는 제1항에 따른 표준주택가격 의 공시에 준용한다. 이 경우 J표준지공시지 가에 대한 이의신청」제2항 후단 중 "J표준 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는 "J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로 본다.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이하 "표준지공시지가"라 한다)을 조사·평가하고, J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위하여 표준지의 가격을 조사· 평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 · 평가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 지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해 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 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특수 성, 표준지공시지가 변동의 예측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 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 지공시지가를 조사ㆍ평가할 때에는 업무실적, 신인도(信認度) 등을 고려하여 둘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지가 변동이 작은 경우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표준지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표준 지공시지가 조사 ·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 평가업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당 업 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⑦ 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기준 및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국토교통부장관은 J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산정대상 개별 토지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토지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협조)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의 선정 또는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 ·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해당 토지의 인 · 허가 내용, 개별법에 따른 등록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의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관계 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요구를 따라야 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J에 따라 표준지공시

시가들 공시안 때에는 그 내용을 특별시성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도서 · 도표등으로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공급하여야 한다.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 ①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에 따라 해당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여야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의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① 관계 공무원 또는 부동산가격공시업무를 의뢰받은 자(이하 "관계공무원등"이라한다)는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J제4항에 따른 표준지가격의 조사·평가 또는 J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J제4항에 따른 토지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 할 수 있다.

- ② 관계공무원등이 제1항에 따라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부동산가격공시업무를 의뢰 받은 자에 한정한다)를 받아 출입할 날의 3일 전에 그 점유자에게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일출 전·일몰 후에는 그 토지의 점유 자의 승인 없이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 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 ④ 제2항에 따라 출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 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증표와 허가증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표준주택가격"이라 한다)을 조사·산정하고, J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표준주택의 지번
- 2. 표준주택가격
- 3. 표준주택의 대지면적 및 형상
- 4. 표준주택의 용도, 연면적, 구조 및 사용 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을 포함한다)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표준주택의 선정, 공시기 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산정 기준 및 공 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표준 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에 의뢰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 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경우에는 인 근 유사 단독주택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해당 단독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다고 인정되는 단독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특수성, 표준주택가격 변동의 예 측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 하여야 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J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 등」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주택과 산정대상 개별주택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주택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⑦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J제2항·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협조 J· J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등 J· 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J 및 J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J는 제1항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에 준용한다. 이 경우 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J제2항 후단 중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J"는 "J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J"로 본다.

(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공동주택가격"이라 한다)을 조사·산정하여 J중 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주택가격을 별도로 결정·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 1. 부동산 가격공시 관계 법령의 제정·개 정에 관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 에 부치는 사항
- 2.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3.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에 따라 조사·평가된 표준지공시지가
- 4. 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5. J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른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 6. J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라 조사·산정된 표준주택가격 7. J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에 관한 사항

8. J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른 공동주택의 조사 및 산정지침 9. J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라 조사·산정된 공동주택가격 10. J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1. J**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J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 동산의 선정 및 관리지침

12. J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 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라 조사·산정된 비 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13. J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 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 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4. J**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 산정 및 공시 등J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 동산의 조사 및 산정 지침

15. J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 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라 조사·산정된 비 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16. J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 · 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7. J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 등 J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부동산정책에 관한 사항 등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 관이 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6명 이내 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 는 사람이 된다.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토지 · 주택 등에 관한 이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 람
- 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3.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 관련 분 야에서 10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기 전에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가격을 공시 하기 위하여 그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소유자 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 다.
- ③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조사대상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공시사항, 조

사·산정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공동주택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해당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특수성,공동주택가격 변동의 예측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공동주 택가격을 조사·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부동 산원에 의뢰한다.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공시한 가격에 틀린 계산, 오기, 그 밖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 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 야 한다.
- ® 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대하여는 J표준지 공시지가의 조사협조」· J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등」· 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및 J타인토지에의 출입 등」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제2항 후단 중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는 "J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로 본다.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협조)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의 선정 또는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해당 토지의 인·허가 내용, 개별법에 따른 등록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의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관계 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요구를 따라야 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J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한 때에는 그 내용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도서·도표등으로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공급하여야 한다.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 ①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에 따라 해당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여야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의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① 관계 공무원 또는 부동산가격공시업무 를 이뤄받으 자(이하 "과계고무워들"이라

르 기시트는 지(이어 근제공무료의 어떤한다)는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J제4항에 따른 표준지가격의 조사·평가 또는 J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J제4항에 따른 토지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 ② 관계공무원등이 제1항에 따라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부동산가격공시업무를 의뢰 받은 자에 한정한다)를 받아 출입할 날의 3일 전에 그 점유자에게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일출 전·일몰 후에는 그 토지의 점유 자의 승인 없이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 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 ④ 제2항에 따라 출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 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증표와 허가증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 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 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 가격(이하 "표준지공시지가"라 한다)을 조 사·평가하고, J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 회」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위하여 표준지의 가격을 조사· 평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평가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 지공시지가를 조사 · 평가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 · 임대료 및 해 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 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 특수 성, 표준지공시지가 변동의 예측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 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 지공시지가를 조사ㆍ평가할 때에는 업무실적, 신인도(信認度) 등을 고려하여 둘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지가 변동이 작은 경우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표준지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표준 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의뢰받은 감정 평가업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당 업 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⑦ 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기준 및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국토교통부장관은 J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산정대상 개별 토지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토지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공동주택가격"이라 한다)을 조사·산정하여 J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협의하여 공동주택가격을 별도로 결정·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가격을 공 시하기 위하여 그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 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조사대상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공시사항, 조사·산정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 · 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공동주택가격을 결정 · 공시하여야 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공동 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경우에는 인 근 유사 공동주택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해당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특수성, 공동주택가격 변동의 예 측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 하여야 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공동 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부동산원에 의뢰한다.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공시한 가격에 틀린 계산, 오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 정하여야 한다.
- ® 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대하여는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협조」· J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등」· 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이의신청」및 J타인토지에의 출입 등」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이의신청」제2항 후단 중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는 "J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에 관한 사항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 이용상황,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 되는 일단의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중에서 선 정한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에 대하여 매년 공 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이라 한다)을 조사·산정하 고, J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따른 중 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를 공시할 수 있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 1. 부동산 가격공시 관계 법령의 제정·개 정에 관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 에 부치는 사항
- 2.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3.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에 따라 조사·평가된 표준지공시지가
- 4. 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5. J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른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 6. J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라 조사·산정된 표준주택가격 7. J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 8. J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른 공동주택의 조사 및 산정지침 9. J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라 조사·산정된 공동주택가격 10. J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11. J**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 ·** 산정 및 공시 등J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 동산의 선정 및 관리지침
- 12. J**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 · 산정 및 공시 등**J에 따라 조사 · 산정된 비 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 13. J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 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 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4. J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 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 동산의 조사 및 산정 지침
- 15. J**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J에 따라 조사·산정된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 16. J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 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 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7. J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 등 J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부동산정책에 관한 사항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 관이 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6명 이내 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 는 사람이 된다.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토지 · 주택 등에 관한 이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 라

- __ 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3.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 관련 분 야에서 10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기 전에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의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
- 1.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지번
- 2.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 3.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대지면적 및 형상
- 4.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용도, 연면적, 구조 및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을 포함한다)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산정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을 조사·산정하려는 경
- 우 감정평가법인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가격의 조사·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에게 의뢰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해당 비주거용 일반부동산과 유사한 이용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비주거용 일반부 동산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 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J비주거용 개별부동산 가격의 결정·공시 등 J에 따른 비주거용 개 별부동산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과 산정대상 비주거용 개별부동산의 가격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비주거 용 부동산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 다.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공시 등)

-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J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따른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비주거용 개별부동산의 가격(이하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이라 한다)을 결정·공시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비주거용 개별부동산의 가격을 별도로 결정·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주거용 표준부 동산으로 선정된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에 대하여는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으로 선정된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에 대하여는 해당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기록 배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 격의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 1. 비주거용 부동산의 지번
- 2.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가격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비주거용 개 별부동산가격을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주거용 일반부동산과 유사한 이용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가격을 기준으로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가격을 산정하되, 해당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의 가격과 비주 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이 균형을 유지하도 록 하여야 한다.
-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공시하기 위하여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과의 균형등 그 타당성에 대하여 J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을 의뢰 받은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검증을 받고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의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들어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검
- 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변동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검증을 생략할수 있다.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행정의 합리적 인 발전을 도모하고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가격과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과의 균 형유지 등 적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가격의 결정 · 공시 등에 관하여 시 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도 · 감독할 수 있다.
- ®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정정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및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2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 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제2항 후단 중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는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 ・공시 등」"로 본다.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산정, 검 증 및 결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 사·산정의 기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⑦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에 대하여는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J제2항·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협조 J·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및 J타인토지에의 출입 등J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J제2항 후단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 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 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녀 고시기주의 혀재이 다위며전단 전전 중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는 "J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 ·산정 및 공시 등」"로 본다. 에는 이 기년을 단에서 단체되지의 이이 가격(이하 "표준지공시지가"라 한다)을 조사 · 평가하고, J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위하여 표준지의 가격을 조사· 평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공시기준 일, 공시의 시기, 조사ㆍ평가 기준 및 공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 지공시지가를 조사 · 평가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 · 임대료 및 해 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 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 특수 성, 표준지공시지가 변동의 예측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 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 지공시지가를 조사ㆍ평가할 때에는 업무실적, 신인도(信認度) 등을 고려하여 둘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지가 변동이 작은 경우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표준지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표준 지공시지가 조사 ·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 평가업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당 업 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⑦ 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기준 및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국토교통부장관은 J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산정대상 개별 토지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토지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협조)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의 선정 또는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해당 토지의 인·허가 내용, 개별법에 따른 등록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의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관계 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요구를 따라야 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한 때에는 그 내용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도서·도표등으로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공급

하여야 한다.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 ①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등」에 따라 해당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여야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의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 ① 관계 공무원 또는 부동산가격공시업무를 의뢰받은 자(이하 "관계공무원등"이라한다)는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J제4항에 따른 표준지가격의 조사·평가 또는 J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J제4항에 따른 토지가격의 산정을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 ② 관계공무원등이 제1항에 따라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 또
- 는 구청장의 허가(부동산가격공시업무를 의뢰 받은 자에 한정한다)를 받아 출입할 날의 3일 전에 그 점유자에게 일시와 장소 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 ③ 일출 전·일몰 후에는 그 토지의 점유 자의 승인 없이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 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 ④ 제2항에 따라 출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 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증표와 허가증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 이용상황,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 정되는 일단의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중에 서 선정한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이라 한다)을 조사·산정하고, J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 원회」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 격의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 1.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지번
- 2.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 3.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대지면적 및 형

- 4.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용도, 연면적, 구조 및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을 포 함한다)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산 정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비주 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을 조사·산정하려는 경우 감정평가법인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가격의 조사·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에게 의뢰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비주거용 표준부동 산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의 거래가격· 임대료 및 해당 비주거용 일반부동산과 유 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비주 거용 일반부동산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 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J비주거용 개별부동 산가격의 결정·공시 등」에 따른 비주거 용 개별부동산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과 산정대상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 (이하 "비주거용 부동산가격비준표"라 한 다)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⑦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에 대

하여는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J제2항·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 협조J·J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등 J·J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J및 J타 인토지에의 출입 등 J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J제2항 후단 중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 ·평가 및 공시 등 J"는 "J비주거용 표준 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J"로 본다.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이라 한다)을 조사·산정하여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결정·공시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가격을 별도로 결정·고시하는경우에는 해당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공시하지 아니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가격을 공시하기 위하여 비주거용 집합부동 산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소유 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 ④ 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조 사대상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공 시사항, 조사·산정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해당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조사·산정할 때에는 부동산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가격의 조사·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에게 의뢰한다.
- ®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공시한 가격에 틀린 계산, 오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 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 야 한다.
- ⑨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공시에 대해서는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협조」 · 」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등」 ·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및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J표준지공시 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J제2항 후단 중 "J표 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는 "J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로 본다.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협조)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의 선정 또는 표 준지공시지가의 조사 · 평가를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해당 토지의 인·허가 내용, 개별법에 따른 등록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의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관계 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요구를 따라야 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한 때에는 그 내용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도서·도표등으로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공급하여야 한다.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 ①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에 따라 해당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여야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의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 ① 관계 공무원 또는 부동산가격공시업무를 의뢰받은 자(이하 "관계공무원등"이라한다)는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및 공시 등J제4항에 따른 표준지가격의조사·평가 또는 J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J제4항에 따른 토지가격의 산정을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수 있다.
- ② 관계공무원등이 제1항에 따라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부동산가격공시업무를의뢰 받은 자에 한정한다)를 받아 출입할날의 3일 전에 그 점유자에게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일출 전·일몰 후에는 그 토지의 점유 자의 승인 없이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 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 ④ 제2항에 따라 출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 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증표와 허가증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이하 "표준지공시지가"라 한다)을 조사·평가하고, J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위하여 표준지의 가격을 조사· 평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 · 평가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 지공시지가를 조사 · 평가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 · 임대료 및 해 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 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 특수 성, 표준지공시지가 변동의 예측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 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 지공시지가를 조사 · 평가할 때에는 업무 실적, 신인도(信認度)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 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의뢰

하여야 한다. 다만, 지가 변동이 작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표준지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표준 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의뢰받은 감정 평가업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당 업 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⑦ 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기준 및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국토교통부장관은 J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산정대상 개별 토지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토지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이라 한다)을 조사·산정하여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거쳐 공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결정·공시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가격을 별도로 결정·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공시하지 아니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집합부동 산가격을 공시하기 위하여 비주거용 집합 부동산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주거용 집합부동 산의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 을 들어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조사대상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 기, 공시사항, 조사·산정 기준 및 공시절 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 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가격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비주 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해당 비주거용 집 합부동산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 하여야 한다.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비주 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조사·산정할 때 에는 부동산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가격의 조사·산정에 관한 전문성 이 있는 자에게 의뢰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공시한 가격에 틀린 계산, 오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 정하여야 한다.

⑨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공시에 대해서는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협조」· J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등」· 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및 J타인토지에의 출입 등」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제2항 후단중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는 "J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조사·산정 및 공시 등」"로 본다.

(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J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한 때에는 그 내용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도서·도표 등으로 작성하여관계 행정기관 등에 공급하여야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이하 "표준지공시지가"라 한다)을 조사·평가하고, J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위하여 표준지의 가격을 조사 · 평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평가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 지공시지가를 조사 · 평가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 · 임대료 및 해 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 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 특수 성, 표준지공시지가 변동의 예측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 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 지공시지가를 조사ㆍ평가할 때에는 업무실적, 신인도(信認度) 등을 고려하여 둘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지가 변동이 작은 경우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표준지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할 수 있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표준 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의뢰받은 감정 평가업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당 업 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⑦ 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기준 및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국토교통부장관은 J개별공시지가의 결

정·공시 등」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산 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표준지와 산정대상 개별 토지의 가격형 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토 지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부동산 가격정보 등의 조사)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의 적정가격 조사 등 부동산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위하여 부동산 시장동향, 수익률 등의 가격정보 및 관련 통계 등을 조사·관리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 가격정보 등의 조사 의 대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 관에 국세, 지방세, 토지, 건물 등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하거나 타인의 토지 등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J표준지공시지 가의 조사협조」및 J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J를 각각 준용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협조)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의 선정 또는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해당 토지의 인·허가 내용, 개별법에 따른 등록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의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관계 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요구를 따라야 한다.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① 관계 공무원 또는 부동산가격공시업무를 의뢰받은 자(이하 "관계공무원등"이라한다)는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J제4항에 따른 표준지가격의

조사·평가 또는 J**개별공시지가의 결정·** 공시 등J제4항에 따른 토지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 할 수 있다.

- ② 관계공무원등이 제1항에 따라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부동산가격공시업무를 의뢰 받은 자에 한정한다)를 받아 출입할 날의 3일 전에 그 점유자에게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일출 전·일몰 후에는 그 토지의 점유 자의 승인 없이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 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 ④ 제2항에 따라 출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 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증표와 허가증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공시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 주택 및 비주거용 부동산의 공시가격과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시가격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시가 격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들 요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 을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및 자료의 종류, 공시가격정보체계의 구축·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수수료 등 Ј

① 부동산원 및 감정평가법인등은 이 법 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 · 평가, 개별공시지가의 검증, 부동산 가격정보 · 통계 등의 조사, 표준주택가격의 조사 · 산정, 개별주택가격의 검증, 공동주택 가격의 조사·산정, 비주거용 표준부동 산가격의 조사 · 산정, 비주거용 개별부 동산가격의 검증 및 비주거용 집합부동 산가격의 조사 · 산정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수수료와 출장 또는 사실 확인 등에 소요된 실비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 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한다.

위임행정규칙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은 」수뢰, 사전수뢰」, 」제삼자뇌물제공 」,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알선

수뢰」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 로 본다.

1. J업무위탁 J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 받은 기관의 임직원

2.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 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 격정지에 처한다.

[한정위헌, 2011헌바117, 2012. 12. 27]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129조 제1항의 '공무원'에 구 '제주특 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07. 7. 27. 법률 제8566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항의 제주특별 자치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중 위촉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 법에 위반된다.]

(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 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 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 지에 처한다.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J수뢰, 사전수뢰J의 (수뢰, 사전수뢰)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 지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 차 기미에 기반이 나다 이미이 사

월 식무에 판야어 정목을 받고 되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 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한정위헌, 2011헌바117, 2012. 12. 27.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129조 제1항의 '공무원'에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2007. 7. 27. 법률 제85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항의 제주특별자치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중 위촉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 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 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 다.

- ③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에 처한다.
- ④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를 병과할 수 있다.

(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업무위탁)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부동산원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 관에 위탁할 수 있다.
- 1. 다음 각 목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업 무
- 가.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J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나. J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 다. J**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J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 라. J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J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가격의 조사·산정
- 마. J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산 정 및 공시 등 J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가격의 조사·산정
- 2. J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등」에 따른 표 준지공시지가, J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제7항에 따른 표준주택가격, J 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제8항에 따른 공동주택가격, J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제7항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및 J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제9항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및 J비주거 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제9항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에 관한 도서·도표 등 작성·공급
- 3.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제8항, J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제6항 및 J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 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제6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 주택가격비준표 및 비주거용 부동산가격비준표의 작성·제공
- 4. J**부동산 가격정보 등의 조사**J에 따른 부 동산 가격정보 등의 조사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 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 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 가격(이하 "표준지공시지가"라 한다)을 조 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 회」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위하여 표준지의 가격을 조사· 평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평가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 지공시지가를 조사 · 평가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 · 임대료 및 해 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 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 특수 성, 표준지공시지가 변동의 예측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 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

5. J공시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J에 따른 공시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시중시시기를 오시 ' 경기될 베에는 답무실적, 신인도(信認度) 등을 고려하여 둘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지가 변동이 작은 경우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표준지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할 수 있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표준 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의뢰받은 감정 평가업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당 업 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⑦ 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기준 및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국토교통부장관은 J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산정대상 개별 토지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토지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 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 (이하 "표준주택가격"이라 한다)을 조사·산정하고, J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표준주택의 지번
- 2. 표준주택가격
- 3. 표준주택의 대지면적 및 형상
- 4. 표준주택의 용도, 연면적, 구조 및 사용 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을 포함한다)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표준주택의 선정, 공시기 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산정 기준 및 공 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표준 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이하 "부동사원"이라 한다)에 의뢰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 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경우에는 인 근 유사 단독주택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해당 단독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다고 인정되는 단독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특수성, 표준주택가격 변동의 예 측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 하여야 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J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 등J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주택과 산정대상 개별주택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주택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⑦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제2항·」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협조」· J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등」· 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및 J타인토지에의 출입 등」는 제1항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에 준용한다. 이 경우 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제2항 후단 중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는 "J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로 본다.

(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공동주택가격"이라 한다)을 조사·산정하여 J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협의하여 공동주택가격을 별도로 결정·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가격을 공 시하기 위하여 그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 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조사대상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공시사항, 조사·산정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 · 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공동주택가격을 결정 · 공시하여야 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공동 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경우에는 인 근 유사 공동주택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해당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특수성, 공동주택가격 변동의 예 측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 하여야 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공동 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부동산원에 의뢰한다.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공시한 가격에 틀린 계산, 오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 정하여야 한다.
- ® 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대하여는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협조」· J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등」· 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이의신청」및 J타인토지에의 출입 등」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이의신청」제2항 후단 중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는 "J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로 본다.

(비즈거용 표주브통사가견이 조사ㆍ사정

(비구기이 파르푸이나기크리 소개 다이 및 공시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 이용상황,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 정되는 일단의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중에 서 선정한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이라 한다)을 조사·산정하고, J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 원회」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 격의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 1.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지번
- 2.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 3.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대지면적 및 형 상
- 4.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용도, 연면적, 구조 및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을 포 함한다)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산 정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비주 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을 조사·산정하려는 경우 감정평가법인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가격의 조사·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에게 의뢰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비주거용 표준부동 산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의 거래가격· 임대료 및 해당 비주거용 일반부동산과 유 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비주 거용 일반부동산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 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J비주거용 개별부동 산가격의 결정·공시 등」에 따른 비주거 용 개별부동산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과 산정대상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 (이하 "비주거용 부동산가격비준표"라 한 다)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②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에 대하여는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J제2항·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 협조 J·J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등 J·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J및 J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J를 각각 준용한다. 이경우 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J제2항 후단 중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J"는 "J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J"로본다.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집합부동 산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 가격(이하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이 라 한다)을 조사·산정하여 제24조에 따 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을 결정·공시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행정 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가격을 별도로 결정·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공시하지 아니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집합부동 산가격을 공시하기 위하여 비주거용 집합 부동산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주거용 집합부동 산의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 을 들어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조사대상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 기, 공시사항, 조사·산정 기준 및 공시절 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 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가격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비주 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해당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비주 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조사·산정할 때 에는 부동산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가격의 조사·산정에 관한 전문성 이 있는 자에게 의뢰한다.
- ®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공시한 가격에 틀린 계산, 오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 정하여야 한다.
- ⑨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공시에 대해서는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협조」· J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등」· 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및 J타인토지에의 출입 등」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제2항 후단중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는 "J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조사·산정 및 공시 등」"로 본다.

(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J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한 때에는 그 내용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도서·도표등으로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공급

하여야 한다.

(부동산 가격정보 등의 조사)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의 적정가격 조사 등 부동산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위 하여 부동산 시장동향, 수익률 등의 가격 정보 및 관련 통계 등을 조사·관리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 가격정보 등의 조 사의 대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 기관에 국세, 지방세, 토지, 건물 등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하거나 타인 의 토지 등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J표준지 공시지가의 조사협조」및 J타인토지에의 출입 등J를 각각 준용한다.

(공시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 주택 및 비주 거용 부동산의 공시가격과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시가격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 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시 가격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 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및 자료의 종류, 공시가격정보체계의 구축·운영방 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지가의 공시

제3장 주택가격의 공시

제4장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제5장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제6장 보칙

목차:

- 1 제1조 」목적」
- 2 제2조 」정의」
- 3 제3조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J
- 4 제4조 J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협조 J
- 5 제5조 J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
- 6 제6조 J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등」
- 7 제7조 J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 8 제8조 J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
- 0. 제0조 표조지고시지가이 승려!

- 기 세기고 (표단사이시시시키 표탁)
- 10 제10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 공시 등」
- 11 제11조 J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J
- 12 제12조 J개별공시지가의 정정 J
- 13 제13조 J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 14 제14조 J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비용의 보조J
- 15 제15조 J부동산 가격정보 등의 조사」
- 16 제16조 J표준주택가격의 조사 · 산정 및 공시 등 J
- 17 제17조 J개별주택가격의 결정 · 공시 등 J
- 18 제18조 」공동주택가격의 조사 · 산정 및 공시 등」
- 19 제19조 J주택가격 공시의 효력」
- 20 제20조 J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 · 산정 및 공시 등 J
- 21 제21조 J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 · 공시 등 J
- 22 제22조 J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 · 산정 및 공시 등 J
- 23 제23조 J비주거용 부동산가격공시의 효력」
- 24 제24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 25 제25조 J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J
- 26 제26조 J공시보고서의 제출 등」
- 27 제26조의2 J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 등」
- 28 제27조 」공시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 29 제27조의2 」회의록의 공개」
- 30 제28조 J업무위탁」
- 31 제29조 J수수료 등 J
- 32 제3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책의 정보:

4bbun	
부동산 세법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4뿐 출판팀	
4뿐	
전라남도 목포시 해안로 215, 4층 410호 (항동, 항동아파트)	
전남목포 2022-7	
2023-05-05	
국배판/A4	
17판 1쇄	
2022-09-09	
400원	
979-11-92669-19-9 (PDF)	

안내:

- 본 책자는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법령을 이용하여, 4뿐®에서 원본 법령의 내용을 임으로 제거 변경 추가하여 공인중개사 수험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것 입니다. 본 책자는 오류가 많으며 오류 또는 이와 관련된 어떠한 손해에 대하여 4뿐®에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2023년 10월 28일(공인중개사 제34회 시험)을 대비하여 출판하였으나 출판물의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법령이 변경되었으나 본

참고문헌: 1. 주택법

2. 지방공기업법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4. 도시개발법

5. 지방자치법

6.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공공주택 특별법

10. 건설기술 진흥법

11. 택지개발촉진법

12.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4. 건축법

15.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16. 형법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34호, 2022. 2. 3., 일부개정]

[시행 2022. 7. 12.] [법률 제18747호, 2022. 1. 11., 일부개정]

[시행 2023. 9. 29.] [법률 제19313호, 2023. 3. 28., 일부개정]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310호, 2021. 7. 20., 타법개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일부개정]

[시행 2017. 12. 12.] [법률 제15149호, 2017. 12. 12., 일부개정]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310호, 2021. 7. 20., 타법개정]

[시행 2022. 11. 15.] [법률 제19048호, 2022. 11. 15., 일부개정]

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28호, 2022. 2. 3., 일부개정]

[시행 2022. 6. 10.] [법률 제18933호, 2022. 6. 10., 일부개정]

[시행 2022. 1. 1.] [법률 제17814호, 2020. 12. 31., 타법개정]

[시행 2023. 2. 14.] [법률 제19226호, 2023. 2. 14., 일부개정]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35호, 2022. 6. 10., 일부개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459호, 2020. 6. 9., 타법개정]

[시행 2021. 12. 9.] [법률 제17571호, 2020. 12. 8., 일부개정]

